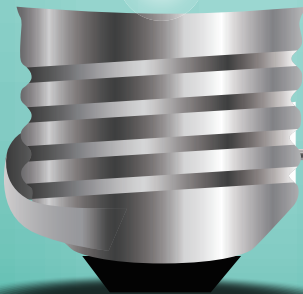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대한민국 해외진출의
불을 밝히다!



산업통상자원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머리말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 되면서, 현재 총 190개국에 47,000여개의 기업들이 해외투자 형태로 진출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9월말까지 234억 달러의 신규 해외투자가 진행 되었습니다.

우리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KOTRA, 수출입은행 등을 포함한 50여개 기관에서 금융, 보험서비스와 함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IP-DESK와 같은 해외투자 진출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현지정보, 노하우 등의 부족으로 해외진출 준비 및 현지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종합상담센터’와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의 상담 사례들 중 법률, 조세제도, 노무관리 등 우리기업의 해외투자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국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2016년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이 해외투자진출을 준비하거나 초기과정에 있는 기업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그 동안 이 책의 발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 담당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박 성 택**

CONTENTS



독일 | 프랑크푸르트

1. 독일 투자진출 시 설립 가능한 법적형태 • 10
2. 독일 미니 유한회사 개요 및 설립절차 • 14



러시아 | 모스크바

1. 간이과세율 현황 및 경제자유구역 혜택 • 18
2. 러시아 주식회사법 변화 • 23



멕시코 | 멕시코시티

1. 멕시코 근로자이익배당제(PTU) • 28
2. 멕시코 회사 상호 및 주주 변경 절차 • 33



미얀마 | 양곤

1. 미얀마 회사의 정관의 내용과 유의할 사항 • 40
2. 신규 미얀마 투자법과 기존 외국인투자법 차이점 • 44
3. 미국의 미얀마 GSP 관세혜택 • 47
4. 미얀마 직원들의 휴가와 관련된 사례 • 51
5. 미얀마의 토지 제도 및 외국인의 미얀마 토지 사용 • 54



방글라데시 | 다카

1. 현지 선납 소득세 규정에 대한 이해 • 60
2. 투자기업 직원의 Work Permit 취득 방법 • 65



베트남

01. 하노이

1. 베트남 신투자법하의 유통업허가 변경내용 • 70
2. 베트남 개정 민사소송법하의 가압류신청 • 75
3.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과 주택 구매 • 80
4. 베트남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관련 사항 • 85
5. 베트남 소득세법상 유의사항 • 89



02.호치민

- 6.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 93
- 7.유한회사의 투자자금 회수 방법 • 96
- 8.국제재판관할권 • 101
- 9.이전가격 과세 위험이 있는 회사 • 106
- 10.신시행령에 의한 중고기계 수입 • 113



브라질 | 상파울루

- 1.브라질 수출 · 투자 시 적용되는 주요 세금 • 120
- 2.브라질 지사 설립과 법인 설립의 차이 • 124



인도 | 뉴델리

- 1.인도 길롯 한국전용공단 관련 문의 • 130
- 2.인도 단일 브랜드 소매매장 진출에 관한 규제 문의 • 134
- 3.인도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진출에 관한 문의 • 138
- 4.식품수출과 관련한 인도업체 신용조사 • 142
- 5.수출 시 인도 세액관련 문의 • 146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 1.외자투자의 이론과 실제상 괴리 발생 시 • 152
- 2.건설분야 법인 설립 규정 강화 • 156
- 3.수입 통관 전 준비 사항 • 160
- 4.통과 비엘(Through Bill of Lading) • 163
- 5.신설 법인 관련 상업 생산 이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 167



중국

01.광저우

- 1.직원 친족방문휴가에 관한 문의 • 174
- 2.비주민기업소득세 문의 • 178
- 3.지사와 자회사의 자본금 및 차이점 문의 • 183

CONTENTS



02. 베이징

- 4. 중국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 시 유의사항 • 186
- 5. 유통 무자격자를 상대로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 190
- 6. 자본금 납입 • 194

03. 상하이

- 7. 중국 현지 자회사에 대한 통제 • 198
- 8. 상표권 악의적 선점에 대한 대응방안 • 202
- 9. 용역대금 경외 지급 시 원천징수 이슈 • 207

04. 선양

- 10. 교육서비스 업종 중국 진출 시 법인설립 방법에 대한 문의 • 212
- 11. 투자진출 시 현지 법인 설립 방식 및 절차에 관한 문의 • 216

05. 시안

- 12. 상표 강탈등록에 대한 대응방법 • 220
- 13. 상표권의 공유 • 223
- 14. 전화녹음이 소송상 증거로 될 수 있는 요건 • 226

06. 청두

- 15. 중국 서부지역 투자진출 시 토지이용 관련 및 이익금의 배당 과세에 관한 문의 • 229
- 16. 중국의 현지 직원 고용종료에 따른 퇴직금 산정 절차에 관한 문의 • 233

07. 충칭

- 17. 중국 내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및 관세 면세 여부 • 236
- 18. 중국 진출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공제 여부 • 239
- 19. 중국 내 해외기업의 공익성기부 공제 여부 • 243

08. 칭다오

- 20. 웨이하이시 투자환경 분석 • 246
- 21. 중국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 252



체코 | 프라하

1. 자회사 설립 시 회사 형태 및 설립절차 • 260
2. 고용카드 발급 및 단기비자 • 264



캄보디아 | 프놈펜

1. 가압류, 가처분을 통한 채권회수 방법 • 270
2. 캄보디아 형사소송 절차 • 275



태국 | 방콕

1. 상표권을 활용한 도메인(xxx.co.th) 취득절차 및 유의사항 • 280
2. 부가가치세 제도 및 면제대상 • 284



폴란드 | 바르샤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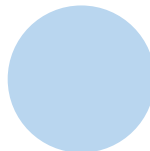
1. 폴란드 최저임금 제도 • 290
2. 개정 폴란드 연구 개발비 세제 감면안 소개 • 294
3. 화장품 유통 및 온라인 판매 • 300
4. 폴란드 정리해고 절차 - 그룹/개인 정리해고 • 307
5. 폴란드 SAF-T(Standard Audit File-Tax)제도 소개 • 311



필리핀 | 마닐라

1. 인력 알선업의 진출 • 318
2. 비거주 외국인 고용 • 322
3. 파트너십과 합작투자(필리핀 진출) • 326
4. 주식회사법상 직위 겸직(필리핀) • 330
5. 의결권 위임(필리핀 법인) • 334

CONTENTS



투자상담 CASE STUDY

1. 중국에 합자법인을 설립한 U사 • 340
2. 중국 파트너를 물색 중인 J사 • 347
3. 중국에 합자공장 설립을 준비 중인 J사 • 353
4.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S개발 • 360
5.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자법인을 추진 중인 H공사 • 366
6. 중국과의 계약 체결로 로열티 수입 얻게 된 S사 • 373
7. 해외 법인 설립으로 아시아 시장 거점 마련한 T사 • 378
8. 중국에 설립한 매장을 문제없이 폐쇄하고 싶은 K사 • 383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GERMANY

독 일



상담사례

01

Frankfurt

독일 투자진출 시 설립 가능한 법적형태



상담내용

P사는 한국에서 정밀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유럽 시장 개척 차원에서 독일에 진출 계획인데, 연락 사무소 또는 법인설립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심상주 KOTRA

ststhim@kotra.or.kr

독일에서는 외국인이 진출할 수 있는 법적형태는 기본적으로 독일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또는 개인회사입니다.

독일 진출 법적형태 중 제일 독립적인 유형은 법인이며, 연락사무소와 지사와는 달리 모든 거래 행위는 법인 자체 내에서 소화 가능합니다. 독일에서는 법인이라는 법적형태가 크게 유한회사(GmbH,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와 주식회사(AG, Aktiengesellschaft)로 분류됩니다.

AG의 경우 지분 분산 및 자유로운 주식양도로 인해 설립절차부터 비교적 복잡하고 설립단계 이후에도 강행법규가 적용되는 정도가 높아, 독일에서는 한국과는 달리 유한회사인 GmbH가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로 설립됩니다. 법인은 반드시 자본금을 납입해야 설립절차가 완료되며, 독일 유한회사 설립의 경우 독일 유한회사법(GmbHG) 제 5조에 따르면 최소 자본금은 25,000유로입니다. 법인은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조직임으로써, 한국 모기업의 책임은 주주로서 납입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설립될 기업의 무한책임을 제한하고 모든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업적인 활동을 고려할 경우 적합한 법적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연락사무소와 유사한 독일 법적형태인 Unselbstständige Zweigniederlassung을 개설할 경우 독일 상업 등기소(Handelsregister)에 등기를 할 필요가 없으며 연락사무소가 소재할 관할 영업관청에 신고로 완료됩니다. 또한 연락사무소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한국 모기업의 일부임으로써, 자본금 납입이 필요 없으며, 모기업의 전도금을 받아 운영됩니다.

법인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연락사무소는 자체적으로 영업활동 수행 또는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적으로는 시장정보 수집, 고객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후관리 등 본사의 영업 활동을 위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에 한정되어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이에 따라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이익이 없음으로, 기본적으로 독일 법인세 (Koerperschaftsteuer)와 영업세(Gewerbesteuer)납부 대상이 아니며, 회계 장부를 작성하여 독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P사의 독일 진출 목적이 우선적으로 영업활동이 아니고 시장개척 업무이며, 세무, 회계에 대한 의무적인 관리업무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면 연락사무소를 법적형태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할 경우에 지사 (Selbstaendige Zweigniederlassung)로 간주되어 법인세 및 영업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독일 연락사무소의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발생되면 세무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점 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해외투자 TIP

한국 기업이 독일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 외에도 기업의 책임과 법적 형태별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검토하고 법적 형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인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독일에서 직접 영업활동 가능한 여부에 있으니, 장기적으로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직접 영업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객에 대한 신뢰감 차원에서도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례

02

Frankfurt

독일 미니 유한회사 개요 및 설립절차



상담내용

W사는 한국에서 스마트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기업입니다. 유럽 시장 개척 차원에서 독일에 진출 계획인데, 독일 미니 유한회사(Unternehmergeinschaft-UG) 개요 및 설립 관련 문의하였습니다.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심상주 KOTRA

ststhim@kotra.or.kr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형태인 유한책임회사 GmbH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Unternehmergesellschaft(UG)를 위한 법적인 기반이 2008년 10월에 “GmbH 법의 현대화와 남용방지 법안”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최소 1파운드의 자본금으로 설립 가능한 영국 Ltd의 법인형태가 화두가 되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GmbH 설립 절차 완화 목적으로 UG이라는 법인형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UG는 새로운 법인 형태가 아니며, GmbH의 변이형으로써 설립 과정은 GmbH와 유사합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UG 설립에 소요되는 최소 자본금을 기존 25,000 유로에서, 영세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유로로 인하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UG를 “Mini-GmbH”(미니 유한회사)라고도 명칭합니다.

다만 현물은 출자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는 설립될 기업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UG 설립 시 최소 1,000유로의 자본금을 기본적으로 출자하게 됩니다.

추가로 UG 설립 후 일반 GmbH의 자본금인 25,000유로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이익금의 최소 25%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나, 이에 대한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자본금을 25,000유로로 증자하게 되면 이익금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지며, 일반 GmbH로 명칭이 변경 가능하나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UG 설립 경우에도 유한회사와 같이 회사 정관이 공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설립비용에 대한 부담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관 작성 관련 독일 연방 경제

부에서 표준 정관 양식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서명에 대한 공증만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UG는 자본금 인하 및 설립 절차 간소화로 통해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에 대한 부담을 제고하나, 일반 GmbH의 변이형으로써 독일 상법(Handelsgesetz)이 적용되어 독일 법인세, 영업세, 부가세의 대상이며, 독일의 회계원칙에 따른 장부 작성 의무도 있습니다.

따라서 W사는 시장개척 차원에서 독일에서 첫 단계로 UG를 설립 가능하나, 최소 1유로의 자본금으로 설립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유동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며,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독일 연방 경제 및 에너지부 홈페이지 (<http://www.existenzgruender.de/EN/Die-ersten-Schritte/Rechtsformen/inhalt.html>)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투자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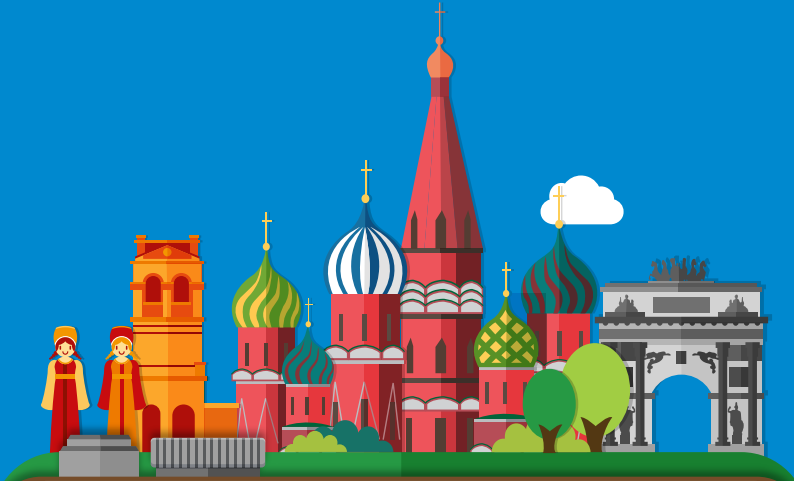
한국 기업이 독일 진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 설립에 대한 부담을 제고하기 위해 UG 설립을 하는 방식도 고려 가능합니다. 다만 독일에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일반 GmbH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RUSSIA

러시아



상담사례

01

Moskva

간이과세율 현황 및 경제자유구역 혜택



상담내용

한국기업 A사는 법인의 등록 주소지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전하려는 회사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간이과세율을 문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최근 러시아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이 제공하는 주요 혜택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차이점을 문의하였습니다.

모스크바무역관

양정아 변호사/Yang Associate

yang@yalaw.biz

간이과세 대상자 이익세율을 결정하는 주체는 러시아의 각 지방 정부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스크바는 15%의 간이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7%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지방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모스크바 보다 낮은 세율이었던 기존 10%의 간이과세 법인 세율을 최근에 7%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지역별로 간이과세율에 차이가 있고, 최근에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러시아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간이과세 대상기업은 설립 전에 해당 지방정부가 적용하는 간이과세율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구역 개념의 투자유치 제도는 크게 4가지로 러시아 내 특정한 지역에 투자를 유치하는 장치이자 해당 지역개발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인 제도입니다. 4가지 제도의 존속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경제구역(SEZ): 49년
- 지역개발구역(ZTD): 12년
-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자유경제구역(FEZ): 25년
- 사회경제 선도개발구역(TASED 또는 러시아어 약칭 TOR): 70년
(이하 ‘극동선도개발구역’)

이 중 최근 러시아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극동선도개발구역’은 기존

에 존재하던 투자입지 구역 형태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관리 방식과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관세 등 특혜의 구성 요소에서 기존의 특별경제구역과 차이가 있습니다.

‘극동선도개발구역’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허가 발급절차(통상 2개월 정도 소요)를 면제해 주며, 기존 특별경제구역보다 낮은 요율의 세금 혜택과 면세 제도를 적용합니다.

상술한 특혜 외에 ‘극동선도개발구역’이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극동개발구역 설치 3년 전에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업체에 한해 고용주에 대하여 7.6%의 고용보험을 적용(기존 보험요율은 30%)
- 간소화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적용(러시아 연방 세법 제 176.1조)
- 인프라 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 행정승인창구 단일화
- 자유관세 절차 제도
- 공청회 개최 없이 건설 및 토지 설계 서류 승인, 기존 임업 규정과 토지 사용 및 건설 관련 규정을 벗어나는 사용허가권 부여
- 임업 관련 특혜: 임업 법률에 따른 무제한 벌목 허용

〈특별경제개발구역과 극동선도개발구역 비교〉

구분	특별경제개발구역	극동선도개발구역
존속기간	49년	70년
	연장 불가능	러시아 연방 정부령에 따라 연장 가능
담당부처	경제개발부	극동개발부
적용 대상	관할기관, 관리회사와 3자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및 법인	관리회사와 양자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및 법인
경제활동 분야	물류, 항해선 재장비 서비스, 해산물 가공, 기타 항구 내 서비스	정부령에 따라 확정
자유 관세	0	0
관리회사 권한 및 기능	인프라구축, 인프라 시설관리, 투자자 유치, 특별경제구역 개발 계획 작성	시행사(Developer)로서 부동산 개발, 인프라 시설 관리 및 지원, 투자 업체 등록부 관리, 법률/회계/관세 서비스 제공, 국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목적 센터 운영
최소 투자액	120,000,000 루블 이상	500,000 루블

자료원: Yang Associate





해외투자 TIP

- 러시아 세법상 간이과세는 15%와 6%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는 총 매출의 6%로 과세되며, 15%는 '매출-매입=이익' 방식으로 산출된 이익에 대해 15%가 과세됩니다. 간이과세는 매출 부과세가 없어 매입부과세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언급 되었듯이 15% 간이과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세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비용처리 항목에 일련의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의 변경은 매년 11월 말까지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 일반과세자로 됩니다. 이와 반대로 동일한 기한 내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상담사례

02

Moskva

러시아 주식회사법 변화



2014년 9월 러시아 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모스크바 소재 한국 대기업 A사는 주식회사법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러시아 상장회사 특징을 문의하였습니다. 최근 러시아 주식회사법이 서방의 주식회사법과 유사해지는 추세여서 우리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주식시장의 활성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스크바무역관

양정아 변호사/Yang Associate

yang@yalaw.biz

2014년 9월 1일자로 주식회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러시아에는 기존의 개방형 주식회사(OAO, Open Joint-Stock Company)와 폐쇄형 주식회사(ZAO, Closed Joint-Stock Company) 분류 방식이 공개형 주식회사(PAO, Public Joint-Stock Company)와 주식회사(AO, Joint-Stock Company)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식회사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정부기관(연방세무청, 연방통계청, 연방연금기금, 사회보험기금), 언론(INTERFAX, ITAR-TASS, AK&M, AZIPI, SCREEN),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하며, 공시해야 할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경영 활동 관련 주요 의사결정사항
- 상장주식회사 정관 및 회사 기관 활동을 규정하는 내규
- 상장주식회사 자회사/계열사 관련 정보
- 상장주식회사 신주/증권 (추가)발행 주주 의결사항

주식회사 설립자는 자본규모, 주식형태, 설립자 권한과 책임 등의 내용이 담긴 회사 설립을 위한 계약서(agreement)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는 곧 회사 이름, 위치 등의 내용이 담긴 회사 정강(charter)이 됩니다.

회사설립 초기에 할당된 주식은 창립 계약서상에 더 짧은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창립 후 1년 이내에 완전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 시 러시아 연방 증권시장 위원회(Russian Federal Securities Market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절차는 보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책임회사 또는 비공개형 주식회사도 법이 정한 일정한 법적 절차와 조건을 충족시키면 공개형 주식회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의 세무회계 기준도 국제화되는 추세로,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IFRS(국제회계보고기준)에는 IAS(국제회계기준) 1, 2, 7, 8, 10, 11, 12, 14, 16, 17, 18, 19, 20, 21, 23, 24, 26, 27, 28, 29, 31, 32, 33, 34, 36, 37, 38, 39, 40, 41이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러시아의 공개형주식회사 영문표기는 기존의 개방형 주식회사의 명칭이 'Open Joint-Stock Company'였던 것에 준하여 일반적으로 'Public Joint-Stock Company'가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Public Corporation', 영국에서는 'Public Limited Company'란 용어가 쓰입니다. 기존의 개방형/폐쇄형 주식회사들은 '개방형', '폐쇄형'이라는 단어 대신 공개형 주식회사(Public Joint-Stock Company), 혹은 주식회사(Joint-Stock Company)로 사명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MEXICO

멕시코



상담사례

01

Mexico City

멕시코 근로자의 배당제(PTU)



상담내용

H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멕시코에 신규 진출한 회사입니다. 멕시코 근로자의 배당제(PTU : Partipation A Los Trabajadores De Las Utilidades)에 대해 특히 사무직 근로자의 해석 범위 및 분배 방법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멕시코시티무역관

조우현 변호사/Cho & Asociados 법무법인

cho@choasociados.com

멕시코 근로자이익배당제(PTU)는 종업원에게 영업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성격의 특별한 제도로써 연방노동법(LFT)에 의거 모든 기업 및 자영업자는 사장, 이사진 등 간부급을 제외한 전 종업원 즉 근로자에게 당해 연도 세전 이익 중 10%를 배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PTU 제도가 1년간 회사 영업이익에 기여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회사 이익금의 일부를 배분한다는 좋은 취지이긴 하나 이 제도에 생소한 한국 투자기업 입장에서 볼 때 세전 이익의 10%를 분배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멕시코 근로자이익배당제(PTU) 산출 및 배분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직원이익 배당금의 산출

법인 세법상 세무조정 후 과세이익(세전 이익)의 10%에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법인의 수익이 순전히 용역 사업에 의해 파생되는 사업체 종업원의 경우와 부동산 임대 사업 및 대출과 이자 회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배당금은 한 달치 급여를 초과하지 못한다. 당해 연도 회기 세무신고 마감 후 60일 이내에 종업원 이익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나: 배분 방식

확정된 이익 배당 금액을 50%씩 두 몫으로 나눈다. 첫 번째 50% 해당 금액은 근로자들의 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단지 그 해 동안에 근무한 일수 기준으로 동일하게 배부한다. 두 번째 50% 해당 금액은 한 해 동안 근무한

결과로 수령한 급여 총액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사용자 측의 신뢰관계에 있는 중요 직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이익배당 계산에 있어, 노동조합에 등록되어 급여를 가장 많이 받는 근로자의 급여액의 120%(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은 PTU 배분관련 한국투자기업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자 이익분배제도(PTU)는 사무직이 아닌 공장에서 실제 조업을 하는 현장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회사 임원, 간부급을 제외한 사회보장원MSS에 등록된 일반 사무직 직원과 현장직 근로자가 PTU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후 과세이익(세전 이익)의 10%에 해당 금액을 당해 연도 회기 세무신고 마감 후 60일 이내(5월 말까지) 근로자들에게 이익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사무직의 PTU의 계산방식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사무직 근로자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이 됩니다. 배분 방식은 확정된 이익 배당 금액을 50%씩 두 몫으로 나누며 첫 번째 50% 해당 금액은 근로자들의 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단지 그 해 동안에 근무한 일수 기준으로 동일하게 배부합니다. 두 번째 50% 해당 금액은 한 해 동안 근무한 결과로 수령한 급여 총액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근거법령: 연방노동법 123조)

참고로 법인의 수익이 순전히 용역 사업에 의해 파생되는 사업체 종업원의 경우와 부동산 임대 사업 및 대출과 이자 회수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배당금은 한 달치 급여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근거법령: 연방노동법 127조 3항)

3. 사무직 중에 어떤 기준에 의해 회사 고위간부급 *Directores, Administradores y gerentes generales* 구분하여 PTU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것인지?

회사를 경영, 운영 및 관리하는 고위 간부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회장, 부회장,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부장급까지 전체 부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는 General 제너럴 임원, 경영자, 매니저로 고위 간부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 부서의 장/책임자라고 모두 간부는 간주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일반 전체 조직도 General한 간부가 아닌 단순히 일개 부서/분야의 책임자/간부로 이해할 수 있는 과장, 차장, 팀장급이라면 그들은 PTU 대상이라고 이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회사의 사원, 주임 대리는 PTU의 대상이 됩니다.

4. PTU 대신에 회사 고위 간부급 *Directores, Administradores y gerentes generales*에게 별도의 보상규정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회사 고위 간부급들은 고임금자들로 PTU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PTU 대신에 법적으로 별도의 보상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특별보너스나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이익금을 지급합니다.



해외투자 TIP

근로자이익배당제의 축소 방안

근로자이익배당제의 산출 기준인 세전 이익의 10%는 법인소득세 (ISR : Impuesto Sobre La Renta) 30% 부가 전 과세이익의 10%로 실제 법인세 납부 후 세 후 순수 이익의 30% 이상으로 봐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으로 회사는 차년 3월 말 이전에 세무 조정을 통한 과세이익의 축소를 위해 연말에 매출원가로 처리가 가능한 초과 구매를 실행할 수 있다.

상담사례

02

Mexico City

멕시코 회사 상호 및 주주 변경 절차



상담내용

D사는 자동차부품 제조회사입니다. 신규법인으로 회사를 운영 중 한 국본사 상호변경 및 주주변경에 따라 멕시코 자회사 상호변경 및 주주변경을 준비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호 및 주주변경 절차 및 기간 그리고 각 기관 신고의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멕시코시티무역관

조우현 변호사/Cho & Asociados 법무법인

cho@choasociados.com

멕시코 회사 상호 및 주주변경 절차 및 소요기간 그리고 제반 신고업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회사상호 및 주주변경

1.1. 상호허가 신청

1) 절차

멕시코 경제부 회사국에 변호사나 공증사무실을 통해 신청하며 허가서 승인관련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변호사나 공증사무소 상호허가 취득관련 서비스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소요기간

통상 2~3일 안에 상호허가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1.2.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위임장 작성

1) 절차

경제부 전자공고 시스템(Sistema Electrónico de Publicaciones de Sociedades Mercantiles)에 주주총회 소집공고합니다. 통상 주주총회 개최 15일 전에 소집안을 공고합니다.

회사 주주가 한국회사나 개인 주주일 경우 변호사를 통해 위임장을 준비하며 회사 주주(법인/개인)는 위임장에 각각 자필 서명하여 DHL로 멕시코에 원본을 송부해야 합니다.

2) 소요기간

통상 위임장 작성기간이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1.3.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1) 절차

변호사를 통해 스페인어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소요기간

통상 주식매매계약서 작성기간이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1.4. 주주총회결의서 작성

1) 절차

변호사를 통해 스페인어로 상호변경 승인 및 주주변경에 따른 안건으로 주주총회결의서를 작성합니다.

2) 소요기간

통상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기간이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1.5. 주주총회결의서 공증

1) 절차

회사 대표자 혹은 대리인을 지정하여 공증사무실 출두하여 주주총회결의서 공증을 합니다.

2) 소요기간

공증사무실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통상 4~5일 뒤에 공증을 합니다.

1.6. 등기사무소 등기

1) 절차

통상 주주총회결의서 공증을 한 공증사무소에서 등기사무소 등기업무를 대행합니다.

2) 소요기간

서류 제출 후 등기가 완료되는 데 통상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상기 업무를 모두 마치면 다음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결의서 등기 이후 각종 기관 신고의무

회사 상호 및 주주변경 관련 주주총회 결의서 공증 및 등기 이후 다음 기관에 상호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1. 국세청 회사상호 변경 신고

1) 절차

국세청에 예약일을 잡아 등기완료된 주총결의안을 들고 회사대표가 직접 출두하여 상호변경 사실을 신고 및 등록하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됩니다.

2) 소요기간

국세청 예약일 지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2.2. 사회보장원(IMSS)과 주정부 재무부(TESORERIA)에 회사명 변경사실 통지

1) 절차

현재 IMSS에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면 상호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발급 서류와 등기완료된 주주총회결의서를 지참하여 회사대표가 IMSS에 직접 출두하여 상호변경 사실을 신고 및 등록하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Tesoreria에는 대리인을 시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소요기간

IMSS 신고는 예약일 지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Tesoreria 신고는 당일 가능합니다.

2.3. 이민청 회사상호 변경사실 신고 후 고용주등록증 변경

1) 절차

이민청에 고용주등록증상 명시된 회사명 변경이 이루어졌음을 통지하고 회사명이 수정된 고용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상호변경 업무가 마무리되어야 앞으로 회사이름으로 외국인 직원들 워킹비자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요기간

통상 신고접수 후 2~3주 안에 회사 상호변경된 고용주등록증을 발급합니다.

2.4. 거래은행 회사 상호변경 신고

1) 절차

상호변경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법인계좌 개설은행에 회사상호변경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2) 소요기간

은행 내부적인 프로세스로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2.5. 경제부 외국인투자국 상호변경 신고

1) 절차

상호변경 관련 서류들을 지참하여 경제부 산하 외국인투자국(RNIE)에 상호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소요기간

예약 없이 당일 신고 가능합니다.



해외투자 TIP

주식양도세 납부의무

주식을 양도/매매할 경우 양도주식 매매가의 25%를 “주식양도세”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자 한다면 주식양도에 따른 주식의 현재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주식가치평가감정서(Dictamen Fiscal)를 국세청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제출 시 양도소득세 납부를 면세받습니다. 만약 주식의 현재가치가 출자 당시 가치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다 혹은 손실을 봤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25% 양도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경우 25%가 아닌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MYANMAR

미얀마



상담사례

01

Yangon

미얀마 회사의 정관의 내용과 유의할 사항



A사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얀마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중 Memorandum of Association과 Articles of Association의 내용 및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양곤무역관

강수구 변호사 /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미얀마 사무소
sgkang@yulchon.com

Memorandum of Association과 Articles of Association은 우리 법률상 회사의 정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미얀마의 법인 등록 기관인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이하 “DICA”)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ICA에서는 홈페이지(<http://www.dica.gov.mm/en>)를 통해서 법인 설립 및 법인 등록과 관련한 각종 양식을 파일로 제공하고 있고, Memorandum of Association과 Articles of Association도 그중 하나입니다.

법인 설립 신청 서류는 DICA에서 판매하는 양식을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DICA에서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세트로 판매하고 있으며, 정관(안)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에 DICA에 구매한 정관 양식을 사용하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별도로 타이핑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ICA에 구매한 정관(안)에 이미 타이핑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미얀마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DICA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관 양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미얀마 회사의 정관은 Memorandum of Association과 Articles of Association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emorandum of Association에는 회사 형태, 목적 사업, 자본금 등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으며, Articles of Association은 회사의 형태, 자본금에 대한 내용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에 대한 내용, 주주총회, 배당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DICA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관 양식 중 Articles of Association은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얀마 회사법(Myanmar Companies Act)의 첨부 1, 표 A의 주식회사 운영 규정(이하 “주식회사 운영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운영 규정과 정관의 내용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DICA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관 양식의 내용 중 특히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관 양식은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은 Managing Director(대표이사)가 하고, 표결로 가는 경우 가부동수가 되면 이사회 의 Chairman이 Casting Vote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운영 규정 제87조에서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원칙적으로 다수결로 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사회 운영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정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사회에서 Managing Director가 단독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투자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미얀마 사람들은 아직 국제적 거래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지, 다른 나라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문서도 미얀마 법률에 맞추어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Board Resolution)를 거쳐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회사의 경우도 그 나라의 법률 또는 그 회사의 내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의사 결정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사회 결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02

Yangon

신규 미얀마 투자법과 기존 외국인투자법 차이점



상담내용

A사는 중국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상승하는 인건비로 인하여, 다른 진출지역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얀마의 신규 투자법이 지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역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양곤무역관

곽희민 양곤무역관

yangonkwak@kotra.or.kr

미얀마는 지난 2011년 49년 간의 군부 통치가 마무리되고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1988년 외국인 투자법을 대체하는 신규 외국인 투자법을 2012년 12월에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도모하였으나, 외국인과 현지 투자자들 사이의 차별적인 투자 허가 및 행태 등의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2016년 7월 기존의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을 통합한 미얀마투자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6년 9월 28일에 하원(Pyithu Hluttaw, People's Parliament)의 승인을 받았고, 2016년 10월 5일에 상원(Amyotha Hluttaw, National Parliament)의 승인을 받았고, 2016년 10월 1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2012년 외국인 투자법과 비교하여 볼 때, 2016년 미얀마 투자법의 달라진 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기존에는 MIC(미얀마투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 장기임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 법률에서는 MIC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도 MIC의 별도 승인을 받아 부동산 장기임대,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16년 미얀마 투자법에서는 투자 형태의 제한을 폐지하고, 송금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보장하고 있는 등 기존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기해 온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

존의 외국인 투자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며, MIC에서는 공식적으로 2016년 12월 말까지는 기존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투자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겠다는 내용의 Notific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미얀마 정부 담당자의 설명으로는 2017년 3월까지의 미얀마 투자법안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위한 세부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하며, 2017-2018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17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새로 제정된 미얀마 투자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앞으로 미얀마 투자와 관련하여서 개정된 미얀마 투자법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투자 TIP

미얀마는 법률과 시행령이 빈번하게 변화되며, 또한 행동 지침이 하루 아침에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 현지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기업들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문건 및 대사관, KOTRA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참고하길 희망하며, 아직까지 외국인에게 제한된 사업이 있는 바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컨설팅 기업이 악용을 하는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미얀마 현지에서 컨설팅 경험이 많고, 이름이 알려진 기업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사례

03

Yangon

미국의 미얀마 GSP 관세혜택



B사는 현재 미얀마에서 봉제업 투자를 진행할 계획에 있으며, 이에 따라 GSP 관련 혜택이 현실적으로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양곤무역관

곽희민 양곤무역관

yangonkwak@kotra.or.kr

미얀마는 1974년부터 GSP(일반특혜관세, General System of Preferences) 대상국에 포함이 되었으나, 1989년 4월 비민주적인 군부정권을 이유로 1989년 미국으로부터 GSP 관세혜택이 중지되었으며, 1997년 미국은 미얀마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및 신규투자를 금지한 이래 총 6개 행정명령과 버마민주화법(2003)등에 근거, 투자, 무역, 금융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을 조치하는 등 미얀마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2016년 9월 14일, 미국 백악관에서 오바마(Barak Obama) 대통령과 미얀마 국가자문역이자 외무장관인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여사가 면담을 하여, 경제 제재조치 해제 및 GSP 관세혜택 부여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얀마를 GSP대상국으로 재지정하는 대통령 메시지(Presidential Message)를 공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함으로써 60일 이후인 11월 13일부터 미얀마는 미국 GSP 대상국으로 포함되었으며, 미얀마는 GSP 대상국 중 GSP LDC(최저개발대상국, Least-developed beneficiary developing countries)로 지정됨으로써 GSP 대상 품목인 3,500개뿐만 아니라 GSP LDC에게 주어지는 1,500개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진출 기업들이 투자한 업종은 1/3가량이 봉제업인 바 봉제업과 관련된 GSP 혜택이 미얀마에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여성용 정장 자켓, 드레스, 카페트, 장갑, 스카프, 모자 등 중 일

부만 포함되어, 한국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셔츠 등이 포함 되지 않아 한국기업에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GSP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을 미얀마에서 생산한다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미얀마에서도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얀마 봉제산업 GSP 수혜품목

분류	품목	HS Code
양탄자류	카펫	57025020, 57029130, 57029210, 57029905, 57029920, 57031020, 57032010, 57033020, 57039000
편물제 의류	장갑, 숄, 스카프, 헤어밴드 등	61161008, 61169208, 61169308, 61169935, 61171040, 61178085
비편물제 의류	손수건, 여성용 정장 자켓, 드레스 등	62043960, 62044910, 62101020, 62139005, 62141010, 62160008, 62160035, 62160046, 62171085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베게 커버, 현수막 등	63029910, 63049910, 63049925, 63049940, 63064049, 63079085, 63079098
신발류	일회용 신발, 신발 부품	64059020, 64061072, 64061085, 64062000, 64069010, 64069030
모자류	모자, 헤드기어	65010060, 65020020, 65020040, 65040030, 65040060, 65050001, 65069930, 65069960

자료원 :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해외투자 TIP

미국의 GSP 관세혜택 부여 및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해제로 인하여, 미 안마와 미국의 무역 간의 많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현재 유럽에서도 GSP 관세혜택을 받고 있는 미 안마는 노동력에 비해 저렴한 인건비를 갖추고 있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시장에서 마지막 남은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력 사정 기초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부에서도 전력 및 도로, 통신 인프라 구축에 주목을 하고 있어 전력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당장은 힘들지만, 추후에는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담사례

04

Yangon

미얀마 직원들의 휴가와 관련된 사례



C사는 현재 미얀마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미얀마 근로자의 휴가 제도와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문의하였습니다.

양곤무역관

곽희민 양곤무역관

yangonkwak@kotra.or.kr

미얀마의 법정 휴가는 1. 임의 휴가(Casual Leave), 2. 유급휴가(Earned Leave), 3. 병가(Medical Leave) 및 4. 출산휴가(Maternity Leave)가 있습니다. 이 중 임의 휴가, 유급휴가, 병가는 휴무 및 공휴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출산휴가는 사회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무 및 공휴일법에서 지정한 휴가 기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정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모든 합의 및 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얀마의 법정 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의 휴가라는 것은 개인적인 급한 용무를 위해 근로자는 연간 6일의 임의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3일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연내 사용하지 않는 임의 휴가는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유급휴가(Earend Leave)의 경우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유급의 수준은 평균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달의 근로 횟수가 20일 미만일 경우 연차의 하루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30일까지의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병가를 연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 중뿐만 아니라 근무 외에서 다치더라도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노동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면, 파업을 하는 사례가 많고 또한 노동부에서는 불법적인 시위가 아닌 이상은 관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휴가를 악용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면 퇴사를 시킬 수 있으나, 연속해서 이를 무단결근을 하고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음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시 해당 사태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얀마는 노동부에서 고용계약서를 지정되어 있어, 회사에서 만든 노동계약서는 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 계약체결 시에 합법적으로 사내 취업규칙을 명시하고 취업자들에게 미얀마어로 인지시켜주어야 하며, 노동자들이 근로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투자 TIP

미얀마에서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휴가를 줄 때 취업 전에 미리 명시를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노동부에서 지정한 계약서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사용자가 휴가, 급여 복지 등에 대해서 취업 시 알려주어야 하며, 노동자가 영어로 듣지 못할 경우 미얀마어로 설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합법적이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내 규칙을 작성하여, 변호사의 검토를 받은 후 직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05

Yangon

미얀마의 토지 제도 및 외국인의 미얀마 토지 사용



미얀마의 토지 제도 및 외국인의 미얀마 토지 사용과 관련한 미얀마 법률 제도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양곤무역관

강수구 변호사 / 법무법인(유) 율촌, 율촌 미얀마 사무소
sgkang@yulchon.com

미얀마 헌법 제37조 제(a)항에 따르면, 미얀마 내에 있는 모든 토지와 천연자원은 미얀마 연방공화국이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의 사용 및 천연자원의 추출을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얀마의 토지는 크게 다음 세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① State Land

이는 정부 소유의 토지로 정부에 처분권이 있는 토지로서,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의 권리는 양도 또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② Freehold land

Freehold land는 사용 기간의 제한이 없고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며, 정부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토지로서, 사실상 개인 소유 토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정부가 보상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전체 토지 중 Freehold land의 비율은 크지 않으며, 주로 대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③ Grant land

Grant land는 정부의 결정에 의해 사용권이 부여된 토지로서, 사용 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정부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 기간은 10년부터 최대 90년까지이며, Grant land의 사용권은 양도, 담보 제공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1948년 미얀마 독립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발생한 극심한 토지에 대한 권리 남용을 규제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미얀마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과 외국회사가 토지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987년 부동산 양도제한법(Transfer of Immovable Property Restriction Law)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의해 특별히 허용된 경우가 아닌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거나 1년을 넘는 기간 동안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다만, 미얀마 국내 정세의 변화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1년 9월 30일 정부 고시 2011/39(이하 “2011년 고시”)를 발표하여, 정부, 정부기관, 개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외국인에게 장기간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외국인투자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외국인 투자회사도 투자 기간 및 투자의 규모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토지를 임대받을 수 있고, 임대된 토지의 임대 기간이 만료할 경우, MIC의 허가를 받아 토지 임대 기간을 10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제정된 미얀마 투자법에서는 MIC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투자자도 별도의 MIC(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을 받아 토지 장기 임대(기간은 기존과 동일)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외투자 TIP

특정 토지에 관한 권리 또는 임차권 등登記 가능한 권리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토지등기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등기부(Register)에 등기가 되어야 하며, 등기부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가 됩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매매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증서(Deed of Sale)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부동산 매매계약만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되지 않고, 매매증서를 등록하여야 법률적으로 권리의 이전이 완성됩니다. 미얀마의 부동산 제도상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기부를 두고 있지 않으며, 건물에 대한 독립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권리자가 갖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입니다. 다만, 새로 제정된 콘도미니엄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물 소유권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BANGLADESH

방글라데시



상담사례

01

Dacca

현지 선납 소득세 규정에 대한 이해



상담내용

A사는 방글라데시에 건설사업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세제를 조사하던 중 현지 발주 공사 수주 시는 물론 여러 단계에서 선납 소득세(Advanced Income Tax)라는 세목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히 이 선납소득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 제반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다카무역관

최원석

jmorning@kotra.or.kr

방글라데시는 조세 행정 체계 미흡으로 인해 사후 소득세 징수 시 광범위한 탈루가 일어나고 있는 바 다수 거래에 있어 구매자(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거래시점에서 선납소득세(Advanced Income Tax, 이하 AIT)를 원천징수(Withholding)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품 수입 시 통관 단계에서 AIT를 부과하는 것, 정부 프로젝트 발주 시 정부가 AIT를 원천 징수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것, 건물 임차 시 임차인이 임대주를 대신하여 AIT를 징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납소득세(AIT)라고 불리우나 법규상에서는 “세금 원천징수 및 선납(Deduction at source and advance payment of tax)”으로 규정합니다. 관련 법규는 Income-tax Ordinance, 1984 : 7장(Chapter VII), PAYMENT OF TAX BEFORE ASSESSMENT에서 규정하며, 일부 세부 사항은 Income Tax Rules, 1984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거래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급여,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Income derived on account of supply of goods, Execution of contracts or services rendered), 상품수입, 전문/기술 서비스, 로열티, 부동산 임대 등이 우리 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소득입니다. 징수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받는 자로서, 공급자를 대신하여 사전 소득세를 징수하고 이를 국세청에 납부한 후 납세증명서를 공급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단, 상품 수입의 경우 수입자가 세관에 사전 소득세를 납부하면 세관이 이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세관을 징수/납부 의무자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봉제산업 주요 원천 징수 대상 소득, 징수/납부 의무자, 세율

급여	급여 지급자 (고용주)	세율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	대금 지급자	후술
상품 수입	세관	기본 5%
전문/기술 서비스, 로열티	대금 지급자	10%
부동산 임대 (상업건물, 주거건물 불문)	세입자	5%
해외에서 송금된 보수, 컨설팅비용, 서비스비용	금융기관	10%
부동산 이전(transfer)	신규등록 주체	기본 3~4%
배당	배당지급 회사의 대표 (principal officer of a company)	20%

자료 : 방글라데시국세청(NBR)

한편, 방글라데시 납세자번호(TIN)가 없는 비거주자(Non-Resident)가 개입한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Income-tax Ordinance, 1984 / 56조) 그러나 공급받는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세율 변동이 있어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공급/도급실행/서비스공급 관련 세율 변경(프로젝트 수행 기업)이 2016/2017 회계연도(2016.7.1. 시작)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법인이나 지사가 없는 우리 기업이 현지 기업에 도급을 줄 때 선납소득세 처리가 문제가 되므로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제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선납소득세는 거래별로 적용되는 바 분할 계약을 할 경우 전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 관련 사전소득세율 변동 내역

(단위 : 천BDT, %)

변경전		변경 후	
거래액	세율	거래액	세율
~200	0.0	~200	0.0
200~500	1.0	200~500	1.0
500~1,500	2.5	500~1,000	2.0
1,500~2,500	3.5	1,000~2,500	3.0
2,500~30,000	4.0	2,500~10,000	4.0
30,000 초과	5.0	10,000~50,000	5.0
		50,000~100,000	6.0
		100,000 초과	7.0

자료 : 방글라데시국세청(NBR)



해외투자 TIP

•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업체로 공사대금 송금(프로젝트 수행 기업)하는 경우

-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사 등 일부 경우 방글라데시 하도 업체에 대한 대금을 한국에서 직접 송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 송금된 보수, 컨설팅비용, 서비스비용”으로 간주하여 금융기관에서 10%의 AIT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전체 세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AIT와 법인(지사) 소득세의 관계

- 연말 정산 시 산정된 법인소득세보다 기납부한 AIT가 클 경우 그 차액은 credit으로 국세청에 유보됩니다. 즉, AIT가 과대납부되었다 하더라도 차액을 실제 돌려주지는 않으며, 차년도 정산 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매년 AIT가 계속 연말산정액보다 크다면 credit만 계속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 수출업체

- 수입통관 단계에 적용되는 AIT는 관세 및 다른 조세와 함께 최종세율(TT)을 구성하며 통관시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제품에 대한 AIT 세율은 5%이나, 일부 품목에는 특혜 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상담사례

02

Dacca

투자기업 직원의 Work Permit 취득 방법



상담내용

B사는 방글라데시에 무역회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상주가 필수적인데 다른 기업의 예를 보면 별도의 근로 비자 없이도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카무역관

최원석

jmorning@kotra.or.kr

먼저 Work Permit과 비자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외국 투자자 및 투자기업 직원이 받는 비자는 투자자비자(P)와 근로자비자(E/E1)가 있으며, Work Permit은 이러한 비자를 받는 근거가 됩니다. 단, Work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에 입국을 해야 하므로 이 경우 3개월 유효한 투자자비자(P) 또는 근로자비자(E/E1)를 한국에서 우선 발급받습니다.

입국 후 Working Permit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정식 투자자비자(P) 또는 근로자비자(E/E1)를 발급받게 됩니다. 투자자(기업 대표 등 지분을 가진 사람)의 Working Permit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근로자 비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Work Permit의 발급기관은 방글라데시 투자청(BOI)입니다. 투자청이 발급한 Working Permit을 근거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단, 수출가공구역(EPZ) 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의 경우 수출가공구역관리청(BEPZA)이 발급 주체입니다. Work Permit의 총 유효기간은 5년이며 최초 1년 유효, 이후 최대 4년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비자의 유효기간도 3개월(최초 방문 목적) + 1년 + 최대 4년의 단위로 갱신됩니다.

Work Permit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최소 자본금 5만 달러가 납입돼 있어야 합니다. 해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지사, 연락사무소는 계좌에 5만 달러가 송금돼 있어야 합니다. 한편, 방글라데시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현지인 고용 비율이 제조기업의 경우 1:20, 다른 유형의 기업의 경우 1: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Work Permit 발급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1) 3개월 유효 비자 발급: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투자청(BOI),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에서 비자신청자의 고용사실을 보증하는 레터, 고용계약서, 고용주 및 관련 기관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 등록증, 상공회의소 및 협회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3개월 복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방글라데시 입국 후 Work Permit 신청: BOI에 Work Permit 발급을 신청하는데 이때 주주회의록, 채용광고, 채용 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3) BOI 등은 제반 조건이 충족된 경우 1년 유효한 Work Permit을 발급합니다.

Work Permit은 최초 1년이 지난 후 최대 4년까지 Work Permit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규정 강화로 근로기간이 5년을 넘으면 엄격히 Work Permit 연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투자기업들은 장기 근로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지분을 할당, 투자자 자격으로 체류를 연장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사가 문의한 “Work Permit 없이 체류하는 직원”은 6개월 기한의 비즈니스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현지에 법인, 지사가 없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 등이 흔히 이용하는 방법으로 6개월이 만료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6개월 비자를 또 받는 것입니다. 이 때 해당 직

원에 대한 초청(Sponsorship)은 통상 현지 협력업체 등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는 외국인의 이러한 행태를 탈세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투자 TIP

방글라데시 내 법인 설립 시에는 통상 8종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공장 설립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투자청 승인(BOI Certificate), 기업 등기(Certificate of Registration), 사업자 등록(Trade Licence), 납세 번호 취득(TIN), 부가가치세사업자등록(VAT), 수출허가(ERC), 수입허가(IRC), 지역 상공회의소 가입이 그것입니다. 수출 및 수입허가는 사업 형태에 따라 불요할 수도 있으나 설립 시점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Working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현지 컨설턴트 중에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일부의 허가만 취득하여 사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행정의 특성상 사후에 어떤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면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하므로 설립시점에 이러한 요건 등을 모두 갖추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VIETNAM

베트남



상담사례

01

Hanoi

베트남 신투자법하의 유통업 허가 변경내용



상담내용

A사는 한국에서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베트남은 2015년 신투자법 및 기업법의 시행 이후 투자허가 절차는 일반적으로 투자등록증의 발급과 기업등록증의 발급을 이원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투자법하에서 유통업 허가 절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유통업 허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하노이무역관

이홍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hbyl@yulchon.com

종전 베트남 내국인 투자자는 사업자등록증(BRC: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허가서(IC: Investment Certificate)를 통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투자법 및 기업법 하에서는 외국인 지분 51% 이상 투자 시 또는 조건부 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 시 외국인 투자기업 적용 대상이 되고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증명서(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법 하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는 동일하게 기업등록증(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을 신청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기업등록증은 한국법상 법인 등기에 해당하며 기획투자국 사업자등록기관이 담당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유통업은 개정 투자법하에서도 여전히 조건부 투자분야로 분류되어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정부에서 요구하는 유통업 영업허가의 취득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베트남 정부는 유통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국적, 유통업에 대한 경험, 외국인 투자자의 재무능력, 유통 대상 물건 및 영업 내용이 법령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구법상의 투자허가서(IC) 또는 신법상의 투자등록증(IRC)을 발급 받을 때 발급 이전에 산업무역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유통업 영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 구법상의 투자허가서에는 유통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었고 따라서 투자허가서 자체가 유통업 영업허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데 기획투자부의 내부 공문인 2016. 3. 31.자 2383/KKHDT-DTNN에서는 '투자등록증과 영업허가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증서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에는 각 외국인 투자기관은 투자등록증 및 기업등록증 발급과 별도로 회사 또는 투자자가 별도로 신청하여 유통업 영업허가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획투자부의 내부 문건은 추후 법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외국인은 투자법에 따른 투자허가를 받아 투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한 후 별도로 유통업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인허가 절차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투자자는 유통업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성급 인민위원회 기획투자국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기획투자국은 적법하고 유효한 문제가 접수된 경우 3일 이내 산업무역부에 해당 신청의 승인 여부를 묻게 되고, 산업무역부는 15일 이내에 해당 기획투자국에 승인 여부를 통보합니다.

기획투자국은 산업무역부의 유통업 영업허가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성급 인민위원회가 유통업 영업허가서를 발급하도록 조치하고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자자에게 유통업 영업허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통업 영업허가에 관한 위 소요기간은 행정기관 내부에 적용되는 기간이고 또한 유통업 영업허가는 행정법적인 관점에서 재량행위에 가까운 처분행위로 이해되므로, 실무적으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추가적인 서류의 보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유통업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가 이행되는 지역의 인민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라 유통업 영업 허가기간이 서로 상이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하노이시, 호치민시 및 하이퐁시의 인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최장 10년까지만 영업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유통업 활동에 필요한 상업시설 또는 창고 등의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단기간의 허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 허가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유통업 특히 소매점의 경우에는 지역 경제 및 영세 중소기업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제약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따라 유통업 영업 허가기간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업 영업 허가에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당 회사가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고 반드시 해당 법인을 청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업 영업허가서는 법인설립과는 다른 별도의 허가서이고 해당 허가기간의 만료 시점에 투자자가 다시 유통업 영업허가의 연장신청을 하여 그 영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종전 투자허가서(IC) 발급 시 산업무역부의 승인을 받아 유통업 영업허가와 투자허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던 방식이 신투자법 하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등록증 및 기업등록증 발급과 별도로 유통업 영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투자등록증 및 기업등록증과 별도로 발급되는 유통업 영업허가서는 산업무역부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각 인민위원회 기획투자국마다 조금씩 다른 절차를 밟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통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유통업 허가 절차와 투자등록증 변경절차가 각 성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획투자국에 문의하여 명확한 투자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02

Hanoi

베트남 개정 민사소송법 하의 가압류신청



상담내용

FD(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인 B는 다른 FDI 기업 C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동 회사의 영업상황이 악화되어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는 C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C는 채권자 B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채무이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B는 채권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한국에서처럼 C가 받을 채권이나 다른 재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였습니다.

하노이무역관

이홍배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hbyl@yulchon.com

2016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은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의 절차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우선 개정 민사소송법상의 주요 보전처분 절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개정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고 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총 17가지의 보전처분(Provisional Emergency Measures)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민사소송법에서 인정한 13개 보전처분 유형에서 4가지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베트남의 보전처분은 한국과 같이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유형화하지 않고 구체적인 보전처분 방식에 따라 개별적인 17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보전처분은 소송 중에 또는 소제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일, 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피신청인의 이름 및 주소, 분쟁의 요지, 신청 이유, 보전처분의 종류를 특정해서 기재하고 이에 더하여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분쟁의 해결 또는 법 집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피신청인이 은행, 신용기관 및 국고에 보유한 계좌, 기타 피신청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최소한 소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점에서 한국의 보전처분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송 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소제기 이전에 분쟁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거나 미지급채권의 회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소제기 전에는 그러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편 신청인은 채무자 재산 또는 예금계좌의 가압류 등 7가지의 보전처분의 신청 시 보전처분 결정으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거나 부당한 보전처분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제공이 가능한 담보로는 은행 등의 보증서, 현금, 귀금속, 보석, 유가증권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인이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액은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이어야 한다.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아래와 같이 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을 하거나 소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서로 상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소송 계속 중 보전처분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전처분의 신청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며, 담보를 공탁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신청서 접수 3일 이내에 그리고 신청인이 담보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처분의 결정을 합니다.

보전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해당 신청 사건의 판사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 소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을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때 법원은 보전처분의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보전처분을 부여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만약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관련 당사자 또는 검사는 보전처분결정에 대하여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장은 이의 신청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하고, 이때 법원장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다룰 수 없습니다. 소송 계속 중에 이루어진 이

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해당 재판부에서 하게 됩니다.

보전처분의 결정, 변경, 취소에 대한 결정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등록하는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결정의 경우, 관련 당사자는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등록을 관할하는 기관에 보전처분의 결정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에서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사문화되었다고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신청인은 최소한 소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해야 했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일부의 보전처분 신청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며 담보 유형으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 현금 등가물의 제출만이 허용되었고, 민사소송법 또는 국가배상법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법원 또는 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은행 등의 보증서를 담보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보전처분 신청의 주요 제한 사항을 제거하는 등 중요한 진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B는 소제기와 동시에 은행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채무자 C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종전 베트남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사소송법은 은행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비록 채무자의 채무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적절한 수수료 부담으로 은행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소제기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03

Hanoi

베트남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사업과 주택 구매



상담내용

베트남 부동산 사업법과 주택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외국인이 좀 더 자유롭게 베트남에서 부동산 사업과 주택구매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노이무역관

김유호 변호사/법무법인(유)로고스

yhkimlogos@gmail.com

구(舊) 부동산 사업법(63/2006/QH11)에서는 외국인의 기존 프로젝트 인수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허가가 되었고, 빌딩 임차 후 재임대 사업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新) 부동산 사업법(66/2014/QH13)에서는, 외국인에게도 기존 프로젝트 일부 또는 전부 인수와 빌딩 임차 후 재임대 사업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등 사업분야가 좀 더 열렸습니다.

반면,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구 부동산 사업법과 관련 시행령(153/2007/ND-CP)하에서는 실제 출자를 해야 하는 정관 자본금을 기준으로 60억 동이었던 법정 자본금이, 신 부동산 사업법하에서는 세 배 이상 증가하여 최소 200억 동의 법정 자본금을 가진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소규모 부동산의 판매, 거래, 임대 사업 분야는 제외). 특히 기존의 부동산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피인수 기업이나 임대인이 신 부동산 사업법에 맞게 법정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자본금의 증가와 더불어, 신 부동산 사업법은 집을 분양받은 사람에 대한 보호 장치도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선(先)분양 후(後)시공을 하는 경우, 분양자는 분양받은 자에게 분양 계약 체결을 할 때 분양자/투자자의 집 인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기 납부금 환불 등의 보증을 위해 은행발행 보증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분할 납부금과 관련해서도 주택 완공 전에 집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최초 분할 납부금(즉, 보증금)을 최대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실제 집을 분양받은 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받을 수 있는 납부금(즉, 보증금+중도금)은 분양자가 베트남 법인인 경우에는 70%, 외국투자법인인 경우에는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또 분양받은

자 명의로 집의 소유권 증서가 발급되기 전까지의 최대 납부금(즉, 보증금 + 중도금 + 잔금)은 95%로 제한하여, 분양자가 소유권 증서 발행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2015년 7월 발효된 신 주택법(65/2014/QH13)은 주택 구매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 조건도 완화했고 구매한 주택의 임대도 허용하는 등 외국인의 주택 구매가 완화되었습니다.

Who - 누가 집을 구매할 수 있나?

- 베트남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 도장이 있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 개인(예: 유효한 여행비자, 유학비자 등으로 적법하게 입국한 외국인)
- 베트남에서 적법한 투자등록증이나 해당 인허가를 취득한 외국투자법인, 외국 법인의 지사 및 대표사무소, 외국 은행의 지사 등
- 외교적 특권이나 면책 특권 등 특별 대우의 대상인 개인(예: 외교관)은 제외
- 법령에 따른 우선권 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재외공관(在外公館)과 외국기구의 대표사무소는 제외

Where - 어디에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나?

- 외국인은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집의 구매만 허용됨.
- 상업주택건설 지역에 위치하지 않은 집(예: 일반 주거 단지에 있는 아파트, 시골 마을에 있는 단독 주택)과 군사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있는 집은 구매할 수 없음.

What - 제한 사항은 무엇이고, 구매한 집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

- 지방 건설국의 웹사이트에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집의 수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없는 주택건설사업 명단 등을 공고
- 외국인에게 구매가 허용된 집의 수를 초과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소유권 증서 발행도 안 됨.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관련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외국인 개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사전에 군/현급 주택 관리 담당 기관에 신고하고,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함.
- 외국투자법인은 소유한 집을 제삼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금지되고, 직원 숙소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재판매를 위해 집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이는 부동산 사업허가 없이 하는 부동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When - 소유권 증서 발행 전까지의 집 소유권 증명, 외국인의 집 소유 기간, 매매각 시점

- 선분양 후시공의 경우 등 집 소유권 증서가 발행되기 전까지는 집 계약서로 소유권을 증명함.
- 주택의 영구 소유가 가능한 베트남인과 달리, 외국인 개인의 집 소유권 기간은 최대 50년, 외국투자법인은 법인 존속기간까지라는 제한이 있음.
- 외국인 집 소유자는 소유 기간 만료 전에 연장, 매각 또는 증여를 할 수 있음. 연장, 매각 또는 증여 없이 집 소유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소유 기간이 만료된 집은 베트남 정부 소유가 됨.
- 베트남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베트남인과 동일하게 집의 영구 소유가 허

용됨.

- 외국인이 소유한 집의 구매자가 베트남인이면 구매한 베트남인의 집 소유 기간은 영구적이나, 구매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판매자의 나머지 소유 기간만 외국인 구매자의 집 소유 기간이 됨.

How - 어떻게 집을 구매하나?

- 외국인도 금융기관에서 집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집 매매대금은 베트남의 신용기관(예: 은행)을 통해서만 지급되어야 함. 즉, 집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됨.
- 일반적인 경우, 베트남 내의 집 매매 대금의 지급은 베트남 동으로 해야 함.



해외투자 TIP

베트남의 토지는 베트남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국유재산이며,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가 사용권을 개인이나 법인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끔 국가유공자나 특수한 경우에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베트남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계속 토지사용권을 갱신하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을 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기 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04

Hanoi

베트남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관련 사항



상담내용

A사는 베트남에 새롭게 진출한 법인입니다. 올해 부가세법이 개정된 이후, 매입부가세공제 및 환급에 관한 이야기가 부정확하게 나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하였습니다.

하노이무역관

엄진용 회계사/이정회계법인 하노이지사

uhmcpa77@gmail.com

베트남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된 매입세액 공제가능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에 해당되는 매입세액만 공제가능. 구분경리 불가능한 경우, 매출액으로 안분함.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고정자산에 부과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 가능
4. 자산, 구조활동 목적 구입 재화 및 용역에 부과된 매입세액은 전액공제
5. 매월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의 신고 및 공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 발견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매입세금계산서가 수정된 경우 공제신고기한인 6개월은 최초가 아닌 수정된 세금계산서 일자를 기준으로 함)
6. 2천만동 이상 매입에 대한 대가 지급 시 반드시 은행을 통해 송금하여야 함.(매입부가세 포함 2천만동)
 - ▶ 할부방식도 동일함.
 - ▶ 2천만동 이하 구입이나 동일자에 다른 매입을 포함하여 초과하는 경우 해당됨.
 - ▶ 거래처간 상계하는 경우 인정함(상계후 잔액이 2천만동 초과하는 경우 은행송금 해야 함).

또한, 베트남 부가세법상 매입세액의 환급의 경우, 종전 '12개월 이상 또는 4분기 연속한 기간 동안 누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 신청 가능'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2016년 4월 6일 부가세법 일부 개정). 이에 따라, 미공제매입세액은 부가세환급신청 대신 차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간(영업 개시 이전) 및 수출 재화/서비스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은 유지됩니다.

1. 투자기간(영업 개시 이전)

- ▶ 투자관련 매입세액이 3억동을 넘을 경우 환급가능.(=토지사용권, 건축, 기계설비 등)
- ▶ 또한, 여전히 투자기간에 속해 있어야만(즉, 영업 개시 이전) 투자관련 매입세액 환급신청이 가능함.
- ▶ 단, 아래의 경우는 비록 투자기간에 속하지만 환급신청이 불가함.
 - 등록된 정관자본금이 납입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 투자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부 사업 및 유통과 관련한 투자 프로젝트인 경우
 - 2016년 7월 1일 수령한 투자등록증상 천연자원탐사와 관련된 프로젝트이거나, 천연자원과 에너지비용이 전체 제조원가의 51%를 초과하는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인 경우

2. 영업 개시 이후

- ▶ 수출 기업의 경우 매월 환급 신청 가능.(미공제매입세액이 3억동을 초과하는 경우) 단, 세관규정을 위반하여 수출된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함.

- ▶ 환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 내에 환급 심사 후 환급승인액을 통보 (환급거절 시 금액 및 사유통보)
- ▶ 수출 기업의 경우 규정에 따른 수출통관이 이루어진 후 실제 수출이 완료되고, 수출 대금 결제가 완료되어야 환급 대상이 됨.
- ▶ 이미 환급된 부가세의 경우일지라도 세무조사 시 지적이 되면 다시 환급이 취소될 수 있음.



해외투자 TIP

부가세 환급조사는 정기세무조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부가세 환급조사를 마쳤다고 해서, 해당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환급 등이 모두 문제없다는 식의 오해가 많은 바,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아울러, 부가세 환급의 경우 실무적으로 투자기간과 영업개시 기간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각 관할 세무서별로 최초 생산개시 시점 내지는 최초 세금계산서 발생시점, 투자등록증상 영업개시 예정 일 중 세무서의 입장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05

Hanoi

베트남 소득세법상 유의사항



상담내용

A사는 한국에서 파견 나온(즉, 베트남 법인으로 발령이 이루어진) 한국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복리후생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세무조사에서 개인소득세 관련 지적사항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과거와는 다르게 소득세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개정된 사항이 있거나 법인에서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하였습니다.

하노이무역관

엄진용 회계사/이정회계법인 하노이지사

uhmcpa77@gmail.com

1. 주거비 지원 과세소득의 산정

거주자 외국인 종업원이 회사에서 주거비를 지원받을 경우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산정 시 주거비 지원액과 과세소득의 15% 중 작은 금액을 과세소득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소득세 관련 예규를 살펴보면, 만약 해당 외국인이 외국과 베트남 양 국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15%를 곱하는 과세대상 소득에는 외국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흔히 투자기업의 직원들이 한국과 베트남에서 급여를 받고 베트남 급여신고 시 주거비 지원산정 시 한국 급여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2. 기타 복리후생지출의 개인소득세 과세여부

외국인 파견직원의 경우 대부분 회사에서 노동허가, 비자관련 비용 등을 법인에서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노동계약서에 관련사항이 기재되어있고, 합법적인 증빙을 갖춘 경우 법인세 계산 목적으로는 비용공제가 인정됩니다. 다만, 개인소득세 계산 목적으로는 본 사항을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다른 예규에서는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경우도 있어 정확한 사항은 해당 사항 발생 시, 각 법인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 직접 질의회신을 하여 그 근거를 문서로 남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3. 임대소득과세에 대한 가이드

2015년 변경된 개인소득세법에 의하면 연 자산임대소득이 1억동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임대인은 개인소득세 및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임대소득이 1억동을 초과할 경우 개인은 소득세 및

부가세를 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임차인이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할 경우 임차인이 회사인 경우 1)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지급증빙, 3) 임대소득납부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항은 과거에는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 세무서에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최근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법인세법상 비용공제에 혼란이 생겨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출장관련 비용지출 및 휴대폰비용에 대한 가이드

최근 국세청 예규에 의하면 종업원 출장 시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접대비, 일당(Per Diem)을 지원할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는 개인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입니다. 종업원들에게 휴대폰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한 비용이며, 개인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입니다. 다만, 해당 지원에 관한 사항이 내부서류(노동계약서, 단체협약서, 기타 규정에 정한 금액한도)에 명시되었을 경우에 한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5. 외국인거주자의 귀국 시 연말정산관련

외국인거주자가 본국 귀국 시 마지막 연도의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일 경우 해당 외국인은 마지막 년도는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누진세율 및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소득에 단일세율인 20%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해당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없습니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기존에 누진세를 적용하여 납부한 세액이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납부한 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본인이 환급 신청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참고로 최근에 사회보험료 등 의무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개정되어, 2016년 5월 1일부터 보험료 상한을 계산하기 위한 최저임금액이 1,150,000VND에서 1,210,000VND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보험료 등 계산의 상한은 1,210,000VND의 20배인 24,200,000VND(기존: 23,000,000VND)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담사례

06

Ho Chi Minh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상담내용

A사는 호치민시 인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인이 운영하는 B사가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A사는 B사에게 남는 공장 공간을 임대하여 주고자 합니다. A사는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임대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호치민무역관

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JP

lawyerpys@hanmail.net

제조법인의 경우에도 서비스 업종(특히 수출·입, 유통 업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는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제조법인이 소유(사용)하는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전대)하고자 하는 문의가 있는 바, 제조법인의 공장임대업종 추가 관련 최근 구체적인 실무례(동나이성 소재 공단 내 업체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법상 조건

공장 임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사업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부동산사업법과 토지법상의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 최소 200억 VND의 법적 자본금을 가질 것(즉 해당 업체의 정관자본금이 적어도 동 금액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 부동산사업법 제10조 제1항 참고)
- 나. 임차받은 토지 상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해당 공장 임대 가능 또는 공장 임차 후 전대하는 경우는 가능, 그러나 매수한 공장을 임대하는 것은 불가(부동산사업법 제11조 제3항 참고)
- 다. 공장 소유권을 포함한 해당 부지에 관한 LURC(소유권 증서 Land Use Right Certificate)를 가지면서 해당 부지 임차료를 일시불로 납입하였을 것(부동산사업법 제9조 제1항, 토지법 제174조 제2항 제b호 참고).

2. 그 외 조건

- 가. 기본적으로 임대업자가 공단 내 제조업체이고, 공단 내의 경우는 주된 업무가 제조업체인 것을 전제로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가 보유

하고 있는 공장 전부를 임대하여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 즉 공장 면적 중 일부 사용하지 않는 여유면적을 임대

나. 실무상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파티션이나마 외관상 구획(분리)하도록 요구

다. 공단 내 업체의 공단 개발사와의 토지(공장)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업체의 공장을 임대하고자 할 때 공단 개발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므로 제출서류로 공단 개발사의 (업체의 공장임대에 관한) 동의서 요구

참고로 동나이성의 경우, 관할기관인 동나이성 공단관리위원회에서는 동 부동산사업 업종 추가 시 IRC(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ion)는 별도로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동나이성의 경우 기존 IRC변경이 아닌 별도 IRC 발급받도록 신청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동나이성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외의 시·성의 경우에는 각 해당 시·성의 이와 관련한 실무상 의견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TIP

공장을 임차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인이 공장임대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공장에 법인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러한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신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당사례

07

Ho Chi Minh

유한회사의 투자자금 회수 방법



상담내용

A사는 동나이성에 제조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인투자회사의 경우 대부분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많이 접해 보지 못해 생소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유한회사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호치민무역관

박영수 변호사/법무법인 JP

lawyerpys@hanmail.net

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투자자인 개인이나 모기업과 분리된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투자자와 분리하여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회사의 자산이나 채권·채무도 온전히 회사에 귀속됩니다. 투자자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회사의 지분이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투자자와 회사는 다른 존재이므로 투자자가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각 형태 회사의 투자 자본 회수를 위한 방법과 절차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투자자인 사원(社員)이 회사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로, 주주 구성의 폐쇄성과 조직의 간이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베트남에는 “1인 유한회사(LLC with one member)”와 “2인 이상 유한회사(LLC with two or more members)”가 있는데 1인 유한회사는 사원이 1인인 회사이고, 2인 이상 유한회사는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원이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의 사원이 투자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분 양도, 이익 분배(배당과 같은 의미), 자본감소, 지분 환매, 회사 청산 등이 있습니다.

지분 양도는 사원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주식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권이 지분으로 분산됩니다.

1인 유한회사의 유일한 사원인 소유자는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자유로이 지분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회사의 투자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투자증명서(개정법상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과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분 양도로 회사의 사원이 2인 이상이 될 경우에는 2인 이상 유한회사로의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인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사원은 먼저 기존의 다른 사원들에게 인수를 제안하여야 하고 기존 사원들이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주구성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기존 사원에게 우선권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분의 양도는 회사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지분 자체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지분이 양도되어 투자자가 변경되더라도 회사의 자산이나 채권 채무 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지분 양도와 구별되는 것으로 회사 자산의 양도가 있는데 회사가 보유한 자산(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자산 양도를 하면 그 매매대금은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고 이익 분배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투자자가 그 이익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익 분배는 회사의 영업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고 세금 등 각종 재정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있을 때 실시할 수 있습니다. 1인 유한회사는 투자자인 소유주가 이익 분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2인 이상 유한회사는 사

원총회가 결정합니다.

자본감소, 즉 감자는 투자자가 출자한 정관자본금을 감소시켜 그 감소액 상당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정 기업법에 따라 2인 유한회사뿐만 아니라 1인 유한회사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 감자가 가능합니다.

지분 환매는 투자자본 회수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특수한 경우 회사가 사원이 보유한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투자 자본이 회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원총회가 사원 또는 사원총회의 권리 의무에 관한 정관 내용 수정 및 추가, 회사의 조직변경 등 중요사항에 관한 결의를 할 때, 그와 같은 결의에 반대하는 사원은 회사에 지분 환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청산은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고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운영기한이 만료되고 연장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 소유주(1인 유한회사)나 사원총회(2인 이상 유한회사)가 해산을 결정한 경우, 사업자등록(투자증명서)이 취소된 경우 해산됩니다.

다만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 초과 상태(회사의 자산으로 채무 등 재정 의무를 모두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하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회사의 해산이 결의되면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임금과 수당 등 근로자에 대한 각종 채무, 사회보험

금, 세금, 기타 채무의 순서로 변제한 후 잔여 재산이 있으면 회사의 소유주나 사원에게 배분됩니다.



해외투자 TIP

이상에서 살펴본 회사에 대한 투자자본 회수 방안은 법령에 규정된 일반적 내용으로, 각 회사의 법적 지위 및 회계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투자와 그에 따른 이익 회수는 새로운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되므로, 회사 자산과 투자자 이익 보호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상당사례

08

Ho Chi Minh

국제재판관할권



A사는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설립한 외국인투자회사로 베트남에서 봉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A사는 한국 내에 설립된 한국 회사 B에게 정기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분쟁이 발생하였고 계약서상에 분쟁 방법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A사는 기왕이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떠한 기준으로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호치민무역관

백웅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wrbaek@lawlogos.com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기업 간 생긴 분쟁은 당연히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과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법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는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문제에 해당하는데,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도, 한국계 기업 간 분쟁에 대해서는 가급적 한국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범위와 사례들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 관련성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분쟁과 대한민국 간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축적된 판례를 통해 그 범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의 동향

1) 2001년 국제사법이 시행되고 4년 후인 2005년경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 결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자세히 언급하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해당 사안은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미국의 국가중재위원회의 이전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 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며, 해당 사안의 경우, 도메인 이름의 선등록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한국이었고, 해당 웹사이트의 주된 이용언어도 한국어였으며, 도메인 이름에 대한 판정으로 영업상 손해가 발생한 곳도 원고의 사업본거지인 한국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후 국제재판관할권과 관련된 사안은 공통적으로 위 2005년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였습니다.

- 2) 김해공항 인근에서 중국 항공기가 추락하여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들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에서, 대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청구원인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불법행위지(이 사건 사고의 행위지 및 결과발생지 또는 이 사건 항공기의 도착지) 및 피고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속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통신상의 편의 측면에서 중국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피고 회사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원고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쉽사리 외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역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최근까지도 계속되어, 일본에 주소를 둔 재외동포가 역시 일본에 주소를 둔 다른 재외동포를 상대로 3건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에서, “채권의 발생 자체가 대한민국 내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원고가 가압류집행한 피고 소유의 부동산 역시 위 개발사업의 부지로서 당해 재산과 분쟁의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음을 이유로 2건의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1건의 대여금 채무에 대해서도 피고가 관할권 유무에 대하여 1심에서부터 다투지 않은 이상, 변론관할(원고가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변론을 진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시는 실질

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1건의 대여금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경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론관할을 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투자 TIP

대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관련성”을 상당히 폭 넓게 해석하여,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행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실질적 관련성이 부정되는 일부 청구에 대해서도 변론관할의 인정 등을 통하여 한국 법원에서의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행사 기준을 참조하셔서, 실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 체결 시 분쟁관할을 지정해 두시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사례

09

Ho Chi Minh

이전가격 과세 위험이 있는 회사



상담내용

A사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설립된 신발제조업체입니다. 최근 주위의 동종 업체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많이 보입니다. A사는 어떠한 회사들이 이전가격 조사 및 과세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이전가격 과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회사가 사전적으로 해야 할 일과 세무조사 중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세무조사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호치민무역관

한경배 세무사/EY베트남 회계법인

lawyerpys@hanmail.net

1.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회사

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회사의 특징, 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업종, 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거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회사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아래와 같은 상태의 기업이 이전가격 과세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 A. 베트남 이전가격 규정에서는 이전가격 신고서식(Form 03-7-TNDN Circular 156)을 제출하지 않은 회사나 이전가격 보고서를 구비하지 않은 회사
- B. 연속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는 회사(단, 사업개시 첫해가 아닌 경우)이거나 저세율국가와 거래를 하는 회사
- C. 이전가격 거래규모가 크고, 과거 이전가격 조사를 받지 않았거나, 세금 감면을 받았거나, 이익률이 낮거나 비정상적인 회사

2. 최근 들어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이 있는 업종

- A. 최근 들어 의류, 섬유, 전자제품 제조업, 위탁가공업 등을 하는 업종에서 이전가격 위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B. 위의 우선업종은 이전가격 과세가 상대적으로 쉬운 업종이어서 베트남 국세청에서 과세를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전가격 경험을

쌓은 베트남 국세청은 다른 산업으로 이전가격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이전가격 위험이 있는 거래 유형

- A. 전통적으로 이전가격 과세를 많이한 업종은 상품거래 기업들입니다.
이 상품 거래의 경우 이전가격 과세를 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B.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경영자문료, 즉 본사에서 전 세계 자회사의 공통 업무를 하는 공통비를 베트남자회사에 배부하는 거래라든가, 로열티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C. 그리고 베트남 이전가격세제는 국외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이전가격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내거래 이전가격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II.이전가격 대응 방안

1.이전가격 사전 대응 방법

A. 이전가격에 위험에 대한 사전 진단

이전가격 위험에 대한 사전 진단을 통한 리스크를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분석을 통하여 우리기업이 이전가격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리스크 분석시에

사용하는 예시입니다.

- 사업확장 및 원재료, 고정자산, 제품의 장상가격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를 통하여 낮은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경우
- 수출 판매 또는 임가공 등 단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위험을 부담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회사
- 관계사 간 위험분담에 대한 근거 없이 지난친 비용부담을 하는 경우
- 관계사 간 명확한 근거(서비스 내용이나 가격결정 구조) 없는 용역수수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경영자문료 – Management Service Fee)
- 무형자산을 사용(로열티지급)하면서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회사의 경우
- 외부용인을 제외하고, 문서화된 이전가격 정책과 실제 사업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B.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이전가격의 경우 이전가격 거래가 있는 과세당국 모두에게 과세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만약 베트남에서 이익률이 낮으면 베트남 과세당국이 과세를 하려 할 것이고, 베트남에서 이익률이 너무 높으면 한국 과세당국에서 과세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를 막기가 쉽지 않는데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하면 양 과세당국에서 이전가격 리스크를 충분히 막을수 있습니다.

Circular 201(2013.12.20.)에 의해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도입되어

2014. 2. 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과세당국 간에 지금 2차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S전자, C섬유 등의 업체가 APA를 진행중이고 지금 10여개의 업체가 신청준비 중이고 많은 기업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는 양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C. 이전가격 세제 관련 협력의무를 충실히 수행

이전가격 관계사 거래 명세서 등 자료제출협력의무에 대해 충실히 수행하고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및 세무서 요구 시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전가격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가격 보고서를 미제출 시에 과세 당국에서 본인들 마음대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이 있으며, 이전가격 보고서 미작성 시 관련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시 이전가격 소명의무가 과세관청으로 이관되므로 이전가격 조사 시 필히 제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2.이전가격 세무조사 시 대응 요령

A. 본사와 유기적인 연락

이전가격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사에서 가격을 수립하므로 본사에 연락하여 이전가격 대응을 본사와 같이 할 건지 자회사가 단독으로 할 건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B. 이전가격 전문가와 전략 수립

이전가격은 전문분야이므로 주변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과세액을 줄이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조사반에 이전가격 보고서는 기한에 맞춰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가격 보고서 미제출 시 과세당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과도한 과세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전가격 분야 중에 회사의 약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구분손익계산서 작성, 손실이 나는 이유에 대한 논리 개발, 가격의 차이가 나는 논리 개발 등)

C. 과세당국과의 이전가격 과세액 협상

이전가격 조사관들은 회사에 나오기 전에 과세 목표액에 보통 수립하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당국의 목표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정보수집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후에 할 수 있는 절차인 상호합의나 과세불복에 대한 회사 내부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액을 좀 줄이더라도 향후 과세불복을 포기할지에 따라서 과세액 협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세무조사 후 대응 방안

A. 조세불복 절차

이전가격 조사를 받아서 과세를 당한 경우에는 과세당국단계에서 2차에 걸친 이의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과세를 철회하는 것으로 과세결정을 받은 관할 세무서에서 1차로 신청할 수 있고, 처리기간 내에 결정이 안되거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상위기관

(GDT, General Department Taxation 베트남국세청)에 2차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과세당국단계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소송 및 항고소송(2심제)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B. 상호합의제도(Mutual Agreement Procedure)의 활용

이전가격 과세를 당하게 되면 이중과세라는 것이 발행합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과세한 이전가격과세는 이미 한국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베트남 조세조약을 이용한 상호합의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 과세당국 간에 회의를 통해서 이전가격 과세의 적정성을 따져보아 베트남에서 과세를 철회하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동일 과세소득 만큼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본사 차원에서 상호합의만 타결되면 과세된 이전가격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외투자 TIP

우리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전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이전가격을 설정하여 이전가격 위험을 키운 게 사실입니다.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전가격을 검토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향후에 돌아올 회사의 크나큰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상담사례

10

Ho Chi Minh

신시행령에 의한 중고기계 수입



A사는 베트남 투자를 결심하면서, 중국산 중고기계를 들여오려 합니다. 물류업체와 상담 결과 사실상 합법적으로 중고기계를 베트남으로 가져올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중고기계 관련된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시행령의 내용 및 중고기계를 들여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호치민무역관

변상현 전문위원(관세사)/KOTRA 호치민무역관

kysar@naver.com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규정 개요

- 선진국에서 Life-Cycle이 지난 기계/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개발도상국으로 수출되어 폐기직전 기계/설비가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투자대상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은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규제조치로서, 중고 기계설비에 대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규제하여 폐기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기존규정과 비교) 제조년한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5년에서 10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중고 기계/설비 수입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술표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며 이 기술표준은 중고 기계/설비의 작동안정성,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에 대한 일정한 기준 적합에 관한 시험 및 검사를 받은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자의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신규
제조년한 5년 이내 잔존가치 80% 이상	제조년한 10년 이내 기술표준 기준

다만 현재 해당 기술표준에 대한 명확한 세부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입요건을 갖추고자 하여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등의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보았을 때 시험 및 검사 비용이 해당 기계/설비 가격의 30~50%에 이르러 시험/검사

비용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 목적인 경우 수입요건 면제

A사의 경우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수입요건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위 제조연한 및 잔존가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중고기계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의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실제 수입 시에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기관(베트남 과학기술부, 투자청, 관세총국)의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요건 예외 사항 : 투자(신규/증액)목적 중고기계 수입

- Circular 23/2015/TT-BKHCN Article 6.에 수입요건(제조연한, 기술표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 조항 내에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신규 또는 증액 투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요건 면제 받기 위한 수입통관절차로 투자등록증명서(IRC)와 수입 예정 중고 기계/설비 리스트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 기계/설비리스트'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베트남 기술과학부의 공식적인 견해인 "시행규칙 23/2015/TT-BKHCN" 관한 '답변 3572/BKHCN-DTG'과 베트남 투자청 관계자의 구두상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적용) 동 시행규칙의 시행일(2016/07/01) 이후 신규 및 증액 투자 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투자등록증(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의 신청서류 중에서 중고 기계/설비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중고 기계/설비 리스트) 베트남 투자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별로 적용될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설명이 서류상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프로젝트의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수입 예정인 중고 기계/설비에 대해 기술 설명서, 원산지, 제조년에 대한 내용이 신청서류인 중고 기계/설비 리스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결론

- 투자진출로 인하여 중고 기계/설비를 수입 예정인 경우, 해당 중고 기계/설비에 대한 신청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가능한 투자등록증(IRC)상에 중고 기계/설비 리스트가 표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투자등록증의 신청서류로서 기계/설비 리스트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가 중고인 경우라면 기술 설명서, 원산지, 제조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중고 기계/설비의 제조번호, 일련번호 등의 동일물품 확인이 가능한 수준까지 서류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투자 TIP

이때까지 투자등록증(IRC) 신청 단계에서는 신규 설립 법인이 어떠한 기계를 사용할 것인지 상세 사항은 잘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설립대행 기관들이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추후에 중고설비 반입이 극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BRAZIL

브라질



상담사례

01

São Paulo

브라질 수출·투자 시 적용되는 주요 세금



O사는 브라질 수출·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브라질 시장 진출 이전에 주요 세금 종류 및 세율 조회 방법 등을 미리 알아 '세금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O사는 브라질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 및 부가세를 어느 곳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수입 금지 제품은 어떤 것인지, 세금 감면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옥 과장/코트라

cristina@kotra.or.kr

브라질 정부가 수입 제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관세(II), 유통세(ICMS), 공업제품세(II), 사회보장세(PIS/PASEP), 사회기여세(COFINS)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수입 관세는 비교적 쉽게 열람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세금들은 세율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수입관세율은 브라질 산업통상부(MDIC)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TEC em excel Inglês - códigos, descrição e alíquotas'를 클릭하시면 HS Code별 수입 관세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dic.gov.br/comercio-exterior/estatisticas-de-comercio-exterior-9/arquivos-atuais>

유통세(ICMS)는 주(州) 정부에게 납부하는 세금인데, 상파울루(São Paulo), 파라나(Paraná),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주는 18%, 리오 데 자네이로(Rio de Janeiro)는 19%, 나머지 주는 모두 17%입니다. 이 세율은 상품이 다른 주(州)로 이동하지 않고 특정 주(州) 내에서만 유통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율입니다. 만일 상품이 주 내에서 유통되지 않고 다른 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지와 도착지 주의 유통세율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한편, 공업제품세(II), 사회보장세(PIS/PASEP), 사회기여세(COFINS)는 수입관세(II)처럼 HS Code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파울루무역관의 경우는 주요 제품의 세율을 코드별로 열람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세율 조회가 필요하신 품목이 있

는 경우, HS Code를 명시하셔서 상파울루무역관에 문의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시장 수출을 희망하는 제품이 수입허가 대상인지의 여부가 궁금하실 경우,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수입이 허가되지 않은 품목의 제품 설명 및 HS 코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원칙적으로 수입 가능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orreios.com.br/para-voce/correios-de-a-a-z/pdf/importa-facil/Lista_objetos_proibidos.pdf

브라질의 경우, 국내에서 공급이 어렵거나 생산이 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수입관세나 공업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동관세적용예외품목(Ex-Tarifario)’이라는 리스트가 있는데, 산업통상부(MDIC)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관세적용예외품목’은 남미공동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으로 브라질 정부가 필요에 따라 품목과 세율을 조정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해서 ‘Lista de Exceções à TEC’를 클릭하시면 관세 예외 적용 품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서 ‘Lista de Exceções de BIT’를 클릭하시면 IT 관련 제품으로 공동관세를 적용받지 않은 제품의 리스트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mdic.gov.br/comercio-exterior/estatisticas-de-comercio-exterior-9/arquivos-atuais>



해외투자 TIP

브라질에는 세금 종류가 너무 많고 계산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브라질에는 상기에 언급한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존재하며, 세율도 제품의 기술적 특징, 사용용도, 유통 지역 등에 따라 기본 세율보다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제품의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계사나 물류 통관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02

São Paulo

브라질 지사 설립과 법인 설립의 차이



상담내용

A사는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현재 브라질 주재 한국기업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할 예정인데, 브라질 현지 파트너에 생산 의뢰 후 생산된 제품을 동사 명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기업으로부터 대금 수금 후 현지 파트너에 생산비를 지불하고 잔액을 한국 본사로 송금할 경우, 이를 위해 연락사무소만 설립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상파울루무역관

강유빈

yubin@kotra.or.kr

외국기업의 브라질 투자 진출 방식은 법인 설립, 지사 설립, 지점 설립, 연락사무소 설립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귀사의 브라질 내 활동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락사무소가 아닌 법인을, 그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직접적인 회사의 영업활동을 제외한 단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업무만 가능하기 때문에 귀사의 투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즉 비영리 단체를 제외하고 외국회사가 연락사무소 형태로 브라질에 투자 진출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사는 외국회사가 투자자로서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차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회사의 이름으로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간은 약 3~6개월가량 소요되며, 승인도 무척 까다로운 편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외국기업의 지사를 본사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세무·금융 측면에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지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국본사에게까지 책임이 확대될 수 있고, '정부 허가'라는 설립 절차상의 문제점이 커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지점은 허가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법인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지점 설립은 신중을 요하며 권장사항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사에 가장 적합한 투자 진출 형태는 법인 설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크게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합명회사, 제한적 합명회사, 주식합명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한국법상의 합명회사와 유한회사의 중간 형태로 이해되고, 주식회사는 한국법상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지사의 단적 차이는 '연방정부의 허가' 필요 여부에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 시 연방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하지만 지사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연방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의 경우 대부분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형태로 법인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는 주주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하되, 그 운영과정상의 회사지배구조나 자금조달 방법에서만 차이를 보이므로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의도에 따라 필요한 회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들 회사 유형 이외의 다른 회사들은 주주 또는 사원의 무한책임 가능성이 남아있는 인적회사로서의 특징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회사 형태입니다.

따라서 브라질에 현지 법인, 그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투자 TIP

브라질 투자법상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법인 설립보다 허가와 조건 및 운영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내용상 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현지 법인은 브라질 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브라질 노동법과 각종 투자법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브라질 투자법에 따르면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브라질 법인의 경영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사 파견직원이 현지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즉 본사 파견직원이 영주권이 없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현지법인의 대표로 임명하여 대리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이전에 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영주비자 발급을 준비하거나 대리운영자를 선정하여 설립 초기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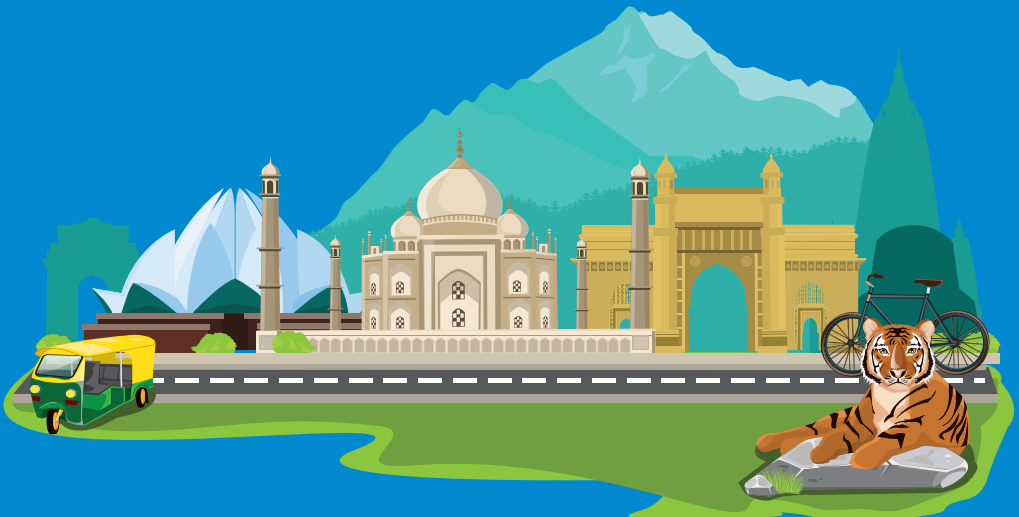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INDIA

인도



상담사례

01

New Delhi

인도 길롯 한국전용공단 관련 문의



상담내용

농기계를 제작하는 A사는 인도로의 투자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중 인도의 한국전용공단에 관해 알게 되었으며, 한국전용공단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및 투자 인센티브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뉴델리무역관

배아랑 뉴델리무역관

arbae@kotra.or.kr

인도 델리 NCR에 근접한 라자스탄 주에서는 정부에서 100% 출자한 라자스탄주산업개발투자공사(RIICO, Rajasthan State Industrial Development & Investment Corporation Ltd)가 주요한 산업개발기관으로 주 투자자들에게 산업, 인프라 및 상업프로젝트에 산업단지 자금 조달 및 용지 획득, 프로젝트 자문 및 지원 등 통합 서비스(One Spot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RIICO는 특정 산업분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경제구역(SEZs), 수출촉진산업단지, 농식품단지, IT단지, 바이오테크(BT)단지, 가죽 복합단지, 의류단지, 자동차 및 엔지니어링단지, 통신 산업단지 등 주 전역에 328개의 다양한 특별산업구역/단지/복합단지를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약 3만 5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동 산업단지 입주를 통해 제품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IICO는 2006년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일본 전용공단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님라나(Nimerana)공단 내에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한 바 있으며 님라나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인 길롯(Ghiloth)공단 지역에 인도 최초로 한국전용공단(KIZ, Korean Investment Zone), 제2일본전용공단, 세라믹존, 일반존을 조성하여, 용지를 분양하고 있습니다.(한국전용공단의 경우, '15년 3월 10일 분양 사이트 오픈, 현재 분양 진행 중)

한국전용공단은 델리-मुंबई산업회랑(DMIC), 철도·광역전철 및 고속도로, NCR 상권에 인접해 있으며 저렴한 용지 임차료, 안정적인 전력을 포함한 우수한 인프라 및 풍부한 노동력,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이고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주정책을 바탕으로 한국 투자자들을 노리고 있

습니다.

공단의 일반적 개요 및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내용의 경우 라자스탄 주정부 방침 등 바뀔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전용공단 개요 및 인센티브 제도 〉

개요	• 위치: 라자스탄 주 길롯(뉴델리 서남단 110km 지점) • 규모: 100만m²(263에이커) • 입주가용면적: 50m²(134에이커) • 임차기간: 99년 리스 • 입주조건: 인도 내 제조업 법인(한국기업 지분 51% 이상) 소재 및 KOTRA 추천 기업 • 공단조성·운영: 라자스탄주산업개발투자공사(RIICO)/ www.riico.co.in • 입주: 2015.3.10.부터 입주신청 서류 접수 시작, 분양 중 • 신청방법: 2015.3.10.부터 입주신청서 접수 개시(2015.2.18.), 단, 투자액 1000만 루피(약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 싱글윈도시스템(웹사이트)을 통해 투자액 1000만 루피 미만인 경우 RIICO 길롯사무소를 통해 제반 서류 제출
인센티브	• 지속생산인센티브: 5년 이상 지속적 생산 활동을 수행한 기업은 RIICO에 지급한 토지임차료의 25%를 보상받을 수 있음. 10%는 3년 간의 지속 생산 활동 후, 15%는 5년 간의 지속생산 활동 후 보상(continuous production incentive scheme, 2013.6.1.) • RIPS인센티브: 라자스탄주투자촉진제도(RIPS, Rajasthan Investment Promotion Scheme, 2014.10.8.~2019.3.31. 적용) 인센티브: 새로운 제조공장 신설 또는 제조공장 증설 시 7년간 적용. 단, Central/State Pollution Control Board로부터 '운영승인(consent to operate)' 획득한 기간이어야 함 *투자 보조금: 부가가치세(VAT) 및 중앙판매세(CST) 납부액의 30% *고용 창출보조금: 부가가치세(VAT) 및 중앙판매세(CST) 납부액의 20% 한도 *전기료 지급액의 50% 감면, 토지세 지급액의 50% 감면, 인지세 지급액의 50% 감면 등

기타	• 입주자 선정 방식: First Come First Serve(선착순) 방식으로 선정예정이며 한국 기업 지분 50% 초과 여부 검토 및 확인은 KOTRA가, RIICO는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입주자 선정은 RIICO에서 담당하게 됨 (2015.2.18. 일본전용공단과 동일한 선정방식임)
	• 대금 납부 조건: 용지 신청 시 임차료 총액의 25%와 보증금 1%를 납입하고 용지 할당 후 120일 이내에 잔여 75%를 납부 완료하여야 함. 단, 보증금 1%는 생산 개시일 이후 환불됨
	• 용지 가격 확정 시점 및 추가 조성원가 부담 여부: (확정 시점) 용지 신청 시 임차료 총액의 25%와 보증금 1%를 납입하기 위해 RIICO로부터 통보받은 용지 가격으로 확정되며, 이후 용지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추가조성원가 부담 여부) 용지 임차료 및 보증금 납부 신청자에게는 추가 조성원가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부담시키지 않음 (2015.2.18.)
	• 투기 목적의 토지 구입 방지를 위해 토지를 할당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년 이내, 최소 용지 30% 이상 면적에 공장건립을 통해 생산 활동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개발운영주체인 RIICO에서 토지 환수 조치 가능



해외투자 TIP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 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인프라를 갖춘 부지 확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 및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당한 시간 및 비용이 들 수 있기에 공단 및 기타 특별경제구역 입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마다 각기 다른 공단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인센티브 및 장단점이 있기에 진출 전 공단 입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물류여건, 인센티브 등을 따져보고 기업에게 유리한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례

02

New Delhi

인도 단일브랜드 소매매장 진출에 관한 규제 문의



상담내용

B사는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인도 진출을 고려 중으로 아래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1. 외국계 단일 브랜드 소매매장의 경우 매장 판매상품의 최소 30%가 인도 생산되어야 한다는 '원산지 규정'이 화장품 단일 브랜드 숍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2. 화장품 단일 브랜드 숍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면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국내브랜드 C사의 경우, 어떻게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지 문의
3. 외국기업이 피부관리 SPA 오픈 시 법규 및 정책상 규제에 대한 문의

뉴델리무역관

배아랑 뉴델리무역관

arbae@kotra.or.kr

1. 먼저 인도에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외국 지분이 51% 이상인 기업이 인도에서 사업을 영유할 시, 인도 현지에서 30% 이상 소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애플,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도 해당되며, 제조업은 물론이고 문의하신 단일 브랜드 소매점 개설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조립, 패키징 등을 인도 내에서 하게 되면 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으나, 소매점의 경우 이 규정이 어디까지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단일 브랜드 최소 30% 이상 로컬 소싱 규정 관련하여 지난 6월 20일 인도 정부에서는 단일 브랜드 규정 완화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애플사의 인도 투자와 관련, 인도 정부가 타협점을 내놓은 것으로, 소싱 규정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우선 단일 브랜드 소매점 개설 시 3년간은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애플과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경우 추가적으로 5년, 즉 최대 8년까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인도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도 진출을 생각했던 글로벌 기업들 및 한국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인도에 기진출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인 C사의 경우 100% 단독으로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인도 FDI 규정 30% 소싱을 따르진 않고 있습니다. 제품의 경우 100% 수입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판촉, 인테리어, VMD, 인도 전용상품 개발 등은 따로 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원산지 규

정을 충족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언급한 30% 소싱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인도 정부에서도 투자 전 간간하게 심사를 하거나, 아직까지 이것을 문제로 삼았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C사는 인도 최대 로펌을 통해 인도 정부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인도가 아직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한국 화장품 단일 브랜드가 많이 진출해 있지 않은 점, 애플과 같이 큰 기업이 아닌 점, 인도 FDI 규정에도 30% 소싱에 대한 세세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확실한 답변을 못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 FDI 관련해서 산업 분야별로 많은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 시스템상 명확한 규정 체계 및 세부사항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FDI를 유치하려는 입장이다 보니 케이스별로 다르거나, FDI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규정짓기 모호한 산업들도 많으며, 지금까지 괜찮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우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SPA에서도 서비스와 함께 해당 제품을 팔기 때문에, 이 역시 30% 소싱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외투자 TIP

인도에서는 모든 산업 분야에 있어 외국지분이 51% 이상인 기업이 단일 브랜드 소매점 개설 시, 제품군에 따라 현지에서 30% 이상의 소싱 기준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전에 비해 완화되어 최소 3년, 최대 8년까지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인도의 경우 기준법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언제라도 충분히 바뀌거나 검열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진출 전 현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03

New Delhi

인도 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 진출에 관한 문의



상담내용

자동차 카시트를 생산하는 D사는 인도 사업장 진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하였습니다.

1. 현재 인도 첸나이와 델리를 검토 중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지역 및 부지 선정에 관한 팁
2. 자동차 부품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뉴델리무역관

배아랑 뉴델리무역관

arbae@kotra.or.kr

1. 투자지역의 경우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기에 어느 지역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는 전적으로 기업에서 결정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로 현대자동차 및 협력사들의 경우 인도 첸나이 지역에 진출해 있으며,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첸나이 지역의 경우, 항만이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도 있습니다. 델리의 경우, 인도의 수도이다 보니 대부분의 지상사들이 진출해 있으며, 델리 중심부에는 공장을 설립할만한 부지가 없기에 외곽 지역에 공단(우타르 프라데쉬 주의 노이다, 하라야나 주의 마네사르, 바왈 등)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델리 NCR의 경우 혼다, 마루티 스즈키 공장이 있어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동반 진출해 있습니다.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의 경우, 공단 입주나 매매(법인명義)가 있는데 현재 첸나이에 있는 현대자동차 및 주요 1차 협력사 등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Sipcot 공단에 입주해 있고(99년 임대), 나머지는 개인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매하여 진출해 있습니다.

공단에 입주하는 경우 공단 관할기관에 의해 기본적인 인프라 및 시설 관리가 되어 있어 공장 운영 시, 문제가 생길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인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2014년 9월 25일 Make In India 캠페인을 통해 25개 육성 분야를 선정, 해당 산업에 대한 해외 기업 투자 유

치 및 인도를 보다 기업하기 좋은 친투자적인 나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인도 자동차 부품 산업은 자동차 분야와 함께 25개 분야에 선정되었으며, 해당 캠페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제조업 육성 분야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도는 아시아 내 주요 자동차 부품 공급국으로서의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포드, 폭스바겐 등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의 핵심 및 고품질의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체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ake In India 공식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추후 인도 자동차 판매량은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5% 이상, 2020년에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매출액 규모 역시 2020-2021년 11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는 아래와 같은 주요 정책을 통해 자동차 부품 시장을 보다 빠르게 성장시키고, 인도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인도 정부의 자동차 부품 산업 관련 주요 정책〉

	정책명	주요내용
1	Auto Policy 2002	1) 자동차부품 제조시설 외국인 지분 투자 100%까지 허용 2) 자동차부품 제조 및 수입 시 라이선싱 면제
2	Automobile Mission Plan 2016-26	1)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현대화 펀드 조성 2) 자동차 관련 교육기관 및 디자인 센터, 특별 오토파크 및 자동차부품 경제자유구역 설립
3	National Automotive Testing and R&D Infrastructure Project(NATrIP)	1) 국제표준 채택 및 시행을 위해 미화 3억 8850만 달러 투자 2) 제조비용 절감 및 상품 개발 방법 제공 노력
4	Department of Heavy Industries & Public Enterprises	자동차부품 산업 현대화를 위한 2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자동차 부품공장, 장비에 대한 투자, 공장 및 장비 임대 시 이자 보조금 제공)
5	National Mission For Electric Mobility 2020	인프라 제공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전기 자동차(하이브리드 차량 포함) 생산을 가속화하고 2020년까지 총 600-700만 대의 자동차 판매를 통해 세계 최대 2륜차 및 4륜차 시장 구축



해외투자 TIP

인도 진출 전 지역 선정을 위해 부지 가격, 공급망, 물류, 기타 생활여건 등의 사전 조사가 요구됩니다. 투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인도의 경우 외국 기업의 자국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별, 지역별, 규모별로 상이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조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또한 Make In India와 같은 중앙 정부 인센티브, 주정부 인센티브 및 공단별 인센티브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상담사례

04

New Delhi

식품수출과 관련한 인도업체 신용조사



상담내용

C사는 식품수출 전문업체로서 이번에 인도에서 소고기를 수입하여 베트남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마침, APEDA(인도 농가공 식품수출개발청 The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에 등록된 한 축산가공업체(HAMD FOODS PVT. LTD.)와 상담이 잘 되어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결제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APEDA에 등록된 업체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2. 해당 업체에 대하여 객관적인 매출규모, 재무정보 및 신용조사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3. 지속적으로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한 조언 문의

뉴델리무역관

신용호 뉴델리무역관 shinyh@kotra.or.kr

1. APEDA는 인도정부 산하 농산식품 수출개발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웹 페이지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apeda.gov.in/apedawebsite>) APEDA는 DGFT(인도 대외무역청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가 발행하는 수출입 코드(IEC, Import-Export Code) 및 등록절차와 관련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등록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기관 상세정보를 교차점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H사는 상장되지 않은 민간기업이므로, 공식적인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습니다. 인도기업의 경우 재무정보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시 H사에 직접 연락하시어 재무정보와 관련한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장기적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인도 기업이 Credit Rating Agency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확인된 기업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거래 전 항상 인도의 사무실, 공장, 시설에 방문하여 직접 담당자를 만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인도는 항상 모든 문서를 서류로 남기는 것이 관례이므로 핵심적인 서류들을 반드시 상호 확인하고 종이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반드시 수익분배, 의무범위, 회수절차 등 세세한 부분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소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으며, 인도에서 소송까지 간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계약단계에서 확

실히 해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인도로 상품을 수출할 때 인도 세관에서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아래와 같이 원문으로 알려드립니다.

- ① Certificate Copy of Importer / Exporter Code (IEC) with Permanent Account Number (PAN) issued by the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 ② Waybill
- ③ Commercial Invoice / Minimal required information :
 - Seller's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 Receiver's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including EORI and VAT registration numbers where possible
 - Buyer/importer's name, address and contact details if other than receiver, including EORI and VAT registration numbers where possible
 - Place and date of issue
 - Invoice number
 - Country of origin
 -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 Marks and numbers
 - Number and type of packages
 - Exact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Commodity Codes
 - Quantity of goods

- Unit prices and amounts, including net and gross weight
 - Import licence number if applicable
- ④ Self-Declaration Form (SDF) – Original copy required
- ⑤ Shipper's Letter of Instruction (SLI) – Instruction to the carrier on how the shipment is to be cleared.



해외투자 TIP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민간기업의 경우 공식적인 재무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신용등급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기관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계약 성사 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제방법의 경우는 위 사항들을 참고하신 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첫 거래일 경우 Sample Order(견본주문)나 Trial Order(시험주문)를 먼저 하시는 것을 권장하며, Paypal이나 Ebay와 같은 방식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05

New Delhi

수출 시 인도 세액관련 문의



상담내용

D사는 인도에 대리상을 통해 한국에서 생산한 ATM을 수출 중(인도 대리상은 당사 제품 수입 후 현지 판매 및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거래 건에서 수입 관세 등은 대리상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이며, 현재 인도 내 조립 생산법인 설립 시 관세 절감효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 현지 수입/재판매 업체의 특별상계관세 공제 방식
2. 현지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제조세(Excise Duty)를 낼 때, 상계관세와 특별 상계관세를 Credit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ATM(HS코드: 847290)과 ATM 부품(HS코드: 847340)에 대한 중국 생산품을 인도 수입시 기본과세 문의
4. 인도의 정확한 관세 및 예외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Website나 Source
5. 현지 관세 중 교육세가 혹시 폐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

뉴델리무역관

신용호 뉴델리무역관 shinyh@kotra.or.kr

뉴델리무역관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딜로이트에 문의한 결과를 답변드립니다.

1. 관세는 기본관세(BCD, Basic Custom Duty), 추가관세(ACD, Additional Customs Duty), 특별상계관세(SAD, Special Additional Duty), 교육세(EC, Educational Cess) 네 가지로 이루어지며, 기본관세의 경우 재수출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ACD는 국내의 Excise Duty(물품세), Service Tax(서비스세)와 대응이 되며, SAD는 VAT(부가가치세), Excise Duty와 대응이 되지만, VAT에서는 현실적으로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사실이나, Excise Duty 매출세액을 한도로 Credit 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조업자가 제품을 제조 반출할 경우 12.5%의 매출 소비세를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 관계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 시 납부한 추가관세(상계관세, CVD, Countervailing Duty) 12.5%를 납부 금액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항상 많아 납부 금액이 발생하나 4%의 특별추가관세를 납부할 경우 매입 세액이 매출 세액보다 많아 환급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비세 매출 세액은 12.5%이나 매입세액이 16.5%로 증가하게 되어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매출액이 낮을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는 수출 등을 제외하고는 환급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이 낮은 많은 기업들이 공제받아야 하는

매입세액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S.No	HS-CODE	Description of goods	Standard Rate	Additional duty rate	Condition No.
408.	8472 90	the following goods, namely: – (i) Cash dispenser or automatic bank note dispenser:	Nil	–	–
		(ii) Parts and components of the goods mention at(i)	Nil	–	5

4. 인도의 정확한 관세 및 예외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나 자료원은 <http://www.cbec.gov.in>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예외사항의 경우 품목마다 상이한데다가 인도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다소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5. 교육세(Education Cess)는 폐지되지 않고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인도의 관세체계는 타 국가에 비해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단순히 항목의 합산이 아닌 복리계산 등 복잡한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인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관세 관련 정책은 대부분 인도에서 재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재 수입이기 때문에, 단순히 완제품을 인도 내수 시장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관세지원이 낮은 편입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인도 상무부 특별경제구역 (SEZ, Special Economic Zone) 등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및 입주 요건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조 규모나 수출 규모를 고려해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INDONESIA

인도네시아



상담사례

01

Jakarta

외자투자의 이론과 실제상 괴리 발생 시



상담내용

K협회는 인도네시아에 연락사무소 형태로 간접 영업을 해오다, 투자 업종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업종으로 법인 설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 조정원(BKPM, Badan Koordinasi Penanaman Modal)은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업 승인을 요구하며 외자투자 승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K협회는 해결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자카르타무역관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yisngmin@gmail.com

인도네시아에 공식 대표사무소(RO, Representative Office)를 두고 현지에서 간접영업을 해오던 한국 K협회는, RO에게는 직접영업은 불허하며, 직접영업을 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외자투자 승인서를 받아 현지에서 외자투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출자하여 현지법인 명의로 직접영업을 할 수 있다는 현지 투자법에 따라, 투자하려는 업종이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대통령령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투자승인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2016년 초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원(BKPM)에 외자투자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투자승인을 거부당했습니다.

BKPM이 외자투자 승인 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외자투자 승인을 신청한 업종은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Kementerian Kelautan dan Perikanan) 청장령에서 외국인에게 100% 지분 보유를 불허하며, 해당 업종에 외자투자 승인은 외국인은 최고 49%, 내국인은 최소 51%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투자 계획을 취소하고, 해수청장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현지인과 49:51 비율로 합작투자를 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K협회는 현지인과 합작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인 100% 외자투자 승인을 받아달라고 간청을 해왔습니다.

해수청의 법무실 관계자와 상담을 해보니 BKPM과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해당 업종에 외자투자 제한이 없는데 해수청장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법운용을 잘못하고 있는 처사이니 투자승인을 해달라고 BKPM과 해수청에 거듭 요청을 해도 양쪽이 다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BKPM은 대통령령 제11조에 “투자자는 해당 업종 주무부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를 강조하며, 주무부처인 해수청장령에 해당 업종에 대한 외자투자를 규제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왜 실정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논리로 힐난까지 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느낌이 왔고 협의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서자, 상위법인 대통령령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인 해수청장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은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해서 법을 잘못 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통령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업종이나 지분 보유 비율 같은 원칙적인 사항이 아닌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사항이며, 해수청장령의 지분 규제 조항이 대통령령을 위배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음을 BKPM과 교통부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대통령령 제11조를 “대통령령에 저촉되지 않는 해당 부처의 규정 준수 의무가 있다.”로 대통령령 제11조 개정을 BKPM에 건의했으나 요지부동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외자투자 승인을 거부하며 현지인과 합작을 권고했습니다.

구두 협의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하고 강수를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 작심하고 BKPM과 해수청의 법운용 잘못을 지적하며 강한 내용으로 항의하고 법을 바르게 운용해달라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공식 서면 답변을 BKPM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만나 해당 업종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없는 대통령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로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투자증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구두로 최후성 통첩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강하게 항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 지 약 2주 후 BKPM이 “투자에 관한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하위법에

우선하며, 해당 업종은 해수청장령으로 외국인 지분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투자 네거티브 대통령령에 투자 규제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 지분 보유 100%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강한 서면 항의와 서면 답변을 요구한 로펌의 공문과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구두 통첩에 BKPM의 담당공무원이 부담감을 느끼고 한발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BKPM의 설명서를 받고 곧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외자투자 승인을 다시 신청했고, 정확하게 1주 후 BKPM은 K협회에게 외국인 100% 지분 보유 외자투자 승인서를 발급했습니다. K협회는 현지 파트너 없이 외국인 100% 지분 보유 현지 외자투자법인 설립에 성공했습니다.



해외투자 TIP

인도네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의 특징은 법의 확실성이 부족하고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법규를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고의적인 법 잘못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전에 현지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해당 사항을 현지 법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한 후에 실행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곧 현지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상담사례

02

Jakarta

건설분야 법인 설립 규정 강화



상담내용

D사는 전기 설비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2013년 말 건설업 종에 대한 Negative list 상의 외국인 투자 제한으로 인하여 67% 지분 보유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현지 지분 33%를 슬리핑 파트너를 섭외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종합 건설 기업 S사가 D사 오너에게 현지 정부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보자는 제의를 하여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모색하다, 입찰 시기에 맞추기 위해 먼저 진출한 D사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D사의 현지 법인 지분 일부 인수 후 Joint Venture (합작투자)로 변경,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양사가 합의하여 MOU를 맺고 지분 양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D사는 이를 근거로 BKPM 에 지분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자카르타무역관

이소왕 변호사, 번리사 leesowang@gmail.com

D사는 국내의 중소 건설업체로 전기 설비를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2013년 말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의 가능성을 예견하여 현지에 외국인 투자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건설업종에 대한 Negative list 상의 외국인 투자 제한으로 인하여 67% 지분까지만 투자가 가능하였고, 나머지 현지 지분 33%를 슬리핑 파트너로 인도네시아로 귀화한 한국인을 섭외하여 법인을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D사의 현지 법인은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등의 시공사를 위주로 운영을 해온 터라 건설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D사의 오너와 잘 알고 지내는 한국의 종합 건설 기업 S사가 D사 오너에게 현지 정부 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해보자는 제의를 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동 프로젝트 진행을 모색하게 되었고, 입찰 시기에 맞추려면 S사가 새롭게 현지에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 먼저 진출한 D사를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D사의 현지 법인 지분 일부를 인수하여 Joint Venture 로 변경 후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양사가 합의하여 MOU를 맺고 지분 양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D사의 현지 법인장은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려 수속을 하기 위하여 절차에 의거하여 주총을 거쳐 일부 주식 매각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BKPM에 지분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분 변경이 불가하다고 BKPM에서 신청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D사의 법인장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2월 공공사업부 장관령 3호를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 건설 법인에 대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동 법령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지 파트너사 법인의 주주는 개인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이어야 한다.
- 주주사중 외국인 지분사는 반드시 자국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대기업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건설사이어야 한다.
- 현지 주주사 중 일부 지분은 반드시 현지 건설업 면허 최고 등급인 B2 면허를 소지한 건설법인이어야 한다.
- 시공 가능한 프로젝트는 반드시 high risk, 고도의 첨단 기술이 요구되거나 비용이 높은(건설 1000억 루피아 이상, 설계/감리 100억 루피아 이상) 공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건설 대표사무소에 적용하는 규정과 동일하다.
- 반기 사업 활동 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Monitoring/평가를 하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 규제 실시.

상기 규정에 의하여 신규 법인 및 기존 건설 법인의 주주 변경 시와 영구 허가(건설면허) 취득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반드시 규정에 맞는 구조로 법인의 구조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D사의 경우는 S사에게 일부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률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현재 현지 주주인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의 주식 33%를 모두 100% 현지 지분의 B2 등급의 건설사에게 양도하거나 33% 지분 일부를 100% 현지 지분회사에게 나누어 양도해야 합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진출하여 건설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중 아직 영구허가(IUKA: 건설면허)를 BKPM에서 취득하지 않고 아직도 투자 잠정허가(PPM)를 가지고 법인을 운영하는 업체는 투자 잠정허가에 명시된 허가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영구허가(건설면허)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공사사업부 장관령 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주주 변경을 하여야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면 법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해외투자 TIP

2014년에 건설 대표사무소 연장 및 설립관련 규정을 강화했던 인도네시아 공사사업부는 최근 건설 법인의 설립 후 입찰 참가, 공사규모, 현지 파트너사에 대한 자격조건을 명문화하면서 사실상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 법령 발표 및 기존 규정에 대한 변경이 잦은 인도네시아 특성상, 정부주도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사업의 경우 기획 이전단계부터 현지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전문가 검증이 요구됩니다.

상담사례

03

Jakarta

수입 통관 전 준비 사항



인도네시아에 신설 법인을 설립한 A업체에서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 관련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1. 수입 통관시 통관 서류 준비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수입 통관시 사전 확인 사항은 어떠한지?

자카르타무역관

김하현 대표(SPL Logistics)

hhkim@spllogistics.com

인도네시아 수입 통관은 사전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통관 시 통관 보류, 관세 추징, 최악의 경우 반송(Ship-Back)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입 통관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입 통관 전 기본이 되는 사전 준비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업체별 수입 통관 관련 기본 인허가 구비

수입 업체는 비제조 수입자 번호(API-U, Angka Pengenal Impoir Umum), 제조 수입자 번호(API-P, Angka Pengenal Imporir Producent), 관세청등록번호(NIK, Nomor Identitas Kepabeanan), 납세자번호(NPWP, Nomor Pengenal Wajib Pajak)가 구비되면 인허가에 해당되지 않고 수입허가서상에 명시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다.

2) 제품별 인허가 사항 확인

인도네시아는 수입 통관 시 개별 제품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 전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인허가 구비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만일 해당되는 제품이 있다면 수입 통관 전 인허가를 구비하여야만 수입 통관이 가능하므로 인허가 미비로 수출국으로 제품을 반송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품별 주요 인허가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 Persetujuan Impor: 제품별 수입허가(해당되는 경우)

* LS(Inspection Report): 선적 전 검사 해당 제품 수입 시 필요

- * SPI(Surat Persetujuan Impor): 주로 의약품 수입 시 해당
- * Surat Keterangan Import: 주로 식음료 수입 시 해당
- * NPT(Nomor Penlummas Terdaftar): 오일 제품 수입 시 해당
- * Nomor Pendaftaran Alat Kesehatan: 의료용품, 의료기기 수입 시 해당

3) 선적서류

수입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하는 선적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팩스 혹은 이메일로 접수 받은 권리포기(Surrender)된 서류는 통관 시 불인정되며 반드시 원본 접수하여야 통관이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일반적인 경우, 신규 투자 법인 설립 업체는 상기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숙지하지 못하여 수입 통관이 지체되거나 화물을 반송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수입 통관 전 통관사와 반드시 협의하여 수입 통관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숙지 및 확인한 후 수입하여야 물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 혹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당사례

04

Jakarta

통과 비엘 (Through Bill of Lading)



한-아세안 FTA 협정에 근거 인도네시아에서 수입 통관 시 협정 관세를 적용받고자 FORM AK(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통관하였으나 직접 운송 원칙 조항에 위배되어 협정 관세를 적용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완 절차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문의하였습니다.

1. 직접 운송이 불가한 경우 보완 서류는 무엇인지?
2. 작성 방법은 어떠한지?

자카르타무역관

김하현 대표(SPL Logistics)

hhkim@spllogistics.com

인도네시아 세관 당국에서 재무부 장관령 205/PMK.04/2015에 근거 직접 운송 원칙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한국발 수입 화물에 대하여 FORM AK를 불인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에 준한 직접 운송의 원칙은 화물의 운송이 최초 선적된 선적항에서 출발한 선박이 중간 경유지 없이 인도네시아 도착항에 도착되어야 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중간 경유지를 경유(Transit)하여 도착하거나 혹은 화물이 제삼국에서 환적(Transshipment)하여 도착되는 경우 통과비엘(Through Bill of Lading) 발행 및 이의 증빙자료를 통관 시 세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국 업체의 법령 미숙지와 직접 운송에 대한 상호 간 개념 차이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당 부분 수입 관세가 추징되어 하기와 같이 통과 비엘 작성 요령을 명시합니다.

A. 선박이 중간 경유지를 경유(Transit)하여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경우 통과 비엘 작성 요령은 하기와 같습니다.

- 1) Bill of Lading의 Description 난에 “Through Bill of Lading” 명시
- 2) Through Bill of Lading 명시 후 하단에 선적항, 경유항, 도착항 명시
- 3) 예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THROUGH BILL OF LADING

Container(s) will not involved any commercial activities at Transit Ports.

Carrying Vessel Route is as follows:

1. Busan
2. Hong Kong
3. Singapore
4. Jakarta

경유(Transit) 통과 비엘은 상기와 같이 준비하고 선박 회사의 항로증빙서를 추가하여 통관 진행하여야 FORM AK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B. 화물이 제삼국에서 하역되어 선박 변경하여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경우 통과 비엘 작성 요령은 하기와 같습니다.

- 1) Bill of Lading의 Description 난에 “Through Bill of Lading” 명시
- 2) Through Bill of Lading 명시 후 하단에 선적항, 경유항, 도착항 명시
- 3) 예시는 하기와 같습니다.

THROUGH BILL OF LADING

Container(s) will not involved any commercial activities at Transhipment Ports,

1st Carrying Vessel Route is as follows:

- 1) Busan
- 2) Hong Kong

2nd Carrying Vessel Route is as follows:

- 1) Singapore(Transshipment Port)
- 2) Jakarta

환적(Transshipment) 통과 비엘은 상기와 같이 준비하고 선박 회사의 항로 증빙서를 추가하여 통관 진행하여야 FORM AK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한국발 선박 중 중간 경유지 없이 인도네시아 도착항에 직접 운송되는 정기 선박이 없음으로 FTA 협정에 준하여 Form AK를 발급받아 협정 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 통관 전 상기 사항을 유념하여 통과 비엘 작성하여야만 통관 시 Form AK 불인정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당사례

05

Jakarta

신설 법인 관련 상업 생산 이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



상담내용

인도네시아에 신규로 진출하는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세정의 불명확성과 이해부족 및 사전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법인 설립 이후에 상당 기간 이 지난 이후에 세무조사를 과세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법인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 복리후생비 등의 세무조정 문제, 각종 원천징수 납부의무 준수 등에 대하여 많은 회사들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 이전 및 상업생산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거래 및 세무신고와 관련하여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법인 설립단계 및 상업생산 이전 단계에서 법인이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부가세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사전에 기본적인 세무지식과 법인 설립 단계의 부가세법을 고려한 업무진행 계획을 통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동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자카르타무역관

정태훈 회계사/PwC Indonesia

teahun.jung@id.pwc.com

인도네시아 부가세법 제9조 2(a)항에 따르면, 회사는 상업 생산 이전에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input VAT)에 대하여, 동 부가세 매입세액이 자본재(Capital Goods)의 취득인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상업 생산 이전에 발생한 자본재가 아닌 재화나 서비스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환급이나 매출세액과의 상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A법인이 2016년 1월 1일에 설립이 되었고 토지 취득, 건물 취득, 기계장치 구입, 서비스의 구입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8년 1월 1일에 상업 생산을 시작하였습니다. A법인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세 납세번호를 정상적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상업 생산이 없으므로, 즉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년 동안은 부가세 매출세액은 없고 부가세 매입세액만 존재합니다. 향후 A법인이 부가세 환급을 통한 세무조사를 받거나, 특별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주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과세를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2016년과 2017년에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전액 매출세액과 상계하거나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상업 생산 이전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의하여 추가 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추가 패널티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부가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이 있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공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상업 생산 이전의 부가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 자본재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하고 있

습니다. A법인을 예로 들면, 건물 및 기계장치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자본재의 취득 거래로서 부가세 매입세액을 Credit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자문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Credit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Credit으로 계상 또는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에 이를 추가징수하고 관련하여 100%의 패널티를 과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서비스 수수료로 11억 루피아(부가세 1억 루피아)를 지급하고 관련 부가세 1억 루피아를 Credit으로 공제받은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1억 루피아가 과세되며 관련하여 1억 루피아가 패널티로 과세되어 총 2억 루피아가 징수됩니다. 법인 설립 단계 및 상업 생산 이전 단계에서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부가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매출세액-매입세액 상계 원칙만을 고려하여 모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토지도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며 A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토지 관련 부가세 매입세액의 경우 위에 설명한 9조 2(a)항의 자본재의 범위에 포함하는지에 따라 공제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세법에서는 자본재는 1년 이상의 내용연수를 가진 유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가 자본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으며, 케이스별로 세무조사의 결과가 다른 실정입니다. 토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부가세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회계기장 및 세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 상업 생산 시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세무 조사 시에는 실무적인 해석을 통하여 적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업 생산 시점은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기에서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매출 준비를 위하여 매입한 원재료, 부재료 등은 상기 9조 2(a)항의 자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계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매출 시점의 사전 계획을 통하여 원재료 등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생산 시점 이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을 고려한 계획을 통하여 잠재적인 과세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는 신규 법인은 진출 의사결정 단계에서 진출코자 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법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기 설명한 상업 생산 시점과 관련한 부가세 매입세액 규정을 포함하여 Tax Facility(세무구조), 부채-자본 비율 준수 의무, 보세구역, 최종 분리고세, 각종 원천 징수, 면세재화, 전략적 재화, 이전가격 등 중요한 세법 사항을 검토하여 진출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세무혜택 또는 세무 규제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증가된 정부예산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우 공격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일한 조세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세법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잠재적인 과세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회사에 유리한 조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CHINA

중 국



상담사례

01

Guangzhou

직원 친족 방문휴가에 관한 문의



A사는 광저우에서 사무실(대표처)로 운영되는 한국회사이며 직원은 현지 노무파견회사(N사)를 통하여 노무파견형식으로 간접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친족방문휴가로 4년에 한 번 40일 휴가가 있다고 직원이 연차를 요구하고 있어 관련 방문휴가에 관한 법률규정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광저우무역관

이평복 고문/IBS컨설팅

pyungbok@daum.net

친족방문휴가는 과거에 교통이 불편하던 시대에 먼 객지에서 떨어져 사는 부모, 배우자와의 상복주선 차원에서 국유기업이나 인민공사 재직직원을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어 국유기업의 경우, 시행하는 곳이 많습디다만, 거기서도 고속철, 비행기가 발달한 지금 시대에조차 이런 구시대적인 한 달 이상 되는 친족방문휴가를 주어야 하나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무원의 직원 친족방문휴가에 관한 규정(关于职工探亲待遇的规定)의 개요

●대상자: 국가기관*인민단체 및 전인민소유제 기업

●적용조건:

- 1) 1년이상 근무한 직원
- 2) 부모와 별거하고 또한 공휴일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부모가 방문 가능한 경우는 제외)

대우: 1) 미혼의 경우: 년 1회 20일간(공휴일*법정휴일을 포함)을 부여,
교통비는 회사가 전액부담

2) 기혼의 경우: 4년에 1회 20일간 부여, 교통비는 기본급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사용자가 부담

외자기업이나 중국민영기업 중 어떤 곳도 친족방문휴가에 관한 법률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에 분명히 그 대상은 국유기업이나 전인민소유제 기업으로 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며, 1994년에 시행된 “외상투자기업노동관리규정(1994년8월11일) 外商投资企业劳动管理规定”이라는 법률에는 24조에 “친족방문휴가”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 법률대로 휴가를 준 외자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직원들이 감히, 이런 휴가를 신청할 엄두도 낼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이 유명무실한 규정조차도 노동계약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07년 11월 9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즉, 현재외자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계약법의 발효 시점부터 내자기업(중국)과 외자기업 간 구분없이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만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폐지된 법적 근거: 일부 노동 및 사회보장행정규칙의 폐지에 관한 결정
(2007년 11월 9일부 시행) 关于废止部分劳动和社会保障规章的决定

(1) 원래의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1994년8월 발효-2007년11월 폐지)

제24조 기업직원은 국가가 규정하는 법정공휴일, 주말휴식일, 친족방문휴가, 결혼장례휴가, 여직공출산휴가 등 휴가기간을 누린다.

(2) 상술한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의 폐지관련문건(2007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노동과 사회보장부령 제29호(中华人民共和国劳动和社会保障部令第29号)

상술한 친족방문휴가 신청을 하는 직원은 분명히 민간기업, 외자기업은 이런 구시대의 유물 같은 휴가를 주는 곳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귀사의 허술한 관리체제를 이용하여, 근거 없는 휴가 요청을 하고 있고, 회사에 휴가를 안 주는 근거를 대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이러한 외자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피동적으로 반응을 하느라 시간을 소모할 게 아니라, 직원에게 회사가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하는 명확한 법률규정을 먼저 보여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친족방문휴가 관련 법규에는 국유기업, 전인민소유제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왜 외자기업이 이런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의 노동법률은 2008년 노동계약법이 발효되면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법적 리스크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의 휴가를 제공하는 의무가 있으나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취업규칙에 수속절차와 요건을 강화하여 엄격히 통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전에 명확하고 공정한 수속절차의 룰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공평하게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02

Guangzhou

비주민기업소득세 문의



상담내용

A사는 소프트웨어 제작용역을 수주 후 Invoice를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출하고 있으며 별도 수출면장은 없습니다. 중국 발주사에서 매출액에서 원천세를 제한 후 A사에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A사 매출이 중국에서 증치세, 기업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 조문과 올해 5월 1일부터 기업소득세와 증치세가 통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하였습니다.

광저우무역관

손고봉 변호사/ 광저우 화징 법무법인

sungaofeng@aliyun.com

1. A사는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전송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할 때 해관에 신고하지 않으므로 화물무역에 포함되지 않고 해관에서는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증치세 납부 여부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실시조례〉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공하는 본 조례에 규정된 노무, 무형자산 양도 혹은 부동산판매기업과 개인은 영업세의 납세인으로 반드시 본 조례에 근거하여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대로 반드시 법률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실시조례(2008수정)〉,〈재정부, 국세청의 전면 영업세의 증치세전환 시행에 대한 통지(财税[2016]36호)〉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소프트웨어판매는 현대서비스업종 중 정보기술서비스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납세인의 증치세 세율은 6%, 소규모납세인의 증치세 세율은 3%입니다.

3. 기업소득세 납부 여부

A사는 중국기업소득세의 징수대상으로 10% 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한 조직(이하 기업이라 통칭함)은 기업소득세의 납세자가 되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인독자기업, 화합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2조: 기업은 주민기업과 비주민기업으로 구분한다. 이 법에서 주민기업이라 함은 법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설립된 기업 또는 외국(지역)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나 실제 관리기관이 중국 경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이 법에서 비주민기업이라 함은 외국(지역)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실제 관리기관도 중국 경내에 없지만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가 설립되어 있거나,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 경내 원천소득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주민기업은 중국 경내, 경외에서 온 소득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한 경우, 그 설립한 기구, 장소의 중국 경내 원천 소득 및 중국 경외에서 발생하였지만 그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제적인 관계가 있는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비주민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기구, 장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비록 기구, 장소를 설립하였으나 취득한 소득이 그 설립한 기구, 장소와 실 제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중국 경내 원천 소득에 한하여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7조: 기업의 아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감면받을 수 있다.

- (1) 농·임·목·어업 항목에서 취득한 소득
- (2)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기초시설 항목을 투자경영하고 취득한 소득
- (3)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물 절약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 (4)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 소득
- (5) 이 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득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법실시조례〉

제91조: 비주민기업의 소득은 기업소득법 제27조 제5항 규정된 소득으로 10% 세율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아래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면제, 감면받을 수 있다.

- (1)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제공한 대출로 취득한 금리
- (2)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와 주민기업에 제공한 특혜대출로 취득한 금리
- (3) 국무원이 비준한 기타 소득

4. 영업세 및 증치세 통합 여부

기업소득세와 증치세가 통합된 것이 아니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 영업세의 증치세전환(营改增)정책입니다.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 서비스업 종사자는 이제 납부 세금종류가 영업세에서 증치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참조<재정부, 국세청의 전면 영업세의 증치세전환 시행에 대한 통지(财税[2016]36호)>



해외투자 TIP

중국의 영업세/증치세 통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기업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15년 말까지 감면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营改增)누계 세액은 6412억 위안으로 통계됩니다. 중국과 거래 시 증치세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발주사 간의 사전 합의가 중요합니다.

상당사례

03

Guangzhou

지사와 자회사의 자본금 및 차이점 문의



상당내용

A사는 한국 본사에서 100% 투자한 외상독자기업이며 다른 지역에 새로운 아이템이 생겨서 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A사의 자본금 계좌에서 600만 불을 지사의 자본금계좌로 1회성으로 지급이 가능한지와 자회사와 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문의하였습니다.

광저우무역관

강일국 회계사/심천 쑹랜웨화 회계법인

david@zlcx-finance.com

A사의 지사는 독립법인 자격이 없으므로 자본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A사로부터 자본금 형식으로 송금할 수 없습니다.

A사는 지사 기본계좌로 일상비용 명의로 이체할 수는 있지만 자본금 계좌 은행에서 한번에 600만 원을 환전해주지 않고 일상비용으로 매월 10~20만 원만 환전해줍니다. 지사와 타사와의 지불해야 할 계약서 계약금이 있을 시 A사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A사는 지사가 아닌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본금 투자방식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는 성격상 내자법인으로 외환자본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에 USD를 송금할 수 없고 600만 원에 해당하는 자본금 금액은 인민폐(RMB : Renminbk = CNY)로 환전하여 송금해야 합니다.

자회사와 지사의 차이점:

- 1) 자회사는 독립법인으로 자체 독립적인 명칭과 정관 및 조직기구가 있어 대외적으로 자회사 명의로 경영활동을 하고 경영과정에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해 독립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사는 법인자격이 없기에 독립적인 명칭이 없이 본사의 이름을 따라야 하며 본사에 하나의 사무기구일 따름입니다.
- 2) 본사에서 자회사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직접공제를 사용하지 않고 간접적인 공제방법을 사용하는데 자회사의 동사회 인원을 임명하거나 투자결정을 통해 자회사의 생산경영결정에 참여합니다.

지사는 직접적인 공제방법을 사용하는데 인사, 업무, 재산 등을 본사에서 직접 통제를 하고 지사는 본사의 영업범위에 한해서만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3) 본사가 자회사의 주주로서 자회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고 자회사도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자체 전부 자사에 한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지사는 자체의 독립적인 자산이 없기에 본사와 통합해서 결산하고 지사의 책임은 본사가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본사는 자체의 전부 자산에 한해서 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본사와 지사 사이에 서로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 4) 재무상 자회사는 자체의 이익에 따라 법인세를 독립적으로 납부하지만 지사는 본사와 통합하여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지사가 적자가 나더라도 본사가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자회사와 지사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회사설립하기 전에 업무 필요성에 따라 회사형태별 관리운영 장단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회사이익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04

Beijing

중국 연락사무소(대표처) 설립 시 유의사항



A사는 한국에서 화물운송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에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장조사, 현지 동종업계 및 협회 등의 조직, 동종업계의 비즈니스 관행 및 구조, 현 관계사와의 업무연락 등을 위한 연락사무소(대표처)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연락사무소 설립 시 조건, 세금 등 내용을 문의하였습니다.

베이징무역관

김성훈 베이징국연자순유한공사

klaw@naver.com

법인설립과 대표처설립의 구별 : 한국기업이 중국 진출 시 선택하는 투자 형태는 일반적으로 중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과 대표처입니다. 양자를 택 일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① 법인은 개업 후 즉시 상행위를 하기 위함 이고, 대표처는 영리성, 비영리성 사업을 이행하기 전에 중국에 대한 전반 적인 동 업계의 정책, 법률, 시장현황, 동종업계의 비즈니스 관행 등을 조 사 및 관계사와의 업무연락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② 대표처는 법인과 달리 등록자본금이 없습니다. 대표처에서 필요한 모든 경비는 그 비용의 필요여부에 따라 본사에서 수시로 대표처에서 외환관리국의 기준 을 받아 개설한 그 지정된 통장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대표처 설립 전제조건과 인력구조 : 위 투자형태 중 대표처를 설립한다 면 그 전제조건은 대표처 설립주체인 외국기업(한국본사)이 설립된 지 2 년 이상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처 내부 인력구 조는 한국본사 파견과 현지 채용으로 나뉩니다. 파견은 4명 이내이고, 현 지 채용인 경우에는 인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노무파견회사 를 통해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처의 세금 : 대표처는 개인소득세(3~45%),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세 목과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표처는 중국 현행법상 상행위를 할 수 없 는 조직이므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대표처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 장에서는 대표처에 대한 법률규정이 80년대와 90년대에 제정, 시행된 법 률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설립된 대표처가 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중국 세무당국은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간

주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세수관리 잠정방법” 3조에 따라 대표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목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한국본사에서 대표처로 송금하는 경비의 약 10%가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표처의 경비는 본사 파견자, 직원들의 임금, 보너스 복리비, 통신비, 출장비, 사무실 임차료, 교통비, 접대비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의 임금, 보너스 등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재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본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대표의 급료를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후 대표변경 또는 대표처 폐쇄 시 세무당국은 파견자 임금의 적정성을 증명토록 하거나 또는 세무당국 내부지침에 따른 적정급료를 기준으로 차액부분의 납부 및 과태료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처는 법인과 그 성격과 성질이 다르므로 대표처를 법인으로의 전환이 불가합니다. 법인이 필요한 경우, 법인과 대표처를 병행해서 운영하거나 또는 그 필요여부에 따라 대표처를 폐쇄시켜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에서 연락사무소(대표처)를 설립해야 하는 타당성, 연락사무소의 세무, 회계문제, 연락사무소 파견자 및 근로자의 인사, 노무문제 등은 중국법인과 현저하게 상이한 정책, 법률, 실무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락사무소 설립 시 관련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05

Beijing

유통 무자격자를 상대로 판매한 행위의 위법성



상담내용

A회사는 외국에서 식품향료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A회사가 합법적인 주체가 아닌 유통자격(영업집조, 식품유통 등 라이선스)이 없는 회사 또는 개인에게 향료를 판매하였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A회사가 입게 되는 법적 불이익은 무엇인지, 또한 어떤 법률조항에 근거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또 어떤 법률적 근거로 인해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것인지 문의하였습니다.

베이징무역관

김성훈 베이징국연자순유한공사

kllaw@naver.com

영업허가가 없는 자에게 물품을 제공하였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되는지 :

A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无照经营查处取缔办法 15조”에 따라 “영업허가 없는 경영행위를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아야 하면서 생산장소, 경영장소, 운송, 보관, 물류 등 조건을 제공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불법행위 즉시 중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인민폐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① 영업허가 없는 경영행위를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아야 하면서, ② 생산경영장소, 운송, 보관, 물류 등 조건을 제공할 경우를 충족하여야 불법행위 및 불법소득에 따른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입법취지와 이 조항에 따른 판례를 보면, 거래 당사자 간의 영업허가 사실 확인 여부를 강제하지는 않고 사업장(사업장 공간상의 생산, 운송, 보관, 물류)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그 주소지에 대한登記 및 감사의 과정에서 알거나 또는 마땅히 알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A사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A사의 경우에는 특정업종(식품)에 해당되므로 특별법인 중국 식품안전법을 우선 적용하고, 만약 위 식품안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无照经营查处取缔办法”를 적용하면 된다 할 것입니다.

중국 식품안전법 87조 5항에 따르면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판매자의 허가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판매자의 관련 허가증 등을 확인하지 아

니한 경우 인민폐 2천 위안 이상~인민폐 2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허가증 직권말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별법인 중국 식품안전법에는 구매자가 주체가 되어 A사의 허가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미확인에 따른 벌칙이 구매자에게 가해지는 것이고, 일반법인 “无照经营查处取缔办法”에는 A사의 거래제공자에 대한 규정과 벌칙은 없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A사의 거래행위에는 불법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 :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매자에 대한 허가증 미확인과 허가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사실이 구매자와의 공동불법행위책임과는 상관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단, 제품에 대한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해당되나 이는 허가증 미확인 및 인지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중국에서도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

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이와 상반되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에서 불법법적인 주체를 상대로 자격요건이 결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제품 판매 시, 해당 회사가 이로 인해 책임이 따르지는 않지만, 제품에 대한 하자로 인한 문제 발생 시의 공동책임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상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지 정도는 계약 직전에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사례

06

Beijing

자본금 납입



A는 중국에 무역법인을 설립하고자, 등록자본금에 대한 제한, 납입시기, 납입하지 않을 시의 리스크 등 내용을 문의하였습니다.

베이징무역관

김성훈 베이징국연자순유한공사

kllaw@naver.com

등록자본금에 대한 회사법 등의 제한(유한책임회사의 최소등록자본금 인민폐 3만 위안, 1인 유한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 10만 위안, 주식유한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 인민폐 500만 위안 규정, 회사설립 시 주주(발기인)의 첫 출자금의 비율에 대한 제한 및 출자시기에 대한 제한 등 규정, 자본금 실질납입을 회사등기사항으로 하지 않음을 2014년 회사법에서 삭제 및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자본금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제한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적정금액(임대료, 직원월급, 마케팅 비용, 물건구매대금 등)을 산정하여 자본금으로 정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2년 내 납입이라는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투자자 재정상태 및 사업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납입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납입기간을 제한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투자지역의 전문대행기관 등에 먼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본금 납입완료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증자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본금을 크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자절차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자본금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입완료한 자본금(또는 자본금 완납 전)이 회사 경영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입절차를 통

해 단기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자금수요가 필요한 경우라면 경영상황에 따라 증자를 고려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방식은 현금, 현물, 지식산권, 토지사용권 등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을 제외한 투자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투자자산에 대하여 자격 있는 평가기관의 가치평가를 거쳐 투자가치를 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 투자보다는 회사설립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토지사용권은 한국에서 말하는 임차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특색의 토지사용권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금 납입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자본금을 영원히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법의 유한책임은 투자한 투자금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존속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납입을 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청산을 하는 경우 남아있는 회사재산으로 채무 등 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자본금을 완납하여 채무 등을 변제한 후에야 청산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초과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자본금이 납입 완료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를 방치하는 경우, 회사는 직권말소되며, 회사가 직권말소되는 경우, 직권말소된 회사의 법정대

표는 공상행정관리국의 블랙리스트에 기재되어 3년 내 자기명의로 회사 설립 불가' 세무블랙리스트에 기재 및 은행신용불량자 기재' 출국제한 등의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에서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전략, 자산에 대한 현재, 미래에 대한 운영, 현금과 현물의 비율 및 현물의 가치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 지역 전문가를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07

Shanghai

중국 현지 자회사에 대한 통제



상담내용

A사는 한국에서 기계설비 제조업을 하는 회사로, 중국 상하이 인근에 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중국 자회사의 법인대표가 공석이 된 후에 회사 내부 사정으로 법인대표 선임이 늦추어졌고, 그 기회를 타서 현지 자회사의 직원이 주주결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자회사의 법인대표로 등록하고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A사는 어떤 방식으로 현지 법인의 통제권을 회수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상하이무역관

최광호 잉커 상하이 법무법인

cuiguanghao@yingkelawyer.com

중국법상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의 동사(한국의 이사에 해당)는 당해 외투기업의 주주가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투기업의 법인대표는 주주가 선임한 동사 중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은 동사 여러 명을 선임하여 동사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1인 동사 체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사회를 구성할 경우 그중의 1인을 동사장으로 지정하고, 당해 동사장이 회사의 법인대표가 됩니다. 1인 동사 체제로 갈 경우, 당해 1인 동사는 중국법상 “집행동사”로 칭하며, 당해 외투기업의 법인대표가 됩니다.

위에 언급한 동사 또는 법인대표를 변경할 시, 외투기업의 주주인 외국인 투자자는 주주결의 방식으로 기존의 동사 또는 법인대표를 해임하고, 신규 동사 또는 법인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외투기업의 동사 또는 법인대표를 변경할 경우, 주주의 위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외투기업의 등기를 관장하고 있는 현지 공상행정관리국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공상행정관리국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시, 중국 현지 외투기업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주결의 및 위임장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당해 신청서에는 외투기업의 인감이 날인되고, 기존 법인대표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외투기업의 인감을 관리하는 인원이나 법인대표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변경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본건 사례에서의 A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한국기업들도 중국 현지 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중국 현지 기업에 파견된 법인장이나 기타 관리자들이 본사에 반기를 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지 자회사의 법인대표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통제권을 회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물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회사법상 일반적인 법리에 의하면, 주주가 주주결의의 방식으로 자회사의 동사 또는 법인대표를 변경하고, 자회사가 이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자회사와 자회사의 법인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주주결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 회사법이나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해결을 할 수는 있지만, 소송기간이 비교적 길고(일반적으로 6~12개월), 소송과정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자회사 통제권 상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외투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과 관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중국 현지 외투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 등을 통해 외투기업 동사와 법인장 등 경영진에 대한 인사고과를 진행하고, 중국 현지에서 기타 위법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법인대표와 외투기업 인감관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 현지 외투기업의 변경(경영진뿐만 아니라 기타 변경 모두 포함)이 필요한 경우, 현지 법인의 법인대표가 서명하고, 외투기업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장이 인감까지 통제

하고 있을 경우, 주주의 입장에서 중국 현지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여 부득이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행정관청 실무상 인감을 중요시하는 관행이 있기에, 외투기업의 인감관리자는 한국투자자가 신뢰가능하고 수시로 통제 가능한 인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행정절차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위 사례에서 언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외투기업 법
인대표가 외투기업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투기업
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법원 실
무에서 계좌 압류 등 소송보전절차는 금전적인 소송 관련 기소장을 제
출한 후에 신청할 것을 요구하기에, 외투기업에 위 소송을 제기함과 동
시에 외투기업에 대한 채권반환소송(일반적으로 중국 자회사와 한국
모회사 간에 거래관계가 있기에, 한국 모회사가 중국 외투법인에 대하
여 어느 정도의 채권은 보유하고 있게 됩니다)을 제기하고, 그 소송 제
기 과정에 계좌가압류 등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외투기업의 법인대표가
회사 계좌의 자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08

Shanghai

상표권 악의적 선점에 대한 대응방안



상담내용

B사는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중견화장품기업으로 한국 본사, 중국 상하이 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출시한 신제품의 Sub-brand가 광동성 소재 중국 현지 기업(H사)에 의하여 선출원되어, 시장 반응이 좋은 신제품의 적극적인 마케팅에 대한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문의하였습니다.

상하이무역관

심상희 변리사/ 중국 Keycreate 특허법인 · 한국 지해특허법인

사례의 경우, 중국 현지에 진출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상표 관련 이슈입니다. 우리 기업이 상표를 선점당하는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전문적인 상표브로커에 의하여 상표를 선점당하거나, ②동종업계의 현지기업들에 의하여 선점당하는 경우, ③종전에 보편적이었으나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는 대리상 등에 의한 선점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H사는 종전에 화장품 원료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중국 내에 유통하거나 직접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로, 업무 특성상 한국화장품업계의 사정에 밝은 회사였습니다.

B사에서는 상담 신청 시까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본사에서 상해법인으로 파견나온 직원이 지식재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종전 상표출원업무를 담당하던 현지 대리사무소도 의사소통문제와 출원 이외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이 사례에 대한 뾰족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 무역관에서는 이 사례를 현지의 고문변리사와 함께 상담하면서, 해당 상표의 도안을 마련하게 된 경위, 국내외에서 해당 상표를 포함한 지재권 관리 현황, 해당 제품의 현재 시장상황과 향후 마케팅 계획, 본사와 현지 법인 간 지재권 관련 업무분장, 본사 CEO의 입장, 해당 제품의 국내외 광고·마케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출원한 H사와 접촉 여부, 해당 기업의 업무 및 상표출원 현황을 검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B사에게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해당 상표를 되찾아오는 것이지만,

차선으로 H사의 상표등록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해당 상표를 매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H사의 출원이 초보심사를 거쳐 등록공고가 나면 3개월 간의 이의신청 기간 중에 관련 증거를 갖추어 이의신청(통상 1년 소요)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등록이 될 경우에는 바로 해당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양도협상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양도협상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이미 H사의 법률대리인을 자칭하는 자가 B사로 한 차례 전화가 온 상태였고, H사 명의로 상호 관련성이 부족한 다수의 상표가 출원된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H사가 일정 수준의 보상을 전제로 양도의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최선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해당 상표의 등록을 저지하는 것이므로 이의신청을 준비함에 있어 종전의 증거자료 수집범위를 포함하여 최근 중국 북경시 법원이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부 심사방향을 토대로 공격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상표법 제15조 제2항과 제32조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국 상표법 제15조 제2항은 “동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고, 출원인이 해당 타인과 전 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이나 업무거래 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고, 해당 타인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아울러 해당 타인이 이익을 제기한 경우 등록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2조는 “상표등록 출원은 타인의 먼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

진 상표를 선점할 수 없다.”

중국 상표법 제15조 제2항과 제32조의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선사용 실적 확보와, H사가 B사의 해당 상표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당 무역관에서는 B사로 하여금 회사소개자료, 국내외 상표권을 포함한 지재권 등록 및 관리 현황, 국내외 매출기록(면세점 포함), 상표도안에 대한 중국 저작권 등록, 해당 기업의 지명도를 증명할 만한 각종 수상기록,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실적 등을 포괄적으로 준비하여 선사용 실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B사의 경우 중국 관광객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면세점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과 중국 내 SNS와 인터넷을 통한 광고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선사용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고, 상표 도안을 중국저작권 등록을 해놓음으로써 공격방법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법원의 발표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비록 중국 내에서 선사용 실적이 없더라도, 해외에서의 사용이 중국의 관련 공중이 알기에 충분하였습니다면, 선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사용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상표의 출원인이 대량의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를 “부정한 수단”의 일례로 제시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표브로커에 대한 제재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법원의 입장은 상표평심

위원회 간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B사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내년 이맘때쯤 되어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종전의 상표브로커에 의한 선점 시 사실상 대응방안이 마땅치 못했던 환경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도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기업도 공격을 취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이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 내수시장 진출 시 상표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출원이 가장 바람직하며, 한국 출원 후에 중국출원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아울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리인을 선정하여 방어출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례

09

Shanghai

용역대금 경외 지급 시 원천징수 이슈



상담내용

한국에 소재한 A사는 중국에 B사(이하 “중국법인”)를 설립하였으며 B사는 제품 품목별 상이한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 최근 생산운영의 편리를 위하여 원기구조가 상이한 모 부문을 별도로 분리하여 C사를 설립하여 별도 법인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B사에서 현물(기계설비) 출자 방식으로 C사를 설립할 경우, 세무 이슈 관련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상하이무역관

김일중 회계사/상해중세

ilchung.kim@ctacgroup.com

1. 증치세

〈증치세집행조례실시세칙〉 제4조 6항에 근거, 기계설비로 투자를 할 경우, 매출로 간주하기 때문에 B사는 화물이송 당일 증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C사는 투자자인 B사가 간주매출행위에 대하여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해당 영수증에 근거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국세함[2009]90호 및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36호에 의거하여, 일반납세자가 사용했던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고정자산의 최초구입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증치세를 납부합니다.

	고정자산 매입일자	고정자산 처분일자	매출증치세
1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매출증치세=세금불포함 판매가격*17%
2	2009년 1월 1일 이전	2009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매출증치세=세금포함 판매가격/(1+3%)*2%
3	매입세액 공제불가 고정자산 미공제 시 (매입/처분일자와 무관)		매출증치세=세금포함 판매가격/(1+3%)*2%

2번과 3번의 경우 간이계세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사가 투자하는 기계설비의 구매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증치세전용세금계산 발급이 가능하여 C사가 해당 증빙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2009년 1월 1일 전에 구매한 기계설비 또는 구매일자와 상관없이 매입세액 공제 불가 기계설비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C사는 매입세액

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기업소득세

A. 일반세무처리

화물로 투자를 할 경우 기업소득세법상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으로 보아 투자법인(B사)은 매출로 간주하고 자산양도소득을 인식합니다. 신설법인(C사)은 취득한 기계설비에 대하여 사용에 투입한 월의 차월부터 거래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합니다.

B. 특수세무처리

특수세무처리방법 ①

재세[2014]116호 제1조에 의거, 거주자기업이 기계설비(비화폐성자산)로 투자함으로 인식한 자산양도소득은 5년 내에 상응한 연도의 과세소득에 분할균등 계상하고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는 기계설비 양도소득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매출을 인식한 연도부터 5년 간 균등하게 나누어 당해연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C사는 공정가격에 따라 기계설비의 감가상각을 계상합니다. 다만 B사가 5년 내에 상기 지분을 양도하거나 또는 투자회수 및 말소의 경우에는 상기 과세이연정책을 향유할 수 없으며 지분양도 또는 투자회수 당해연도 과세소득에 일회성으로 산입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특수세무처리방법 ②

재세[2014]109호 및 국가세무총국 2015년 제40호에 의거, 요건 충족 시 아래 특수세무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 전출자인 B사는 자산양도소득을 인식하지 않고 신설법인인 C사는 취득한 기계설비의 기존 계세기초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100% 직접 지배관계인 경내 모회사 간,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이전함으로써 자회사의 100% 지분을 대가로 취득할 때, 아래 조건 동시 만족 시 특수세무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합리적 상업목적を 가지고 세금의 감소나 면제 또는 지연납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2) 이전/이후 연속 12개월 내 이전자산의 기존의 실질적 경영활동을 변화시키지 않음
- 3) 전출기업과 전입기업 모두 회계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특수세무처리방법:

- 1) 전출기업과 전입기업 모두 소득을 인식하지 않는다.
- 2) 전입기업이 취득한 피이전 자산의 계세기초는 피이전 자산의 기존 계세기초로 확정한다.
- 3) 전입기업이 취득한 피이전 자산은 기존의 계세기초에 따라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손금산입해야 한다.

거래 후 연속 12개월 내에 거래 일방의 생산경영업무, 회사 성질, 자산 또는 지분구조 등에 변화가 발생하여 더 이상 특수세무처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B사는 이전 자산의 공정가격에 따라 간주매출로 처리하고

신설법인인 취득 자산에 대하여 공정가격을 기초로 감가상각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상기 특수세무처리 두 가지 과세이연 방법 중 양자택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선택 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3. 결론

법인구분	증치세	기업소득세
투자자 (B사)	증치세 매출 세액 발생	일반세무처리: 자산양도소득 인식. 특수세무처리: (아래 두 가지 방식 선택가능) ① 자산양도소득 인식 후 5년 간 분할 균등하여 과세소득에 산입 가능. ② 자산양도소득 인식하지 않음.
신설법인 (C사)	증치세 매입 세액 발생	일반세무처리: 공정가격으로 취득자산 감가상각 진행. 특수세무처리: (아래 두 가지 방식 선택가능) ① 공정가격으로 취득자산 감가상각 진행. ② 기존 계세기초(장부가액)로 취득자산 감가상각 진행.
통합	단기적 시기 차이는 있 나 장기적으 로 볼 때 세 부담 없음.	일반세무처리: 단기적 시기 차이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B사에서 과세소득으로 산입하고 신설법인이 감가상각 으로 과세소득을 차감하기 때문에 세부담 없음. 특수세무처리: ① 일반세무처리와 동일한 효과임. ② 세부담 낮아짐. B사는 자산양도소득을 인식하지 않고 신설법인인 감가상각을 통하여 과세소득 차감이 가능 하기 때문.



해외투자 TIP

구조조정인 경우 방안별 세효과를 분석하고 어떤 방안이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구조조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사례

10

Shenyang

교육서비스 업종 중국 진출 시 법인설립 방법에 대한 문의



A사는 한국에서 미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최근 중국 파트너사의 합작 요청으로 이번에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서비스업은 중국 정부가 규정한 금지목록에 들어가는 업태로서 법인설립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 관련 법인 설립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선양무역관

김성훈 선양무역관

xiaojin@kotra.or.kr

중국 현지 법인의 설립에 있어, 교육서비스업은 외자기업 출자 제한 목록에 들어가 있는 업종입니다. 이에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진출 초기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애초에 포기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 N사 등 외국계 교육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여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법령 해석에 따라 이를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진출이 가능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의 중국 시장진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출 지역의 해당 지방정부와의 공동법인 설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업의 경우 중국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특별 인가를 받은 형태입니다.

최근 한국의 교육서비스 기업인 D사 또한 동북 3성의 모 지방정부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국 국무원과 해당 성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법인설립 완료료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의 자체 권한이 있으니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좋다면 충분히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각 지방정부가 외자기업과 합작 기구를 설립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이러한 추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북 3성의 경우, 길림성정부에서 “중외합작반학기구” 설립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모기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한국기업이 이미 한국 내수시장에서 성공하여,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만큼 네임밸류가 있는 기업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즉, 중국 지방정부

가 자신들의 지역에 유치하고 싶어 할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 협업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외자 교육기업들이 채택하여 성장해온 방법으로 업종 신고를 교육서비스가 아닌 컨설팅 업종으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컨설팅 업종의 경우, 외자기업 진출 제한 목록에도 빠져있을 뿐 아니라, 컨설팅 업체가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조언이나 방향 수립 등의 지원이 가능하여 일정 부분 교육서비스의 기능이 있어, 외자 교육기업들이 중국 법인 설립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소규모 사업단위로 컨설팅 법인으로 현지 거점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방 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자 교육기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해왔으며, 중국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위 방법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컨설팅 업종으로 법인 설립 후에, 사업의 단기적 성장을 위해 일반 학원 업종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수강생을 받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컨설팅 업체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 조언이나 방향 수립 등의 지원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설립 후 일반 교육서비스업 종사 기업처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중국 유관 당국에서 벌금 등 심각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중국 선양에서 미용 서비스 교육 분야의 업체들이 벌금을 부과받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인 설립 후, 초기에는 사업을 잘 영

위하다가 대규모 수강생을 받고 강의를 진행한 몇몇 기업들이 중국 공상
국에 적발되어 영업정지 및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 기관
의 경우, 한 차례 적발 시 회계/세무 등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 사전에 잘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투자 TIP

외국 교육기업이 중국 법인 설립 시, 컨설팅 기업 법인 설립 방식을 권
해드립니다.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교육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한 일이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소규모 컨설팅 업종의 기업을 시
작으로 중국 현지에서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교
육서비스 분야에서 단기간 내의 성공을 목적으로 한 지나친 사업 추진
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지 정부와의 꾸준한 교
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11

Shenyang



투자진출 시 현지 법인 설립 방식 및 절차에 관한 문의



상담내용

A사는 한국에서 유아용품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이 연간 2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번에 중국에 물류 거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국에 대부분 진출하는 외국기업이 중국 현지기업과 합자/합작 법인설립 방식으로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데, 독자법인 설립은 불가능한지, 그리고 합작과 독자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선양무역관

김성훈 선양무역관

xiaojin@kotra.or.kr

중국 현지 법인의 설립은 보통 독자, 합자, 합작 투자 방식을 의미하며 연락사무소(대표처)는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진출방식을 말합니다. 외국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현지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로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형식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합자와 합작의 차이에 주의해야 하는데 합자의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권리 및 책임의 범위가 자동으로 결정되나, 합작의 경우 출자비율과는 별개로,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해 책임과 권한이 결정됩니다.

과거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자기업이 중국 진출 시, 중국 기업과 합자 방식을 통해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지방정부별로 법령이 다르고, 암묵적으로 합자법인 형식으로 진출하라는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그러했는데, 최근에는 외국기업의 독자법인 설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자법인의 경우, 100% 믿을만한 파트너이거나 지방정부와의 관계가 좋아서 다수의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외국기업의 기술만 습득한 후 해당 법인을 청산시키거나 반대로 반강제적으로 쫓아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동 기업의 경우, 단순 물류거점을 위한 법인 설립이라면 외자 독자법인 설립을 추천드립니다.

실무적으로도 합자법인 설립과 독자법인 설립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초에 법인설립 시 반드시 “무역”이라는 단어를 법인명에 넣기를 권해드립니다. 향후 정식 수출입 기능 추가 시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방 정부 산하 대외경제무역합작국에 등록을 하고, 비준증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후에 현지 공상국에 외

자법인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발부하게 되고, 인감, 공장(公章) 제작 및 등록 후, 국세/지방세 기관에서 은행계좌를 발행하면 됩니다.

최근 중국 법인 설립이 매우 관소화됨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자본금이 1 위안만 등록해도 가능하나, 외자기업의 경우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법인 설립 시 한국과 다른 점은, 법인 설립 이전에 정식 사무소를 구하고 그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1년 사업계획서와 자본납입금을 신고하고 영업집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1년에 183일 이상 중국에서 근무 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하며, 이 또한 현지 회계 신고 시에 반영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잘 짜야 합니다.

단 동사의 경우, 초기에는 단순 물류 거점으로 진출을 희망하므로 향후,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일반납세자 자격의 법인으로 등록할 것을 추천합니다. 크게 두가지 형식이 있는데 우선 일반납세자는 한국의 경우 기업법인을 의미하며,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전자의 경우 증치세(부가가치세, 17%)가 포함된 정식 영수증이 가능하며, 직접 수출입 또한 가능하나 후자는 정식 수출입의 자격이 없어서 향후에, 다른 사업자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지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할 경우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잘 정리해야 하며, 특히 퇴직에 관련된 조항을 추가하여 향후 노사분규 등 분쟁사항에 대해 잘 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가장 초보적으로 준비해야 될 서류는 중국대사관 및 기관의 공증을 받은 개인투자자 어

권과 상기인의 은행잔고 증명서(공증 필요없음), 그리고 정관과 1년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니, 상시적으로 준비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 TIP

외국기업이 중국 현지 법인 설립 시, 독자법인 설립을 권해드립니다. 합자/합작의 경우 사후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처음 중국 진출 시 안정화 기간 동안만이라도 독자법인 형식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법률의 간소화로 얼마든지 독자법인이 설립 가능하며, 법인 설립 시 절차와 법률만 잘 지킨다면 추후에 세금/노동 분쟁도 예방할 수 있으니 준비단계부터 철저히 해야 하며, 법인 설립 컨설팅 업체 이용 시,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지 소재 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 설립의 경우, 중국 각 지방정부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다소 상이한 관계로 현지 정보에 정통한 업체를 잘 찾아야 합니다.

상당사례

12

Xi'an

상표 강탈등록에 대한 대응방법



A사는 2010년 중국 시안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입니다. 2015년 A사는 중국 경내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오던 상표를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출원 시 이미 타사가 해당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상표 출원자는 중국에서 이미 많은 상표를 강탈하여 등록하고 고액으로 판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에 A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시안무역관

채광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ghc@jipyong.com

1. 대응방안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동시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강탈하여 등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제32조). 절차상 초보적인 심사공고 후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선 사용(先使用) 권리자는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그러므로 귀사는 우선 전술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상표국에 이의 제기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를 위하여 관련 증거를 마련하여 “상대방이 부당한 수단을 사용”한 것과 “귀사의 상표가 이미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 부당한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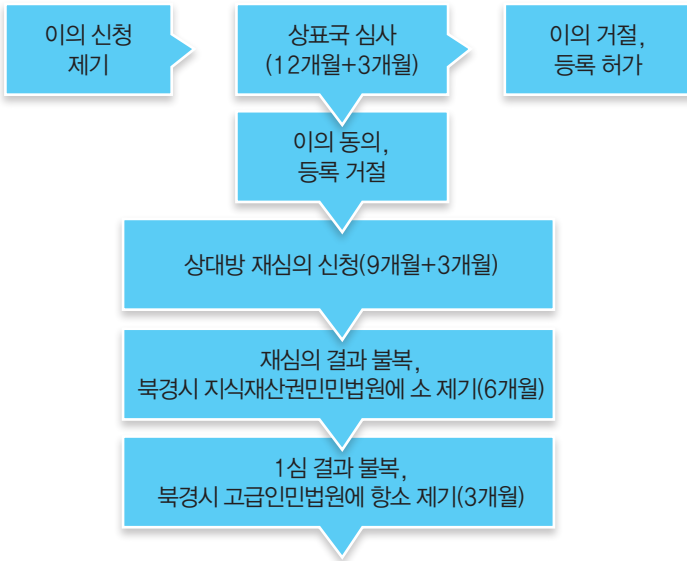
“부당한 수단”에 대해 〈상표법〉에서는 열거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표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제7조)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탈출원자가 부당한 수단으로 강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해당 출원자가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나.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음

“이미 사용하고 있음”이란 중국 경내에서의 사용을 의미하며 “일정한 영향력”이란 해당 상표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련 대중에 인지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상표에 대한 인지도, 해당 상표가 사용된 기간 및 지역범위, 해당 상표에 관한 홍보기간, 방식, 정도, 지역범위 등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상표이의절차

상표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상표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투자 TIP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시안에 운영 중이니 관련 문의가 있을 시 IP-DESK를 활용하시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이메일(ip-desk@kotra.or.kr)

상담사례

13

Xi'an



상표권의 공유



갑과 을은 공동으로 상표국에 A상표의 등록을 신청하여 상표권 등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갑은 A상표를 병 회사에 이전하고자 합니다. 이에 갑은 등록상표 A를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지 및 해당 상표를 사용할 때 기타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시안무역관

채광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ghc@jipyong.com

1. 공유상표권의 이전

공유상표권이란 수 개의 주체가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을 공유하며 그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인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공동으로 동일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상표권을 행사하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5조). 이는 여러 주체들의 공동신청으로 취득하는 상표권을 말합니다.

공유재산 양도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전체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물권법 제97조). 따라서 갑이 등록상표 A를 병희 사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을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등록상표 양도 관련 절차에 따르면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공유상표권의 사용규칙

1) 상표권 공유자의 직접 사용규칙 – 즉 각 공유자는 무제한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각 공유자가 제3자에 대한 사용허가 규칙 – 전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방 공유자가 제3자에게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는 행위는 기타 공유자에게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방 공유자가 제3자에게 상표사용을 허가하거나 또는 당해 상표에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공유상표권에 대한 권리 행사자 – 각 공유자는 모두 상표권의 권리를 수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표권에는 많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혹은 서로 같거나 서로 비슷한 종류의 업종, 상품, 혹은 서비스상에서 비슷한 상표의 사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상표의 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 임의 공유자는 그 침해행위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보전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배제하고 또한 그 손실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해외투자 TIP

해외 진출기업이 직면한 현지 지적재산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등을 제공하고, 정부 간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가 설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시안에 운영 중이니 관련 문의가 있을 시 IP-DESK를 활용하시면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이메일(ip-desk@kotra.or.kr)

상담사례

14

Xi'an



전화녹음이 소송상 증거로 될 수 있는 요건



A사는 한국 투자가가 시안에 설립한 외상투자회사로 B사와 화물매매 거래를 진행하였지만 이에 관한 서면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쌍방의 구두약정에 따라 화물을 제공하였으나 B사는 화물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단 출고증명, 전화녹음 외에 기타 서면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사는 전화녹음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소송 증거로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시안무역관

채광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ghc@jipyong.com

1. 녹취대상

자연인 채무자거나 또는 법인 채무자의 담당책임자의 의사표시는 채무자에게 구속력을 지닙니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녹취대상은 그의 법정대표자거나 또는 당해 사건의 책임자이어야 합니다. 유선으로 연락 시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제공한 명함, 회사소개자료 또는 기타 공개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야 하며 통화 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녹취내용

녹취내용에는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이 완전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여금일 경우에는 가급적 상대방이 거래 경과와 빚을 진 금액을 완전하게 설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진실성 및 완전성

녹취증거는 편집되어있거나 또는 위조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내용이 왜곡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진실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4. 전화녹음 취득방식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증거에 대한 약간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법률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건사실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녹음은 정상적인 통화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타인의 주택에 도청기 등을 설치하여 취득한 녹음은 통상적으로 무효로 인정됩니다.

5. 녹취내용

피녹취자는 녹음 당시 강요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므로 녹음 시 언어, 태도 및 말투 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6. 원본파일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하더라도 휴대폰에 저장된 원본 파일은 삭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급적 해당 전화녹음에 대하여 공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각 지역의 공증처는 전화녹음 공증업무를 처리하며 신청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증처는 「증거보존공증서」를 발급하며 이 경우 녹음증거의 증명력은 일반 증거보다 높습니다.



해외투자 TIP

전화 녹음의 소송상 증거로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상기에 설명하였으나 중국 등 외국기업과 거래 및 협력 시에는 서면 방식을 통해 관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기 사례처럼 전화 녹음을 증거로 법정에 제출 시 음성파일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 스크립트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15

Chengdu

중국 서부지역 투자진출 시 토지이용 관련 및 이익금의 배당 과세에 관한 문의



한국에서 중국 서부지역에 공장 설립을 희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지 공장 이용관련 몇 가지 문의 및 배당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청두무역관

이대용 KOTRA

daeyonglee@kotra.or.kr

1. 토지 이용 관련

현재 중국 법률상 외국기업도 중국 내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나 중국 내에서 생산 및 경영활동을 위한 토지 이용과 임대 시 각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등기주관기관) 내 심사비준을 위해 등록이 필요하며, 정식으로 경영 허가를 받은 후에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사비준과 등기주관기관의 비준을 받지 못한다면 외국기업은 중국 내에서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사용자와 현금 정부 이상의 토지행정주관부가 일정한 기간의 토지 임대 계약서를 체결한 뒤 사용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토지가 속한 현금 이상의 인민정부, 그리고 토지가 속한 관할 정부의 국토자원관리부문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3. 임대 기간 제한은 있나요?

국유토지 임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단기임대와 장기 임대가 가능합니다. 단기로 사용가능하며, 일반적으로 5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토지 및 지상 건축물에 대해 장기로도 임대가 가능하지만, 용도에 따라 최대 임대 기간이 상이합니다. 현지의 경우 보통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4. 공장이나 점포를 내기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을 사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진행해야 할 수속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 : 공장이나 점포를 소유한 명의자와 임대계약(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함)

2) 매입 : 공장이나 점포를 소유한 명의자와 매매계약 후 소유권 명의 변경을 공상행정관리부 및 토지행정주관부에 알려야 함(보통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함)

또한 배당과세 부분 관련, 현지에서 외자기업 설립 후 이익을 창출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中國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實施細則) 제 5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외자기업은 중국의 세법규정에 맞춰 25%의 기업소득세 납부 후의 이윤에서 축비기금(儲備基金) 1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외자기업은 그전 회계연도의 결손을 보전하기 전에는 이윤분배가 어려우며, 그 전 회계연도에 분배하지 않은 이윤은 당해 회계연도의 이윤과 함께 분배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투자자(법인)가 투자하여 설립한 중국 내 법인이사회가 한국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이 5%(지분율 35%이상시), 10%(지분율 25% 미만시)임을 참고바라며, 송금 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이용 은행을 통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 내 현지 투자를 통한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꼼꼼한 현지 시장분석 및 입지관련 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관할 행정기관의 수속을 통한 경영 활동에 대한 허가를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은 전국토가 국유소지로 토지 임차와 매입에 대한 절차가 상이하며 임차/매입 기간 또한 달라 현지 부동산을 통해 사전에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16

Chengdu

중국의 현지 직원 고용종료에 따른 퇴직금 산정 절차에 관한 문의



현지 외자법인으로 현지 직원의 노동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퇴직금 산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청두무역관

이대용 KOTRA

daeyonglee@kotra.or.kr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 및 노사간 합의에 따른 경우, 현지 퇴직금 산정의무가 없습니다만 고용주의 해고 및 계약 종료 후 연장강신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지 노동법에 근거한 퇴직금 산정이 필요합니다.

요청하신 현지 노동계약의 종료 후 퇴직금 산정에 대해 소재하고 계신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로 해당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노동법 제 47조를 보면, 공통적으로 퇴직금(경제보상금, 經濟補償金) 지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 년 이상 근무 시 일 개월의 급여(세전)를 노동자에 지급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일 년 미만의 경우 일 년으로 근거하여 마찬가지로 일 개월치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 미만이라면 반 년치 급여를 경제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근로자 월급여가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현지 직할시 및 시급 인민정부의 근로자 월평균 급여의 3배 이상 초과 시 그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산정의 누적 연도로 최대 1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 언급한 월급여는 근로자의 노동계약 종료 전 12개월의 평균급여로 책정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쓰촨성 청두의 우리 기업이 현지 노동자와의 계약 종료 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책정이 가능하며 두 가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근로자(1) 근무현황 : 급여 6,300위안(元) 및 3년 근무

근로자(2) 근무현황 : 급여 16,500위안(元) 및 15년 근무

* 청두시 지정 월 평균임금 5,043元을 3배(5,043元 X 3=상한액 15,129元) 초과한 경우

근로자(1)의 경우, 6,300元 X 3개월 = 18,900元이 퇴직금으로 산정되며
근로자(2)의 경우, 청두시 상한액 15,129元을 일 개월 치로 산정해야 하며, 최대 산정 연수 12년을 초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12년 치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산정해주면 됩니다. 즉 15,129元 X 12년 = 181,548元 위안이 됩니다.



해외투자 TIP

한국 투자기업의 현지 법인설립 후 근로자 채용과 고용, 퇴직까지 모두 현지 노동법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문제 발생 소지가 없어집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노동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현지 근로자에 대한 대우가 개선되고 있어 자칫 우리 투자기업들이 이를 소홀히 하거나 문제 소지의 빌미를 줄 경우 큰 어려움에닥치게 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하며 특히 고용 종료 후의 일련의 처리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17

Chongqing

중국 내 수입설비에 대한 증치세 및 관세 면세 여부



상담내용

H사는 중국에 위치한 제철업종의 회사입니다. 이번에 외국으로부터 설비를 수입하여 제조 및 생산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A사는 설비에 대한 증치세 및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지 문의 하였습니다.

충청무역관

박영규 충청무역관

572park@kotra.or.kr

외상투자기업은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상 장려산업(鼓励类)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총액범위 내에서 수입설비에 대한 관세 면제규정이 존재합니다만,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상 장려산업이 많이 축소되어 현재는 대부분 외상투자기업은 과거와 달리 관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면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중점사업목록에 해당하는 설비와 제품을 생산할 경우
- 2) 서부대개발 우대정책
- 3) 〈국가고신기술제품목록〉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사용 설비수입 및 계약서에 따라 기술, 부품, 비품을 수입하였을 경우

국가중점사업목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에 해당하는 설비로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원자재 상품 목록(2015년 개정)에 해당하는 제품을 만들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한 증치세 및 관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国家支持发展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2015年修正))이란 대형청정에너지발전설비, LED 설비, 집적회로 설비 등이며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원자재 상품 목록(重大技术装备和产品进口关键零部件、原材料商品目录(2015年修正))이란 핵발전기 일차계통 제품, 대형화력발전 관련, 수력 등 에너지 산업관련 제품과 대형선박, 해양공정 등의 제품으로 이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설비를 수입할 경우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신청서류를 발개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서부대개발 우대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서부지역 장려형 산업목록에 해당하거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해당할 경우 관세와 수입증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서부지역 이더라도 각 지역별로 장려형 산업목록이 다르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작년에 발효된 한중FTA로 인하여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고 2016년 1월 1일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 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으며 또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LCD패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므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수입증치세는 과세되지만 증치세의 과세표준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에는 과거에 외국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각종 면세 및 감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현재는 특정 지역이나 일부 정부 장려산업을 제외하고는 혜택이 대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초기 중국진출 시 귀사 생산 및 취급품목에 맞춰 진출지역과 해당 지방정부의 세제 혜택을 미리 알아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례

18

Chongqing

중국 진출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공제 여부



S사는 중국에 위치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화학제품 제조업을 하는 IT 회사입니다. S사는 회사 내에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일정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아왔었는데, 현지에서 한국과 같은 세금혜택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충청무역관

박영규 충청무역관

572park@kotra.or.kr

기본적으로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금혜택이 있고 중국 내자기업이나 외자기업 혹은 합자기업을 막론하고 조건을 만족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연구기관으로 허가받은 기업 내의 연구개발 전담 부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도서 구입비, 용역 위탁 비용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일컫습니다.

중국의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30조에 따라 기업이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 개발을 위해 발생한 연구개발비용에 대해 추가로 50%를 손금(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형성한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50% 증가된 금액으로 간주하여 상각을 하게 되므로 동일한 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비용 세전 추가공제정책 완비화에 관한 통지〉(재세(2015)119호)에 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인원과 연구개발 활동에 쓰이는 측정기기, 설비 및 무형자산이 동시에 비연구 개발활동에 종사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의 활동 및 측정기기 설비 및 무형자산의 사용정황에 대해 필요한 기록을 해야 하며, 또한 그 실제 발생한 관련비용이 실제 업무시간에 차지한 비율 등 합리적 방법에 따라 연발비용 및 생산경영비용사이 분배하고, 분배하지 않은 경우 추

가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외부기구 또는 개인에게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하여 발생한 비용은 규정에 따라 세전 공제를 할 수 있으며, 추가공제 시,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의 80%를 추가 공제기수로 인정받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전공제의 신청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연도확정세무신고를 할 때 연구개발 지출 보조장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용 상황 취합표를 작성하여 세무국에 제출합니다. 기업은 연도결산 납세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우대사항 비안(등록)표〉 및 연구개발 항목 문건을 제출하여 등록하고, 개발결의, 인원, 계약서, 연구설비, 연구비 보조장 등은 조사용으로 보관해둬야 합니다.

중국은 같은 규정도 기관마다, 혹은 지역마다 다소간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인이 소재한 지역의 세무국에 가서 적용 가능 범위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기업 회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투자 TIP

한국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국도 기업소득세법 30조에 의해 연구개발비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 자료를 세무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사내 회계팀 및 외부 회계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19

Chongqing

중국 내 해외기업의 공익성기부 공제 여부



P사는 중국에 위치한 전자부품 및 기기를 판매하는 한국회사입니다. P사는 종교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세법상 기부금 공제에 관한 규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종교단체가 중국에서는 공익성 사회단체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충청무역관

박영규 충청무역관

572park@kotra.or.kr

한국 세법에서는 기부금에 대한 상당히 복잡한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세 손금인정(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과 개인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규정에 근거한 기부금은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기부금에 대한 개인의 소득공제나 기업 차원의 기부 행위에 대한 세금공제 규제가 사실상 명문화 되지 않았으나 외자 기업의 폭발적인 증가, 국제 수준에서의 세법 규정에 대한 필요성 대두, 중국 내 기부문화 장려의 정책적 수요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해 세액 공제를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중국 세법에도 기부금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업소득세법 제9조에 공익성기부금의 경우 연간 세전이익의 12% 내에서 손금(비용인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 기부금의 규정에 부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개인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법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소득세 부분은 기본공제와 사회보험료 공제 외에 기타 공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규정화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개정을 통해 한국처럼 종합소득세 계산을 준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공익성 기부단체에 대한 자격확인 절차 간소화를 발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확인 심사비준 관련 조정사항에 관한 통지, 재세[2015]141호). 업무절차 간소화, 사회조직부담 경감, 공익성 사회단체 기부 세전공제 자격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회조직이

제출한 기부 세전공제 자격신청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일환을 폐지하도록 하였고 민정부에서 등기하여 설립한 사회조직에 대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그 공익성에 대해 공동으로 확인하고 공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익성 사회단체가 많아질지, 기부문화가 활성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참고로 공익성사회단체란 법에 의해 등기된 법인자격이 있는 단체이고 공익을 취지로 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로 기금회나 자선조직 등 사회단체를 일컫고 종교단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국 내 우리 기업이 중국 현지 공익단체나 혹은 종교단체에 기부한 후 세금을 공제받으려고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관건은 해당 단체나 조직이 중국 정부에 의해 공익단체로 공인받았는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투자 TIP

최근에 중국 정부도 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공익단체 설립 절차 간소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종교단체가 공익단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중국 정부에서 공인한 공익성 단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국 등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당사례

20

Qingdao



웨이하이시 투자환경 분석



상답내용

A사는 한국 무역업체입니다. 중국 웨이하이에서 한국상품성을 조성하기 위해 현지 시장현황을 여러 방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웨이하이시 경제현황 및 소비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적접 부딪혔지만 언어장애와 같은 사유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웨이하이시 전반적 현황 설명 및 외자기업으로서 현지시장 진출 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칭다오무역관

장덕하 해외투자지원센터

qd_kotra@hanmail.net

웨이하이시 투자환경

중국 웨이하이시는 한·중 양국 간 해상거리가 가장 가까운 도시이며 한·중 무역의 왕래 및 교류가 가장 활발한 도시입니다. 2015년 12월 정식 발효한 한·중 자유 무역 협정 지방경제협력 조항에 근거해 웨이하이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와 함께 '한·중 FTA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한·중 무역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확대시켜줬습니다. 한·중 FTA가 정식발효됨에 따라 웨이하이시는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인기투자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웨이하이시 개황

웨이하이의 총 면적은 5,797km²(서울면적의 약 26배)이며, 인구는 280.53만 명(2015년 말 기준)입니다. 2015년 기준 웨이하이 GDP는 인민폐 3,001.57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그중 1차산업 생산액은 인민폐 217.14억 위안으로(+4.3%), 총생산액의 7.2%를 차지했습니다. 2차산업 생산액은 인민폐 1,422.22억 위안으로(+8.2%), 총 생산액의 47.4%를 차지했습니다.

3차산업 생산액은 인민폐 1,362.21억 위안으로(+9.5%), 총생산액의 45.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계제조, 식품가공, 운송장비, 방직의류, 신정보, 신의약, 신소재 등 7대 산업의 발전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하이와 한국의 수출입 무역 현황

2015년말 기준 웨이하이의 한국기업수는 731개로, 한국은 웨이하이의 가장 큰 대외무역시장입니다. 2015년 웨이하이시는 일반무역방식으로 한

국과 인민폐 560.4억 위안 가치의 화물을 수출입하였고, 이는 동기 대비 18%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중 중국의 대 한국 수출액이 인민폐 462.5억 위안이며 동기 대비 36.2%입니다. 중국의 대 한국 가공무역 수출액은 인민폐 465.6억 위안입니다. 가공무역 규모가 약간의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웨이하이에서 대 한국 수출입액의 44.2%를 차지했습니다.

웨이하이시의 대 한국투자는 주로 전자, 기계, 의류, 경공업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점차적으로 상업, 무역, 요식업 등 3차 산업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이하이→한국 항로 현황

국가 A급 대외개방 항구가 13개 있으며 한국, 일본 등 나라와 통하는 해상 여객화물 운송항로가 6개 개통되었습니다.

웨이하이 공항은 국제선 2개 및 국내선 12개를 운항하고 있으며 서울행 국제선은 매일 4편의 항공선이 있습니다. 웨이하이는 중국 최초로 한중 육·해상 연계 운송업무를 시작한 시범항구입니다. 오늘까지 용안항(龙眼港), 석도항(石島港)을 포함한 3개의 한중 육·해상 연계 운송 통로가 개항했습니다.

주요 항로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단, 부두비용은 상대적으로 고정적인 편이지만 해상운임은 성수기 여부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위해-인천 항로 (단위: 인민폐)

컨테이너	THC	Doc	항구 잡비	하역	분류 작업	안전 보장	통관 비용	해운비용(단위: 달러)		
								BAF/ CAF	여객선 (화/목/일)	화물선 (월/수/금)
20GP	775	360	390	200	55	20	150	\$190	\$500	\$300
40GP	1162	360	609	400	99	30	150	\$380	\$900	\$500
40HC	1162	360	614	400	99	30	150	\$380	\$950	\$550

컨테이너 부두 처리비용 (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무역관련서류 (DOC : Documents)

유류할증료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 (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위해-부산 화물선 항로 (토/단위: 인민폐)

박 스 형	THC	Doc	항구 잡비	하역	분류 작업	안전 보장	통관 비용	PSS (달러)	BAF/CAF (달러)	해운비용 (달러)
20GP	775	280	460	200	55	10	150	\$30	\$190+\$30	\$0
40GP	1162	280	660	400	99	15	150	\$60	\$380+\$60	\$0
40HC	1162	280	660	400	99	15	150	\$60	\$380+\$60	\$0

성수기 할증료 (PSS : Peak Season surcharge)

웨이하이시 직원의 임금과 복리

2016년 6월 1일부터 웨이하이시 월별 최저 임금이 1,600위안에서 1,710위안으로 인상되었으며, 시간당 최저임금은 17.10위안입니다.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국의 노동력 원가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원가 인상은 중산층과 저수입을 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집중되어, 그 영향으로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분류	급여(월)
주재원	월급: 1~3만 위안
회계	3000위안~5000위안
일반작업공인	2500위안~4000위안
보통 사무직	2000위안~5000위안/월
보통기사	2500위안~4000위안

종목		총 임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례	
		기업납부	개인납부
사회보험료	양로	18%	8%
	상해	2%	
	생육	0.5%	
	실업	1%	0.5%
	의료	8%	2%
주택 기금		8~12%	8~12%
합 계		38~42%	19~23%

종합적으로 봤을 때, 웨이하이는 투자하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웨이하이는 육·해·공 운수가 활성화되어 있어 지난·칭다오·옌타이 등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인건비, 수도전기, 용지임대 등의 자원이 저렴하고 풍부한 편입니다. 현지 투자유치 정책에 따르면 투자액 및 업종에 따라 업무편의 및 관련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단,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한 혜택정책에 부가조건도 같이 붙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체결 시 혜택정책보다는 부가조건에 대해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성공적인 해외투자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입지선정 시 중요한 점검사항으로는 투자 진출 목적, 지역별 임금수준, 인력수급 현황, 노동법규, 상권분석, 지역별 중점 투자유치업종 등입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시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당사례

21

Qingdao



중국 법인설립 절차 및 비용



상당내용

A사는 한국에서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회사법의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 때문에 중국진출 첫 단계인 법인설립에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법인 설립의 까다로운 절차와 소요자료 등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칭다오무역관

장덕하 해외투자지원센터

qd_kotra@hanmail.net

A사가 우려하고 있는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은 201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소요시간, 제출자료 등이 이전보다 대폭 간소화되었으며, 중국 회사법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장환경에 맞춰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안은 2013년 12월 28일 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4년 3월 1일부터 정식시행되고 있는 회사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은행, 증권회사, 선물회사, 기금관리 회사, 보험회사, 직접판매회사, 대외노무 합작기업 등과 같이 법률 및 행정법규상 별도로 등록자본금 실제납입등기제(注册资本实缴登记制)라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에 일률적으로 회사 주주(발기인)가 자율적으로 약정납입 출자액, 출자기한, 출자방식 등을 결정하여 출자상황에 대한 진실성과 합법성에 책임을 지는 등록자본금 약정납입등기제(注册资本认缴登记制)로 수정했습니다.
- 법률 및 행정법규상 등록자본금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최소 등록자본금 제한(유한책임회사: 최소 등록자본금 3만 위안; 1인 유한책임회사: 최소 등록자본금 10만 위안; 주식유한회사: 최소 등록자본금 500만 위안), 최초 출자 금액 및 비율, 현금출자비율 및 미납금 납입기한과 관련된 규정을 폐지하여 등록자본금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즉 2014년 3월 1일부터 등록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이론적으로 중국에서 '1위안 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 ‘오증합일’ 후 중국 법인설립절차

2016년 6월 30일, 국무원 판공청에서 〈‘오증합일, 일조일마’ 등기제도 개혁추진에 관한 통지〉를 공표하여 2016년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국무원 판공청 공표 (2016)53호). 오증합일이란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사회보험등기증 및 통계등기증이 하나로 통합된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회사설립에 3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1개월 내로 단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인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사명칭 사전심사비준(工商局申请公司名称核准) 비용: 무료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 웹사이트나 각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사용할 기업명칭을 사용가능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통과 후 기업명칭심사통과통지서(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를 수령합니다.

- ▶ 소요기간: 4~5영업일(예비심사: 1~2 영업일; 최종비준: 3영업일)
- ▶ 제출서류: 신청서, 지정대표나 공동대리인 위탁증명, 투자인 자격증명 사본 등.

②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발급신청(工商局申请营业执照) 비용: 무료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공상국) 웹사이트에서 예약하여 관련자료를 공상국에 제출합니다. 제출일로부터 5영업일 후 영업집조를 수령할 수 있고, 수출입업무를 진행할 경우 이를 영업범위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 제출서류: 신청서, 정관, 상호(기업명칭)등록 사전심사 비준통지서, 동

사회(이사회)구성명단, 동사회 구성원 신분증명서, 동사 및 감사와 경리의 임명서류와 신분증(여권)사본, 법적대표인 임명서류와 신분증(여권)사본, 동사회 결의서, 대리인 이용 시 위탁서 등.

③ 상무국 온라인 서류 등록(商务局网上备案) 비용: 무료

영업집조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현지 상무국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 절차 및 관련자료는 해당 상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④ 해당지역公安국(公安局) 인증 인감등록(公安局申请公章)

▶ 비용: 공장 1개당 180위안(공장, 재무 도장, 영수증 도장), 법인장 1개당 170위안으로 총 4개로 약 710위안; 소요기간: 약 3영업일

▶ 제출서류: 영업집조 원본 및 사본, 법적대표인의 신분증(여권)원본 및 사본, 위탁서,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영업집조 수령 후 1주일 초과 시 법적대표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⑤ 은행계좌 개설(银行开户)

▶ 제출서류: 영업집조 원본 및 사본, 공장, 재무 도장, 법인장, 법정대표인 신분증(여권)원본 및 사본, 대리인 2명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인터넷 뱅킹을 개설하려면 대리인 2명의 신분증 필요).

▶ 소요시간: 3~4영업일; 소요비용은 은행마다 다름

⑥ 국세국 영수증발급시스템 설치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 국세국에 영수증 발급시스템 설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 ▶ 비용: 약 1660위안

⑦ 세관등록

해외무역을 개시하기 위해 세관등록 수속을 거쳐야 합니다.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통관수속 등기증'을 취득하여 세관등록코드를 받습니다. 이후 '중국전자통관시스템' IC카드를 신청합니다(법인카드 및 오퍼레이터카드).

- ▶ '중국전자통관시스템' IC카드 비용은 카드 2개 x 개당 31위안 + 카드 리더기 85위안 + 수속료 100위안 = 총 247위안입니다. 소요기간은 약 1주일입니다.

- ▶ 제출자료: 영업집조 복사본, 법정대표인 신분증 복사본, 은행계좌 개설 복사본, 재무직원 신분증 복사본, 기업정관 복사본 등.

■ 현지 법인설립 대행비용

조선족 업체 법인설립 대행비용: 약 5,000위안~8,000위안

현지 한국업체 법인설립 대행비용: 약 1만 위안

- ▶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1번~4번까지만 포함하여 대행업체에 따라 실비를 따로 청구할 경우도 있습니다. 5번부터는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 추가 서비스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중국에서 법인설립 초기의 투입비용, 절차, 소요시간 등이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국가 측면에서는 외자기업도 내자기업과 평등하게 대하여 특별한 혜택이 없어졌지만, 특히 2선 및 3선 도시의 지방정부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에 최대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단, 몇 년간 현지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제한이 있고 관련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회사철수 시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CZECH

체코



상담사례

01

Praha

자회사 설립 시 회사 형태 및 설립절차



상담내용

A사는 러시아에 소재지를 둔 회사로서 체코 프라하에서 건설업을 하고자 합니다. 체코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한 자회사 설립 시 회사의 형태, 자격 및 설립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프라하무역관

jyj@kotra.cz

체코에서 회사의 형태 및 설립에 대해서는 회사법이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이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법 제1조는 법인의 형태인 Unlimited Partnership(합병회사), Limited Partnership(합자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유한회사), Joint Stock Company(주식회사), Cooperatives(협동조합) 및 유럽연합 내 특수한 형태의 법인인 European Company, European Economic Interest Grouping 및 European Cooperative Socie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형태 중 외국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형태는 Limited Liability Company입니다. 한국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체코의 경우 대부분이 Limited Liability Company 형태를 취합니다. 또한 법인은 아니지만 또한 많이 고려대상이 되는 형태는 Branch입니다. 유한회사는 그 설립절차 및 요건이 간편할 뿐 아니라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한국의 경우 유한회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하 유한회사라 칭하기로 합니다. 유한회사는 최소자본금 1크라운, 법정 기관이 주주총회 및 대표자 등 그 요건이 간단합니다. 유한회사는 그 법정 기관이 간단한 반면 대표자의 권한이 포괄적이라 모회사의 견제가 필수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물론 감사기관은 선택적으로 설립될 수도 있습니다.

Branch는 지점이라 칭하기로 합니다. 지점은 최소자본금이 필요하지 아

니하며, 단지 지점장만을 법정기관으로 두고 있어 더욱 간편합니다. 또한 지점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므로 모회사의 결정으로 쉽게 해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프로젝트성 일을 하기 위해선 해산 시 장기간이 소요되는 유한회사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점의 지점장은 모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지점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설립절차는 Trade License Office로부터 Trade License를 받은 후 Commercial Registry Court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통상 일반적 형태의 사업목적의 경우 Trade License 신청 시 특별한 요건이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A사의 경우 건설업을 하고자 하므로 특별요건이 요구됩니다. 즉, 대표자, 임원 또는 직원 중에 관련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Trade License에 대해서는 신청 후 7일 이내 결정이 이루어지며, 법인등록에 대해서는 신청 후 5영업일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회사법 제8조는 회사의 설립시기가 공증받은 정관의 작성 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9조는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설립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정관작성만으로 설립됨으로 이후 발기인은 그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체코 민법 제 127조에 의하면, 법인은 법인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설립 후 등록 전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로 설명하자면 설립 중 법인으로 설명될 수 있을 듯합니다.



해외투자 TIP

제3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행위를 하기 위해선 언어 및 문화가 다를 것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설립절차 등이 간단하긴 하지만, 각종 행정절차적인 면, 직원의 합법적인 체류 등 다양한 면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촉박한 목표를 두고 접근한다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적인 면에서도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 임대 등을 동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건축허가, 사용허가 등 각종 절차에서 충분한 사전조사 및 전문가와의 상담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사례

02

Praha

고용카드 발급 및 단기비자



상담내용

B사는 체코에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국인 인력 고용 시 고용카드 발급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용역인력 파견 시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단기비자)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프라하무역관

정지연 프라하무역관

jyj@kotra.cz

기본적으로 체코에서 EU외의 국가의 시민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카드(Employee Card)가 필요합니다. Employee Card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체코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Employee Card의 발급은 기본적으로 체코 내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Employee Card 소지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 Act No. 435/2004 Coll. 86조항에 따라 채용하고자 하는 일자리 정보를 지역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며 Employee Card 소지자를 위한 일자리정보 시스템(The central records of vacancies available for employee cards)에 등록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일자리에 대한 등록번호가 있어야 추후 Employee card 소지자가 그 번호를 바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학위증명서, Job Description(직무내용설명서) 등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되는 사유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mployee Card는 임금이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임금 이상이고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그 이후에는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서 제출 후 60~90일 정도 소요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서류는 신청서(일자리 등록번호 기입), 유효한 여권, 거주 계약서, 고용계약서(또는 향후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고용합의서), 고용되는 일자리에 합당한 자격서류(학력증명서, 전문자격증 등),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별도 요청 시) 등이 있습니다. 필요서

류 및 세부절차는 체코 내무부(MVCR) 또는 노동복지부 통합포탈 사이트 (portal.mpsv.cz/sz/zahr_za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 발급 시 최대 6개월까지 체류 가능한 경우의 단기비자는 노동비자라고 할 수 있는데, Employee Card가 발급되기 전까지 약 4~6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브릿지 형식으로 발급해주는 경우입니다.

기본 발급 기간이 90일이며, Employee Card 발급이 전제조건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Employee Card 발급에 특별한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0일까지 체류가 아닌 90일 체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체코는 관광, 단순 방문 등의 이유로 9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 정확한 목적(업무 수행)이 있기 때문에 90일 무비자 조항을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국내 또는 인접국가로 이동하여 단기 비자(노동비자) 발급받는 것 역시 Employee Card 발급이 전제조건으로 있으므로, 처음부터 Employee Card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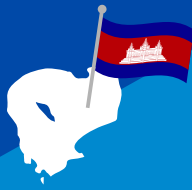
해외투자 TIP

비자 신청 후 소요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무사증 체류기간(9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비셴겐국가(Non-Schengen)를 통해 재입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 준비서류는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다수의 건을 진행할 경우에는 에이전시를 통해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CAMBODIA

캄보디아



상당사례

01

Phnum Penh

가압류, 가처분을 통한 채권회수 방법



상당내용

A사는 캄보디아에서 무역업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캄보디아 기업이나 개인과 상거래를 통해 많은 금전채권이 발생하고 있으나, 담보를 미리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회수하고자 하는 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 또는 훼손하게 되면 향후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는 지 문의하였습니다.

프놈펜무역관

이경천 변호사 / 법무법인 수호 캄보디아사무소

kclee61@naver.com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여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매출신장도 중요하지만, 각종의 거래관계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타인에 대한 금전채권을 적기에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자진해서 변제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전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강제집행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분쟁이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면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담보가 있는 경우에 하는 강제집행 경우와 담보가 없는 경우에 하는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저당권설정 등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을 실행해서 회수를 할 수 있지만,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을 증명해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이 필요한데,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일반재산을 도피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채권회수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보전처분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압류

- 2)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 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일반적인 가처분
- 3)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하면, 법원은 심리를 한 이후 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전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보전처분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기각하거나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당사자는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항고(Chomtoah Appeal)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고에 대하여는 재항고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은 보전처분의 대

상목적물이 특정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임의적으로 대상목적물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사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데 가압류 및 가처분은 매우 유용한 법적 수단입니다. 캄보디아 법원의 정식재판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채권회수를 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사의 재량의 여지가 매우 크므로 외부 압력 및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급심에 결정된 가처분 결정이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및 항고를 통해 쉽게 번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판사들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판사들 개인의 경험이나 의견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많은 채권채무관계가 생기지만, 자발적인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채권회수는 채권서류의 여부, 담보 취득여부, 채무자의 일반재산 존재 여부 등 법적으로 고려될 여지가 많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경우 사법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법원의 정식소송을 통한 회수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한 회수가 효과적입니다.

상담사례

02

Phnum Penh

캄보디아 형사소송 절차



A사는 캄보디아에서 봉제공업을 회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경리담당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횡령사고를 한 직원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형사소송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프놈펜무역관

이경천 변호사 / 법무법인 수호 캄보디아사무소

kclee61@naver.com

캄보디아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캄보디아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피해자는 검사에게 고소 또는 제3자는 사법경찰관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받은 경우 사건을 접수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기소여부 확정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사전조사(Preliminary Inquiry)는 사법경찰관의 공판전 조사(Pre-Trial Inquiry)로서,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경찰의 재량 또는 검사의 요구로 사전조사(Preliminary Inquiry)를 할 수 있으며,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경범죄(Felony)나 중범죄(Misdemeanor)에 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이를 검사(Royal Prosecutor)에게 즉시 알려 주어야 합니다.

검사(Royal Prosecutor)가 조사를 한 이후 최초의견서(Introductory Submission)를 제출하게 되면 피의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법수사에 착수합니다. 검사의 의견에 의하여 형사법원의 판사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형사절차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사 판사’와 ‘결정 판사’가 구분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수사(Investigation) 판사가 고소인과 피고인을 소환하여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합니다. 수사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얻게 되면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유지할 것인지 묻고 검사가 해당 사건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해당 사건을 결정(Decision) 판사에게 넘깁니다.

두 번째 단계로, 결정(Decision) 판사는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와 같이 공판절차를 개시하여 법정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이상과 같이 캄보디아의 형사법 체계는 범죄의 분류방법, 수사담당기관, 재판기관의 구조 등 여러 면에 있어서 대한민국과는 상이합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형사절차를 계수하여 예심이라는 특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심이라 공소권 행사를 전제로 하여 범죄 행위자를 특정하고 범죄인의 인격을 해명하여 해당범죄의 상황과 결과를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검찰이 행하는 범죄수사와 유사하지만, 담당기관이 수사 판사라는 점이 특이하고, 예심(수사)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됨으로써 신속한 형사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인에 대해서 사기, 횡령, 공문서 위조 등 범죄행위를 발견하여 검사에게 고소한 경우, 수사가 이루어지나 담당검사 및 수사 판사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고,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을 고소인에 지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체 수사는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 범죄요건이 증명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령, 범죄사실을 입증하더라도 피의자가 도주하여 피고인 부재상태에서의 궤석재판(Default Judgment)이 내려져 사실상 범죄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캄보디아에서는 형사고소는 가능하지만 형사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으로 내부통제 등 관리수단을 강화하여 횡령 배임 등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외투자 TIP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형사고발을 하거나 당하는 등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가 생길 경우, 우리나라 법제와 달리 사법경찰관, 검사, 수사판사, 결정판사 등 형사제도 및 절차상 차이점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THAILAND

태 국



상담사례

01

Bangkok

상표권을 활용한 도메인(xxx.co.th) 취득절차 및 유의사항



S사는 한국에서 온라인 화장품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태국업체와 총판계약을 맺고 현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총판에서 태국 내 외국 브랜드를 사용하여 도메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증, 브랜드 사용허가서 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상표권을 활용한 도메인 취득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방콕무역관

이부영 소장/방콕

ipdeskthailand@gmail.com

도메인(Domain)이란 숫자로 이루어진 인터넷상의 컴퓨터 주소를 알기 쉬운 영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메인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도메인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명 상표의 인터넷 활동이 급증하면서 자사 상표도용 또는 혼용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입니다.

태국 내 일반기업들이 사용하는 도메인 종류에는 .com, .net, .biz, .info, .co.th 등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메인 형태는 .co.th입니다. 태국 내 기업들이 .co.th 도메인 형태를 선호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타도메인 형태와 달리 등록 시 현지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웹사이트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co.th 도메인 형태로 등록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명과 동일하게 도메인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태국 내 법인존재 유무에 따라서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현지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요구하며, 태국 내 소재지가 없는 외국기업일 경우 반드시 에이전트 등의 현지대리인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외국기업 및 에이전트의 사업자등록증과 외국기업에서 발급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허가 확인서가 필요하며, 확인서 내용에는 대리인 정보 & 대리인에게 해당 웹사이트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태국 또는 해외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게 도메인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국에 등록된 상표일 경우 상표등록증 원본이 필요하

며, 해외 등록된 상표일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더불어 상표권자가 발급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허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도메인(xxx.co.th) 등록 방법 및 필요서류

기업명과 동일하게 도메인 등록		상표권을 활용한 도메인 등록	
태국법인	외국기업 (태국 소재지 無)	태국 등록상표	해외 등록상표 (태국 상표등록 無)
사업자등록증	외국기업 사업자등록증(영문)	태국 상표등록증	해외 상표등록증(영문)
	현지대리인 사업자등록증		외국기업 및 현지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도메인 사용허가서 (외국기업→에이전트)		상표 사용허가서 (외국기업→에이전트)

위와 같이 도메인(xxx.co.th)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재단법인 태국네트워크정보센터(Thai Network Information Center Foundation) 산하에 있는 'T.H.NIC Co.,Ltd.'에 이메일(staff@thnic.co.th)을 통한 접수신청이 가능하며, 관납료 납부 후 2~3일 정도의 서류심사기간을 거쳐 도메인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메인(xxx.co.th) 등록 시 요율표

(단위 : Baht)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856	1,605	2,408	3,210	4,013	4,623	5,393	6,164	6,934	7,704

온라인 쇼핑몰 사업의 경우 도메인 이름이 상표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태국 내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표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도메인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타도메인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태국 내 소재지가 없는 외국기업의 경우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 등을 통해 도메인 신청을 진행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상표권을 활용한 도메인 등록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외국기업 및 에이전트 간 계약이 만료되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주체적으로 도메인 네임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해외투자 TIP

인터넷 주소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체에게는 상표권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도메인명이 선등록 및 선점주의 원칙에 따르지만 누군가 해당 도메인 주소로 상표등록을 했을 경우 기등록된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메인 등록전 태국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 있는지 해당도메인으로 등록된 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례

02

Bangkok

부가가치세 제도 및 면제대상



상담내용

H사는 태국에 현지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공연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업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태국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등록 방법 및 진출하려 하는 분야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방콕무역관

김소선 과장/방콕

lunakss@kotra.or.kr

현재 태국 세법상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10%이나, 세법이 도입된 1992년부터, 1997년 폭양공 위기기간 동안을 제외하고는 칙령을 통해 7%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16.11.1.)된 칙령에서도 2017년 9월 30일까지 7%를 적용하고, 이후 10월 1일부터 10%로 변경될 것이라 공표하고 있으나, 소비위축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 심화를 우려하여 당분간 7%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 조합, 법인으로 사업 형태와 무관히 연간 매출이 180만 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물품을 판매하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태국 내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제공자, 태국에서 물품의 판매 및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설립된 외국 법인의 태국 대리인 및 지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월 단위로 과세하며, 납세 대상자는 세금이 발생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이 여러 곳에 위치한 경우, 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장별 소재지역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매입 부가가치세가 매출 부가가치세를 초과하는 경우, 부가세 사업자는 환급을 신청하거나, 이후에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할 수 있는 선납 부가가치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신청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며, 환급 신청 항목 중 부당한 신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20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등록을 게을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등록 말소 후 사업을 계속한 경우, 신고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매출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게을리한 경우, 필요한 보고의 작성을 게을리한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또한 미납한 부가세 금액이 있는 경우, 미납액에 대해 월 1.5%의 연체이자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때 연체이자의 상한은 미납한 부가세 금액입니다.

공연사업의 경우 문화관련 서비스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문화관련 서비스 외에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 서비스, 공익 관련 서비스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특정 사업세(Specific Business Tax)의 대상이 되는 은행, 금융기관, 증권 및 주 택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도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영(zero) 세율을 적용 함으로써 재화나 서비스 최종원가에 부가가치세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됩니다. 태국 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
- ②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닌 서비스를 수출하는 경우
- ③ 태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지만 외국에서 사용되는 경우
- ④ 법인의 형태로 항공 또는 선박에 의한 국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⑤ 해외 차관 또는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정부투

자기관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⑥ UN, UN의 대행기관, 대사관, 영사관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⑦ 보세 창고 또는 관세 면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간 재화를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외투자 TIP

부가가치세는 실무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조세 회피로 인식되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이 추징되거나, 과도한 가산세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태국은 자산규모 또는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감사가 완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POLAND

폴란드



상담사례

01

Warsaw

폴란드 최저임금 제도



A사는 저임금의 투자매력도가 매우 높은 폴란드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생산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현지의 생산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폴란드의 최저 임금제도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715293@kotra.co.kr

폴란드 최저임금 규정은 사회주의 체제시기인 1956년에 처음으로 정부 내각 시행령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1988년에는 사회보장노동부 결정 사안으로 변경되었다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는 사회경제3자(정부대표, 고용자연맹 및 노동조합 연맹 대표)위원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정부내각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수준을 6월 15일까지 사회경제3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협의를 거쳐 매년 9월 15일 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공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폴란드 최저임금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월 1,850즈워티(Gross)인 최저임금이 2017년에는 2000즈워티(약480 달러) 선으로 상향조정되어 금년 대비 8.1%라는 큰 폭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년도	하루 8시간 풀타임 근무 시 최저임금 (단위: PLN)	전년 대비 인상률(%)
2010	1,317	2.97
2011	1,386	5.20
2012	1,500	8.23
2013	1,600	6.67
2014	1,680	5.00
2015	1,750	4.17
2016	1,850	5.71
2017	2,000	8.10

자료원 : 폴란드 노동부

최저임금 적용은 폴란드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에 적용되며, 최저임금 미만 수준의 월급지불은 불법입니다. 노동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의 시간제 계약직(아르바이트) 채용일 경우, 현재까지 최저시급액에 대한 법정제한이 없어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시급을 정할 수 있었으므로 고용주의 부당한 임금지불 행위로부터 시간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폴란드 정부는 시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최저시급을 13즈워티로 법정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폴란드 국내 소비경제 향상, 수출증가에 따른 산업 주문량 상승 등으로 고용증가, 실업을 감소라는 긍정적인 노동시장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산업 전반적으로는 노동력 부족현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인력부족 현상은 임금인상 압력을 계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으며 고학력의 전문직뿐만 아니라 단순노동직까지 폴란드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임금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시급 13즈워티 제한 결정도 기업의 임금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6년 7월 기준 폴란드 주요 평균 직종별 임금 (Gross)

직종	임금 (단위: PLN / USD)
IT 및 정보통신	7300 / 1752
건설	4177 / 1000
산업생산	4384 / 1050
가공생산	4063 / 973
물류 및 수송	3904 / 935
사무보조	3001 / 718
판매	3919 / 938

* 1 USD: 4.17 PLN(2016년 11월 21일 기준 환율)

*자료원: Sedlak&Sedlak, 폴란드 통계청

폴란드 현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금인상 관련 숙련된 노동력의 이탈을 막기 위하여 현지 직원들의 복지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 시킬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유럽시장으로의 지리적 접근성과 무엇보다도, 임금이 낮다는 장점 덕분에 유럽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적합한 생산기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내 산업전반의 임금상승이 지속되는 추세 속에서 폴란드는 더 이상 저임금 요소만이 매력적인 투자국이 아니며, 우수한 노동력과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임금의 투자매력도를 지닌 국가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투자 TIP

2017년 1월 1일부로 근로계약에 의해 체결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법정 최저임금이 2000즈워티로 인상되고, 시간제 계약직 최저 시급도 13즈워티로 법정 제한될 예정임을 숙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 벌금형이 부여됨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02

Warsaw

개정 폴란드 연구 개발비 세제 감면안 소개



상담내용

대기업인 A사는 폴란드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17년 1년간 연구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사업 비용에 대한 세제공제가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바르샤바무역관

Michal Lesiuk 세무고문 / Ernst & Young Poland
Michal.Lesiuk@pl.ey.com

박소정 한국테스크 매니저 / Ernst & Young Poland
So.Jeong.Park@pl.ey.com

폴란드 일반 소개: 투자의 적기를 맞은 폴란드

폴란드는 유럽지역 지리적 중심으로서, 주요 물류 거점들이 교차하는 교통요지이며, 3천 8백 5십만 인구의 수요잠재력을 갖춘 시장입니다. 폴란드는 뛰어난 지리적 입지 조건과 함께 지속적 경제 성장율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경제, IT, 공학 및 자연과학의 전문 분야에서 창의적 젊은 인재들이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016년 유럽 매력도 평가(European Attractiveness Survey)에 따르면, 폴란드는 중동유럽의 지역적 리더로서뿐 아니라, 유럽 전체 단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투자 선호도 측면에서 보자면, 직접투자 선호지역으로서 유럽전체국 중 5위를, 중동유럽지역으로만 국한시켜보자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저작권 관련 우대세제

폴란드에 직접투자를 하는 회사들의 경우, 다양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인 R&D활동 관련 세무감면책 및 저작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한 우대 세제(Preferential Taxation of Copyright Based Remuneration)를 이번 기회를 통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① 연구 개발 활동 관련 신(新)세무감면책

(NEW TAX RELIEF FOR R&D ACTIVITIES)

연구개발과 관련한 세무 감면은 2006년 이후 폴란드 세법상 시행 적용되고 있으며, 창의적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을 장려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창의활동(Innovative Activities)을 추진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제 방안의 하나로서, 신 기술 획득에 관련된 비용의

절반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2016년 이 감면안이 신(新)연구개발 공제(New R&D Tax Relief)로 재편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16년 이후, 이 감면책의 범위는 연구개발활동(Research & Development Works) 영역으로 재편되었는데, 이는 폴란드 법인세법에 의해서 규제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개발활동이란, 단지 연구실(Laboratories)의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품의 신기능 적용 또는, 생산프로세스 혁신, 신제품 개발 등의 실제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상에도 접목되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 연구개발 세무감면책의 핵심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하기에 기술된 '연구개발관련 실비'(Eligible Expenditures)의 경우, 추가적으로 과표(과세표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연구개발 활동을 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에게 지불된 총보수(관련 추가요금 포함)(Gross remuneration with the surcharges)의 30%
-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원료 및 공급품에 대한 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 20%)
- 학적 연구기관에서 제공된 과학적 리서치의 결과물 및 관련 자문비 또는 해당 전문가의견과 관련되어 지불된 비용(Expertise, Opinions, Advisory and other related services, as well as cost related to acquisition of scientific research results conducted or provided by academic units)의 10%(중소기업의 경우, 20%)
-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활용된 기계 및 자산의 사용에 관련된 비용의 10%(Cost of using equipment/Assets utilized for R&D activities)

(중소기업의 경우, 20%)(*주의 : 일부 예외적 사항이 있음)

적용가능 비용의 경우, 비용이 발생한 해당 과세 연도 또는 납세자가 그 해당 공제 비용으로부터 수혜를 받을 권리를 득하거나, 수혜를 본 해당 연도로부터 3년 내로, 세무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공제 범위에도 불구하고, 공제 범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가능한 비용은 타 방법이나 세무 공제 적용을 통해서, 공제되지 않은 경우(즉 다른 기타 세무환급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비용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공제를 원하는 해당 기업이 만약 경제특구 허가를 받는 특별 경제 구역 내에 위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된 R&D 공제의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2017년 이후, 이 연구개발 세무 공제 방안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며, 이는 공제를 원하는 납세자들에게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신개정 연구개발비 공제 방안은 공제 가능 비용의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해당 실비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적용 범위를 살펴보자면 하기와 같습니다.

- 연구개발 활동을 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에게 지불된 총보수(관련 추가요금 포함)(Gross Remuneration with the surcharges)의 50%
-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원료 및 공급품에 대한 비용의 30% (Costs of supplies and raw materials)(중소기업의 경우, 50%)
- 해당 전문가 자문비 또는 해당 전문가의 의견과 관련되어 지불된 비용

(Expertise's and advisory and using equipment)(중소기업의 경우, 50%)

-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활용된 기계 및 자산의 사용에 관련된 비용의 30%(Assets utilized for R&D activities)(중소기업의 경우, 50%)

이와 더불어, 공제는 해당 비용 발생 연도 또는 해당 수혜의 권리를 득한 후 6년 간 세무공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연구 개발 세무 공제의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② 저작권 보상금(COPYRIGHT BASED REMUNERATION)

대기업에 해당하는 회사 X는 2017년 한 해 동안 연구개발 리서치 프로젝트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00명의 연구 개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며, 이 인원의 월 급여는 인당 10,000PLN입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성과 생산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임직원들에게 권장되는 인센티브 정책을 소개드립니다. 폴란드 세법에 의하면, 임직원에 의해서 창출된 업무가 그 성격상 창의성(Creative Nature)을 띠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해당 의견, 전략, 프레젠테이션 등(Preparing Opinions, Presentations, Strategies or policies)〉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당 임직원의 공제 가능 비용이 해당 수익의 50%까지 책정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 비용에 대한 보상체계를 잘 설계, 활용할 경우, 급여의 세무적 차원의 효율성 제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즉 공제 가능 비용의 증가에 따른 임직원의 실급여액(Net Salaries)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지금 이 글에서 잠시 짧게 살펴본 것과 같이, 폴란드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세제상의 인센티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케이스들과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KOTRA 폴란드 바르샤바 무역관(www.kotra.or.kr/KBC/warsaw) Q&A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03

Warsaw

화장품 유통 및 온라인 판매



화장품을 유통하는 한국 회사인 B사는 폴란드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시작하여 폴란드 고객에게 한국 화장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한국 회사는 폴란드 시장 진입을 위해 화장품이 충족해야 하는 법규 요구 사항과 온라인 쇼핑몰 설립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바르샤바무역관

Joanna Krakowiak 변호사 / Wardynski & Partners로펌
joanna.krakowiak@wardynski.com.pl

김세롬 변호사 시보, 한국데스크 담당 / Wardynski & Partners로펌
serom.kim@wardynski.com.pl

화장품 시장 도입 - 법규 요구사항

폴란드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본 상품 종류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은 기본적으로 2009년 11월 30일 화장품 상품에 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1223/2009번("화장품 규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유럽 시장에 오직 유럽연합의 화장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화장품만 진입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는 특히 유럽연합 시장 내에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를 선정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정된 주체는 상품 성분 및 상표를 확인하고 이후 유럽 위원회가 관리하는 포털사이트에 화장품을 신고해야 합니다.

책임자 선정

책임자의 역할은 한국 유통업자가 판매하는 화장품이 화장품 규정에 기반하는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체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상품 서류를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특히 상품의 안전성에 대한 보고서를 갱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예를 들어서 고객이나 화장품 시장 규제 기관(폴란드 같은 경우 국가 위생검사청: Państwowa Inspekcja Sanitarna)이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경우에도 가장 먼저 그런 신호를 받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책임자로 지속적으로 유럽연합 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선정될 수 있으며 또는 유럽연합 내에 등록된 법인(회사)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책임자를 선정하면 서 B사는 이전에 유럽연합 시장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폴란드에서 화장품

을 판매하는데 적용되는 법규를 잘 모르는 회사이므로, 책임자를 선택하는 주체가 관련 경험이 있으며, 특히 화장품에 대한 법규를 잘 알고 있는 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유통업자와 귀사한 선정된 책임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양당사자의 의무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효율적인 연락 방식을 정하고 계약 기간 및 양당사자가 정한 계약 종료 이후 기간에 기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품 성분 확인

허용된 화장품 성분에 대한 한국과 폴란드의 법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고객에게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할 화장품의 성분은 특정한 재질의 사용 제한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성분 목록에는 유럽연합법이 금지한 성분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판매금지 성분 목록은 화장품 규정 부록 II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 목록은 특히 크리클로초산과 염제, 메톡시아세트산 또는 석유 유도체를 포함한 약 1,300개의 재질을 포함합니다. 더불어 특정한 성분의 경우, 오직 최대 수치와 권장하는 예방 조치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아주 특정한 종류의 화장품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름알데히드는 손톱 강화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분을 사용하는 목적이 상품에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함인 아니며 본 성분의 농도

가 5%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화장품에 이 성분이 함유될 경우에는 상표에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되었다는 정보와 사용 시 피부를 기름이나 오일로 보호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보가 기입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착색제,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또는 발암성 물질과 나노 재료 사용도 제한됩니다.

상품의 폴란드 상표 준비

폴란드 고객에게 보낼 화장품은 화장품 규정에 따라서 상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화장품 규정은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과 언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합니다. 화장품 포장에는 책임자의 성함 또는 명칭, 용량, 유통기간, 함유량, 제조 번호 그리고 필요할 경우 상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폴란드어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단 함유량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라틴어 명칭을 사용하여 표시해도 됩니다.

화장품 신고 포털사이트(유럽 화장품 승인절차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화장품 등록 한국 유통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EU 화장품 신고 포털사이트에 신고해야 합니다. 화장품 신고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https://ec.europa.eu/growth/sectors/cosmetics/cpnp_pl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장품 판매라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B사는 폴란드어 버전의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고객을 목적으

로 화장품 오퍼를 포함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때, 한국 유통업자는 온라인 쇼핑물 이용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용약관은 특히 온라인 판매,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보호 법규와 원거리 서비스 제공 규칙에 근거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매약관

이용약관은 잠재적인 고객에게 온라인 쇼핑물을 통한 화장품 판매 조건과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당사자의 권한과 의무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판매약관은 특히 주문 절차, 상품 배송 및 결제 방식을 정해야 하고 상품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서 배송비는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한다는 정보를 제시해야 하며 상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상품을 받았을 경우에 주어지는 소비자의 권한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온라인 쇼핑물의 이용약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없이 제대로 적용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물에 주문을 하게 될 경우 성, 이름, 주소와 같은 법규를 기반으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어떤 주체가 개인정보를 관리하며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에게는 어떠한 권한이 주어지는지(예: 잘못 된 정보에 대한 수정 요청 및 개인정보 삭제 요청)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한국으로 전달될 것임으로 소비자는化妆품을 주문하면서 온

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뿐만 아니라 본인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전달하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는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것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으로 인한 기간에만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가 쿠키 파일을 포함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통보해야 하며 적용되는 쿠키 파일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권한

온라인 쇼핑몰 고객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B사는 에 폴란드 법규에 따라서 소비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고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 소비자 권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B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권한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안에 사유 없이(포장 및 배송비를 제외)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소비자에게 주어진 계약 취소 권한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거나 주문을 한 이후 고객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에게 이 권한에 대해서 적합하게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취소 권한 기간은 자동적으로 12개월로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계약 취소 권한에 대한 정보는 취소 양식과 같이 제공돼야 합니다. 소비자는 유통업자에게 계약 취소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본 양식을 사용할 수 있고 양식을 기입한 후 유통사업자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는 반품하는 화장을 포장하여 유통사업자가 제시한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유통사업자는 계약 취소 의사와 반품한 상품을 받은 즉시 화장품 값(소비자가 배송비를 지급했을 경우)과 배송비를 환불해야 합니다.



해외투자 TIP

- 화장품을 시장에 도입할 때 적용되는 법규로 인해 화장품 검토를 광범위하게 해야 함으로 (특히 상품 안전 서류 작성, 화장품 성분 분석, 폴란드 상표 준비 그리고 CPNP 신고) 한국 화장품 유통업자는 폴란드 고객에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할 파일럿 화장품 라인을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폴란드에서 상품 판매 실적이 만족스러울 경우 유통업자는 정기적으로 새로운 화장품 라인을 검토하여 폴란드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는 폴란드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한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책임자는 화장품을 시장에 도입하는 데 적용되는 법규를 잘 알아야 하며 화장품 시장에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자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한국 유통업자의 법적 안전성이 달려있습니다. 한국 유통업자와 책임자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온라인 쇼핑몰은 잠재적인 고객에게 제공할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몰의 이용약관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은 주로 소비자이기 때문에 B사는 소비자 권한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화장품 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14일 안에 사유 없이(포장 및 배송비를 제외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판매 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04

Warsaw

폴란드 정리하고 절차 - 그룹 / 개인 정리하고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며, 내부 구조조정 때문에 감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대량해고가 되며, 또 정리하고 인원에 대한 보상금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바르샤바무역관

Marcin Dudarski 변호사, JP Weber 로펌
M.Dudarski@jpweber.com

Adam Małycha 변호사, JP Weber 로펌
A.malycha@jpweber.com

빈찬우 변호사, 한국 데스크 매니저, JP Weber 로펌
M.Bin@jpweber.com

폴란드 정리하고 절차규정에 따르면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계약 파기가 진행될 때, 회사가 최소 20명의 피고용인을 보유하고, 피고용인이 해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고용주의 필요 심지어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파기도 피고용주의 필요에 의하지 않으며, 기간이 30일이 넘지 않았을 경우이며, 추가적으로 해고는 다음의 경우 가능합니다.

- 1) 100명 미만 규모의 회사의 경우 피고용인 중 10명
- 2)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회사의 피고용인의 10%
- 3) 300명 이상의 규모 회사의 경우 피고용인을 보유한 회사인 경우 30명

상기 피고용인에 대한 인원수에 상호합의에 의한 해고가 5명 이상일 때 대량 해고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위의 절차는 정리해고법에 따른 대량해고로 2가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이며, 대량 해고(Group Redundancy)가 가진 리스크는 기간이 길며, 근로 감독관에 통지, 부정적 미디어, 노동 조합과의 협상 등의 절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진행될 경우 가장 빠르게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량 해고의 과정에서 고용관계의 파기와 관련된 피고용인들은 하기의 비용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 2년 미만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 1달의 급여
- 2) 2년에서 8년의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 2달의 급여
- 3) 8년 이상의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 3달의 급여

대량 해고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30일 이내에 고용인이 해지하는

피고용인의 숫자입니다. 동 기간의 계산의 시작은 계약이 해지될 첫 번째 피고용인에게 통지서 취득 일자입니다. 즉, 30일을 계산하는데, 계약해지 일자가 아닌, 최초의 통지 일자입니다.

정리해고법에 따른 두 번째 해고 방안은 “개인 해고 절차”입니다. 정리해고법 10조에 따르면, 대량 해고의 적용은 고용주의 필요에 의해, 최소 20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 고용의 사유가 피고용인에 의하지 않고, 오직 고용인의 필요에 의한 진행이며(상호 합의에 의한 파기인 경우라도) 그리고 대량 해고가 30일 이내이고, 상기에서 정의한 대량 해고보다 작은 수일 경우에만 따릅니다.

“개인 해고 절차”와 “대량 해고”는 하나 더 유사점이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 공통으로 보상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몇 달치 급여로 결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폴란드 노동법은 노무 계약파기를 진행할 경우 근거를 밝혀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노무 계약 파기 책임에 대한 의무는 노무 계약이 “indefinite period of time” 즉 무한 기간 계약일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기간이 있을 경우 계약파기에 대한 방법이 서면일 필요는 없었으나, 2016년 노동법 개정으로 유한 기간 계약을 맺는 것도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무기한 고용 계약의 해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주는 규칙은 매우 강력합니다(현재 해고에 대한 적절한 방법의 형태를 설명하는 적어도 300건의 대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된 개념트는 “계약을 해지하는 구체적인 원인은 고용주가 사실 묘사 그리고 업무상 혹은 상황상 피고용인 자체 혹은 그의 행동을 묘사해야 합니다.”(폴란드 대법원 판결문/ PKN 47/99)

개별 해고, 혹은 집단 해고 모두 특정 형식을 요구합니다. 특히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일부만을 해고할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임의 근거(무기한 고용 계약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해임과 관련하여 피고용인을 선택하는 공정한 기준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최신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기준은 직원에게 제공된 해고에 대한 서면 근거로 포함됩니다. 기준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차별적인 기준을 제공하거나 고용주가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향후 해고된 피고용인은 항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에 대한 성공은 손해 배상에 대한 권리 혹은 이전 직위로 복직될 권리를 의미합니다. 해고가 경제적, 내부 구조조정상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경우(해고의 진정한 이유는 고용주에게만 귀속됩니다) 직원은 보상금(상기에 명시한 기간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1. 고용주의 필요로 해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보상이 진행됩니다.
2. Defined Period Time계약(비정규직 계약)의 경우 해고 시 해고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쉽게 되지만, 2016년 이후 조건이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3. 근속 연수에 따라 보상 금액도 달라집니다.

상담사례

05

Warsaw

폴란드 SAF-T 제도 소개 (Standard Audit File-Tax)



A사는 폴란드에 현지법인을 운영 중인 회사입니다. 최근 폴란드 세무당국의 성향과 새로 도입된 SAF-T 제도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바르샤바무역관

정진오 회계사 삼일회계법인(Samil PwC)

jin-oh.x.chung@pl.pwc.com

2015년 12월 폴란드 정부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일괄적인 자료제출을 목적으로 하는 “Standard Audit File for Tax (SAF-T) in Poland (Jednolity Plik Kontrolny-JPK)” 도입을 공표하였고, 2016년 7월부터 회사 규모별 순차적인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SAF-T란 폴란드 Tax Office의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에 있어 정부가 규정한 통일된 양식의 전산화된 데이터로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의 각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각 회사별 양식을 통해 추출 및 제출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으며 세무조사관의 제출요청 이후 일정기간(최대 7영업일로 예상) 내에 정해진 양식(xml 파일형태)으로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이 요구되는 정보는 회사운영과 관련한 대부분의 재무/세무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류 및 은행계좌와 관련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6년 3월 정부에서 공표한 표준 Structure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일부항목 제외)

Structure 1 - Accounting records

Structure 2 - Bank statement

Structure 3 - Warehouse

Structure 4 - VAT register

Structure 5 - Invoices

Structure 6 - Tax register of revenues and expenses

Structure 7 - Evidence of revenue

회사별 도입시기에 있어서는 'Large Enterprise'에 해당할 경우 2016년 7월부터 도입대상이며, 기타 회사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도입해야 합니다. 이때 'Large Enterprise'의 기준은 1) 인원이 250명 이상이거나 2) 총자산 43M EUR & 총매출액 50M EUR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2016년 3월 발표 당시 SAF-T는 각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을 시 제출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기간별로 준비 및 제출이 의무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전의 자료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규정이기때, 각 회사에서는 2016년 7월까지 도입이 요구되지만 사실상 준비에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일반적으로 2016년에 해당 연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2016년 7월분 부가가치세신고부터 SAF-T파일 중 VAT부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현재 최소한 VAT와 관련한 데이터는 각 회사에서 사전 준비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Large Enterprise'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도 2017년 1월분 부가가치세신고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추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폴란드 세무당국의 강경한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기타부문에 있어서도 기간별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추가변경 가능하기에 각 회사에서는 보다 신속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SAF-T를 준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 1) 회사의 시스템에 해당 파일이 추출 가능한 프로그램 구비
- 2) 자문사 등 제3기관의 시스템을 통한 추출 모두 가능합니다. SAF-T 관련 규정상 각 회사에 동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전산화된 내부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3기관에 대상 연도에 대한 필요데이터를 전달하고, 동 기관의 시스템을 통해 SAF-T를 준비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모상 1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고려하여, 내부시스템에서 SAF-T가 추출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폴란드 세무규정과 IT 전문가의 협업이 필수로 요구되기에 전문 자문기관과의 상담을 통한 계획수립 및 진행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SAF-T를 요구되는 기간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페널티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및 협조 의무를 위반한 사례에 해당하여 The Polish Fiscal Penal Code에 의거 담당자에게 벌금 또는 기타 일반론에 근거한 제재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관련 규정이 도입되는 과정에 있기에 별도의 강도 높은 페널티규정이 신설 또는 과세당국의 내부적 지침에 의해 부과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2016년 11월 현재 사전준비를 통해 규정에 맞게 이행 중인 회사도 있지

만 아직 도입과정에 있는 회사도 존재합니다. 제도의 도입 초반단계인 만큼 아직 미이행 회사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되었다는 소식은 없었지만, 최근 폴란드 과세당국의 추세를 감안할 경우 각 회사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외투자 TIP

SAF-T의 경우 회계/세무/물류 등 운영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적용대상인 만큼,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기업의 경우 본사의 시스템을 해외법인에 그대로 도입한 경우가 많기에 본사 IT부문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규정 및 적용에 있어 언어적 문제 및 각 부문별 자료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행이 필요하기에 현지 전문가의 지원을 통한 계획수립 및 진행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PHILIPPINES

필리핀



상담사례

01

Manila

인력 알선업의 진출



상담내용

B사는 필리핀에 진출하여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려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송출인력 대상은 주로 가정부나 운전사 혹은 건설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인력송출업의 경우 필리핀에 자회사, 법인 등을 설립할 때 지분제한이 있는 업종으로 사업목적을 적당히 포장하여 인터넷상에서 인력을 중개하는 일종의 편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마닐라무역관

박종율 공인회계사

edwardjong@hanmail.net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필리핀 인구는 2015년 기준 1억 50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1억 2,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 1억 명 돌파는 국가의 국력을 정하는 중요한 잣대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재화와 용역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해외에서 달러벌이를 하는 해외근로자들과 소위 해외 인력송출업은 필리핀의 중요한 수익창출기반으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이면에는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언어구사 능력이 주변국가에 비해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이나 노동임금 기준으로 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인구의 약 10%에 해당되는 1,000만 명 이상이 해외로 나가 각 지역에서 확보한 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젊은 세대들에게는 꿈이자 모두가 추구하는 바로 국제선원 고용 인력구조를 살펴보다도 35~40%가 필리핀 선원들로 채워질 만큼 국가소득 창출의 막대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산업 현장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도 많은데, 인력소개업 및 알선과정은 각종 불법 및 편법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 역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 준수는 물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력중개업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법상 외국인의 지분한도는 25%(개인모집 Private Recruitment, Whether For Local Or Overseas Employment)로 필리핀 내에서 인력알선을 하든 해외로 인력송출을 하든 지분투자 제한 범위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인력사업과 관련한 불법 활동과 관련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인데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소개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대부분은 노동부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의 계산이 취업을 미끼로 내세운 알선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불법 영업행위(노동부 등 관련 부처/기관으로부터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킬 라이선스 미취득)로 말미암아 취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기재 혹은 홍보, 선전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갈취한 불법 알선업자들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취업과 관련해서는 중개알선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지에 도착했을 때 막상 계약내용과는 상반된 근로조건과 부당한 대우로 인한 후유증 등이 있다. 또한 고소득을 미끼로 사실상의 인신매매나 다름없는 노예계약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알선업체들도 발견되는 등,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업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형법 315조 에스타파(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은 물론 실형까지 살 수 있으며 노동법 제 38조, 39조에 따라 3명 이상의 취업알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고 중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3명 이상은 대규모 불법 모집행위(Illegal Recruitment In Large

Scale)로 간주되고 국가 경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범죄로서 죄를 엄중히 물었던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중개 혹은 알선행위는 필리핀 내에서도 수백 개의 알선업체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 상호 간 사업인허가 교환, 합병, 인수, 면허 대여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산업인력 등의 해외송출업과 맞물려 거대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외국인들이 진출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분야임에는 분명합니다.



해외투자 TIP

어느 국가나 해당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수입원으로서 이권다툼이 심해 상당한 준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알선/해외송출업과 같이 외국인 경영에 대한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는 업종의 경우 이러한 점이 두드러짐을 참고하고, B사의 경우에는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현지 협력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사례

02

Manila

비거주 외국인 고용



필리핀 세부에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D사는 한국 모기업으로부터 파견된 엔지니어 및 일부 관리직 직원들이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취업비자 없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현지 이민국 경찰이 들이닥쳐 파견 직원 일부를 불법취업행위로 긴급체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을 의뢰해 왔습니다.

마닐라무역관

박종율 공인회계사

edwardjong@hanmail.net

거주자(Resident)라 함은 필리핀 이민국이 정한 적법한 거주 요건을 갖춰 영주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자(제한 기관과 상관없는 비자를 취득한 자, 이민 형식의 비자를 취득한 자, 특별법에 따른 거주 비자를 소지한 자 등)로서 영주권(Permanent Resident Status)을 확보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외국인에 한해 시민권(Citizenship)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리핀 내에 특정 조건이 만료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거주자(Non-Resident)라 함은 필리핀 이외의 특정지역에 거소를 두고 있어 필리핀 당국이 영구적인 체류를 보장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가리키며 더불어 재판관할권 및 세금납부, 출입국 심사 등에 있어서 거주자와 확연히 구별되는 법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필리핀 당국에서는 외국인이 현지에서 고용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업을 갖는 모든 외국인에게는 별도로 노동부에서 Alien Employment Permit(외국인 노동허가서)를 발부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노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허가서는 비자와는 별개의 개념으로 노동에 대한 허가입니다. 일정 기간에 대한 체류 허가는 법무부 산하 이민국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거주외국인에 한해서는 별도로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과거 NLRC(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지역노동청)가 내린 노동분쟁 관련 판결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223 SCRA 341 자료발췌)

이러한 노동허가 취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교목적을 가진 자, 투자비자, 은퇴비자 그리고 각 공기업 혹은 사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자 및 자문요원 등이 해당되며, 필리핀과의 상호조약이나 협정에 의해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판명된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중에서도 이러한 고용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파견 외교관 및 외국정부 공직자 그리고 필리핀이 가입되어 있는 U.N. 및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및 배우자들, 그 외 필리핀 내에 내국법인의 이사회의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단지 의결권만 가지고 있을 뿐 해당법인의 경영진에서 어떠한 별도의 직위를 가지지 않는 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법이나 의회에서 고용허가서 없이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인준한 외국인들 역시 해당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용허가서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재직 중에 노동부에 사전 신고 없이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기존 직장에서의 고용계약이 완료되었음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신규 직장에서의 고용계약을 토대로 노동 허가를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현재 가진 ACR I-Card(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dentity Card : 필리핀 외국인 체류 증명서) 그리고 여권 등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기존 직장에서 사직했습니다는 공문을 첨부하여 기존 비자가 취소된 후 새롭게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 고용자들이 직장 이직 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새로 이 비자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용주 및 사측이 고용 허가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들이 법적 책임을 받게 되고, 해당 외국인 노동자는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추방 절차를 밟는 동시에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노동허가서를 획득한 외국인이 노동할 수 있는 기간은 최고 3년이며 재직기간 노동법 준수, 소득세 신고 등 계약기간 재연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노동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필리핀에서 외국인이라는 지위로 적절한 체류비자를 가지고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개인 사정이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노동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 또한 순수한 노동이 목적이 아니라 자녀들의 조기교육을 위해 체류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발급받기를 희망한 나머지 일부가 편법 혹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상담사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적절한 비자 및 노동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사례

03

Manila

파트너십과 합작투자 (필리핀 진출)



상담내용

P사는 필리핀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합작투자 (Joint Venture) 혹은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추진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필리핀 현지기업과 파트너십이나 조인트벤처를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투자법상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는 지분 구조에 있어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조인트벤처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제 문제나 수익분배 등의 애로사항을 토로하였습니다.

마닐라무역관

박종율 공인회계사

edwardjong@hanmail.net

필리핀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흔히들 파트너십, 단독투자, 합작투자(Joint Venture),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게 됩니다.

파트너십이란, 국가마다 다소 체계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일정한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사업을 수행하되, 개인별로 제3자에 대한 채권 및 채무에 대해 한정 혹은 무한정 책임을 갖고 수익과 손실을 배분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은 세금 부문에서 이득인 부분이 있어 법인 형태보다 선호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파트너십의 수입이 각각의 사업 참여자, 즉 파트너에 분배된 후 그 부분에 대해 소득세가 신고 혹은 부과되기 때문이다.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주주들이 제3자에 대한 채무에 책임이 없는 대신 파트너십은 일정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 두드러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작투자는 파트너십의 일종으로 둘 이상의 당사자가 특정 사업 혹은 경제활동을 공동지배하며 수행하기 위해 만든 계약 구성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공동지배라 함은 계약합의사항에 의거 사업 혹은 경제활동에 대한 지배를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합작투자에서 중대한 재무정책과 영업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는 참여자 전체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합작투자의 전체적인 특징은 첫째, 참여자가 계약합의사항의 구속을 받고 둘째, 계약합의사항에 기반하여 공동지배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계약합의사항은 참여자 간의 계약이나 회의록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합작투자의 정관 혹은 내규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합의사항은 형태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문서화되며 공통된 내용을 보면, 활동, 존속기간 및 보고의무사항, 이사회 또는 이와 동등한 지배기구의 구성 및 참여자의

투표권, 참여자의 출자, 산출물, 수익, 비용 또는 운영성과에 대한 참여자 간의 배분 등이 추가됩니다.

컨소시엄은 본래 국영기업, 공공사업체, 대형민간기업,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용자를 위해 시중은행 혹은 다자개발은행 등이 차관단이 되어 국제금융업무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금융용어였으나 최근에는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로 복수기업이 이에 공동 참여하는 경우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 주로 복수의 금융기관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와 관계된다고 보면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은 법인이 타법인 혹은 개인과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특별법에 따라 타법인 혹은 개인과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 또한 합작의 경우 새로운 신설법인이나 파트너십처럼 구성, 운영되지 않는 한에서 굳이 필리핀 기업관리감독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합작투자는 파트너십의 일종으로 구성되거나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혹은 외국법인과외의 파트너십이냐에 따라 그 허가 및 출자관계가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역시 최대 관심사는 외국법인과 필리핀 내국법인 혹은 필리핀 시민권자 간 조인트벤처, 파트너십이 만들어질 경우 허용 여부가 아닐까 궁금해질 것입니다. 필리핀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이 미개척업종(Pioneer Status)으로 인정받는 경제개발 프로젝트 공사의 경우 파트너십 구성원들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및 의무에 관해서 상호 개별 혹은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시피, 오직 자연인(필리핀 시민권자)만이 파트너십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인이 파트너십에 참여하려면 우선 해당법인들이 채권채무에 대한 개별 및 연대책임 규정을 합작계약(Partnership Agreement)에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한 법인들의 정관이나 내규에 해당법인이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업종에 대해 파트너십을 구성하기로 하는 내용들이 추가되어야 하며, 특히 외국법인이 파트너로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하자가 없으며 필리핀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법인 파트너들은 Partnership Agreement에 참여 법인 간 구성관계에 대해서 조건들을 삽입하고 SEC에서 파트너십 자체가 법인 파트너들과는 독립적인 법적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출자 및 해산과 관련한 모든 의무에 있어서 한 정 또는 무한정 책임이 있습니다.



해외투자 TIP

A사는 필리핀 정부조달법상 입찰제도, 외국인투자법상 외국인지분제한, 해당 인프라 프로젝트의 성격(차관공사, 민자공사, Build-Operate-Transfer 공사)에 대한 정확한 타당성 조사 후 필리핀 현지법인과 합작투자를 구성기로 하고 각종 수반되는 세제혜택이나 수익의 해외송금 등에 대한 상담을 폭넓게 상담, 이해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사례

04

Manila

주식회사법상 직위 검직



상담내용

한국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C사는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장과 하급 관리직원 2명을 파견, 현지법인의 이사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현지 고용직원과 업무상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주식회사법상 사장과 Corporate Secretary(일종의 내부감사인 역할)는 검직할 수 없다는 사유로 노동청 및 기업관리감독위원회(SEC)에 내부고발하는 사건이 발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닐라무역관

박종율 공인회계사

edwardjong@hanmail.net

C사의 경우 필리핀의 상법상 법인의 경영진 구성과 관련 직위를 매년 기업관리감독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변경, 신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법인의 임원 중 가장 직위가 높은 이를 Chief Executive Officer(CEO)라 칭하는데 President가 이 직위에 해당되며,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 중에 대표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CEO는 이사회를 주관하거나 주주총회 의장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경영을 총괄하는 의사결정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CEO는 이사회 및 정관 혹은 내규에서 규정한 일정한 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외국인이 CEO 역할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 제재는 없다. 물론 일부 금융 및 보험 등의 업종은 예외에 해당됩니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에는 President가 반드시 해당법인의 이사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리고 다른 직위를 겸직할 수 있으나 Corporate Secretary나 Treasurer(회계)는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President의 권한은 회사의 정관이나 내규에서 정한 틀에 따라 제한되는데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이사들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 활동의 범위 안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감독권과 지배권, 제3자에 대한 계약권 등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제3자 역시 President가 해당법인

의 영업 지배권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계약에 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간혹 President가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사회 동의 없이 제3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 회사에는 연대책임이 없다는 것이 필리핀 주식회사법상의 일반적인 판례이며, President가 이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눈여겨볼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President의 직권 등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필리핀의 주식회사법상 President 못지않게 중요한 직위가 있는데 이를 Corporate Secretary라 부릅니다. 이는 내부감사인 혹은 관리감사임원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회사의 모든 서류 및 기록물을 관리하고 내부적으로는 이사회나 주주총회 또는 주주들의 변동 상황 등에 대한 증인 및 관리감독자로서 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는 제3자와의 계약 및 회사자산의 양도·양수 및 처분 혹은 계약관계 등에 있어서 중요한 서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President는 겸직할 수 없는 직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필리핀 법인에서는 필리핀 국적자이자 거주자인 사람만이 될 수 있다(필리핀 외국인 투자법상 60% 이상 외국인 혹은 외국투자법인이 주식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업종은 제외). 그러나 주주이거나 이사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직위의 책무를 보면 해당법인 내의 모든 서류, 장부, 기록물 등은 물론, 주주총회, 이사회결의, 주주변경명부 혹은 필요한 모든 문서를 보관하고 서명하는 등 법인의 내외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자라는 것

입니다.

단편적으로 주주나 이사들에게 보내는 공문발송은 물론 소집장 그리고 기업 내에서 발생한 각종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회의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하는 등 오히려 기업의 비밀유지 업무 측면에서는 다른 어느 직위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Treasurer라는 직위가 있는데 일종의 재무담당임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법상 필리핀 거주자로만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40% 이하의 외국인 지분을 가진 내국법인들에 한해서는 별도로 SEC 시행령에 의해 내국인들을 그 직위에 선임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도 하며 실무에서는 외국인을 선임해도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현지 파트너 주주들과 직위 관련 분쟁이 발생 시에는 SEC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떨어집니다.



해외투자 TIP

필리핀의 상법상(주식회사법) 법인을 구성하는 이사진 및 경영진의 직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경영상 의사결정은 물론 종업원 및 제3의 채권자 혹은 경쟁회사와 법적분쟁이 발생할 때 기존의 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의사결정이 원천 무효가 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상담사례

05

Manila

의결권 위임(필리핀 법인)



상담내용

S사는 한국에서 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필리핀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데, 진출초기에 필리핀 파트너의 도움을 받은 결과로 주식지분의 5% 정도가 필리핀인 XX 씨에게 스탁 옵션 개념으로 허용된 바, 5년 정도 생산활동 후 해당 스탁옵션이 자본금으로 편입되었는데, XX 씨는 회사에 경영참여를 본격적으로 원했으나 경영진이 이를 허용하지 않자, 그동안 회사내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위조된 위임장으로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며, 이를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마닐라무역관

박종율 공인회계사

edwardjong@hanmail.net

위임장이란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행하는 문서로서 주식회사의 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위임장은 주식을 소유한 자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타인을 대리인(Proxy Holder)으로 선임하여 본인이 가진 발언권과 의결권(Proxy Voting) 등을 대리행사 할 수 있는 문서로 의결권 위임장이라 합니다.

주주총회의 위임장 행사는 총회에 필요한 법정 과반정족수의 요건을 충족시키기도 하지만 의결권 확보(Voting Control)를 통해 경영지배권을 유지(Management Control)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위임권에 의한 투표권은 개인주주뿐 아니라 의결권신탁계약(Voting Trust Agreements)에 의해서나 공동주식소유권(Joint Ownership of Stock)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신탁에 관한 필리핀 주식회사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기간(최고 5년 내) 동안 개인이나 신탁기관을 정하여(흔히 피신탁자 혹은 수탁자라 함) 1인 이상의 주주들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해당법인의 주식들을 위탁 혹은 위임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결권신탁계약(Voting Trust Agreements)은 주식신탁자와 주식수탁자 간 체결되어 해당 계약서를 소속법인과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보장됩니다. 제출하지 않는 신탁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권리위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위임장의 제출절차를 살펴봅시다. 우선 주식의 소유자가 적절한 위임장 서식을 만들어 본인의 성명과 소유한 주식 수, 안건에 대한 투표권과 발언권 등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서명하면 위임장이 완성되며 이를 해당법인의 Corporate Secretary(내부감사역)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구두 형식의 위임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며 위임 권한은 포괄적일 수도,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총회 안건 및 기타 총회에서 추가되는 안건에 대해서 찬/부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이 작성되어 있다면 “포괄적 위임장(General Proxy)”이 되는 것이며,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작성되었다면 “한정적 위임장(Limited Proxy)”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포괄적 위임장이라 하더라도 해당회사의 자본 구조나 간격을 바꿀 수 있는 사항, 인수합병 등의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지 않으며, 이는 한정적 위임장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야만 효력이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속적 위임장(Continuing Proxy)”이란 게 있는데 이는 특정한 기간 동안 주주 총회와 관련한 위임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작성된 것으로서 최대 효력기간은 5년이며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면 됩니다. 특정주주들을 포섭하여 집단투표권을 행사하여 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률상 적법하다 할 수 있으나, 이때 위임장을 확보한 대가로 금전적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챙겨주는 행위는 법에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주식회사의 위임장 제도는 다수 주주가 의결권을 1인 또는 다수

에게 양도하고, 수탁자는 그 주주의 일반적 이익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써 기업 활동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해외투자 TIP

필리핀의 교민사회에서는 S사처럼 외국인투자법상 투자의 제한을 받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 간 혹은 현지인들과의 파트너십이나 합작 투자 혹은 명의신탁 등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소규모 영세 업체의 경우에는 위임장 소송과 관련한 사건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구조의 경우에 대주주를 비롯한 몇몇 특수 관계인들이 주주총회 및 회사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로서 일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거나 금전관계로 문제가 엮이게 될 때, 일부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 몰래 회사경영을 제멋대로 운영하거나 의결권 위임장 등 일부 서류를 위조하거나 서명을 날조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송사에 휘말릴 때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2016년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투자상담 CASE STUDY

중국에 합자법인을 설립한 U사

중국 파트너를 물색 중인 J사

중국에 합자공장 설립을 준비 중인 J사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S개발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자법인을 추진 중인 H공사

중국과의 계약 체결로 로열티 수입 얻게 된 S사

인도네시아에 연구법인을 설립한 T사

중국에 설립한 매장을 문제없이 폐쇄하고 싶은 K사

CASE STUDY

중국

—
01

중국에
합자법인을
설립한

U사





까다로운 의료기기 수출 해외 투자로 돌파구를 찾다

수출전문위원 최혜범

해외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따릅니다.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피하려면
국제 계약상 관행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실무에 적용하는 노하우도 필요하지요.
생면부지인 현지 파트너를 대강만 알고 시작한다면
큰 리스크를 떠안고 가야 합니다.



‘국내 시장은 이미 한계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어렵고……’

U사는 치과용 의료기기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영업하면서 남미지역과 러시아에도 소량의 물량을 판매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수출하기 까다로운 품목인데 해외 국가마다 인증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탓이다. 인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다. U사가 그나마 남미와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이 인증 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식 인증 없이 시장을 적극적으로 넓히기란 어려워서 이리저리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대시장 중국은 U사에게 꽤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걸림돌이 많았다.

‘인허가만 평균 4년에 비용도 1억 5천만 원이나 드는데...
게다가 가격 경쟁력 높은 중국 내 경쟁업체들을 무슨 수로

파돌릴 것인가.’

U사는 결국 중국에 있는 현지 업체와 손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트너와 합자법인을 만들어 중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한다면 허가문제도 해결되고 현지 유통망에 대한 정보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U사에게는 지금껏 해외 투자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중국 측 파트너인 H사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검토해줄 전문가가 필요했고 다급한 마음으로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를 찾았다.

‘중국에 있는 H사와 제조판매 합자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초안을 받았는데 우리 쪽에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역투자상담센터의 최혜범 수출전문위원은 U사로부터 받은 계약서 초안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H사가 제안한 계약서 초안에는 U사가 H사에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20%의 지분을 인수하고, 추가적인 투자로 15%의 지분을 가져, 모두 35%의 지분을 획득한다는 내용과 함께 계약서 체결 이후에 U사가 2회에 걸쳐 송금을 한다는 항목이 들어 있었다.

‘계약서만 주고받아 계약을 체결한 뒤 15%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송금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법인 설립이 안 될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이나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계약서 초안에는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의 3배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경제적 손실의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였다. 계약서 초안 검토를 마친 수출전문위원은 U사에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H사의 역할과 책임 부분을 추가하고, 다른 조항들도 보다 명료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으로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재기관을 추가하고, 당사자 간에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영어 버전이 우선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해외 투자에는 여러 리스크가 따릅니다.

H사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혜범 위원은 수출전문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H사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U사에게 무역보험공사의 신용조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출전문위원의 자문으로 현금 투자의 위험성을 알게 된 U사는 애초에 기술 제공과 현금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려던 방식에서 기술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자법인 설립의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파트너인 H사는 구두로 언급했던 회사 상황과 재무제표에 명시된 내용이 달랐는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어 현금을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되었다. 수출전문위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U사는 H사와의 합자법인 설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H사는 U사의 기술

이전 대가로 지분 20%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현재 U사 직원이 중국 현지
에 상주하고 있는 상태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중국 계약 관련으로 찾아뵈었던 U사 김 이사입니다. 위원님
덕분에 지난주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무사히 계약을 마쳤습니다.
제가 바로 중국을 가게 돼서 찾아뵙지는 못하지만 메일로나마 감사
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뵈실 때까지 건강하세요.’

인증 절차와 비용, 가격 경쟁력 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던 U사는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자법인을 설립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 내 허
가 문제인데, 현지 파트너를 통해 다른 아이템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파트너와의 관계는 중국 내 유
통망을 파악하는 데도 효과적이고, 현지의 생산설비나 원재료 등에 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U사는 H사와 적극적인 관계를 이어가면서 중국
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높여 중국시장에서 판매를 늘려나갈 계획이
다.

‘U사가 성공적으로 합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신중한 검토
와 결단의 결과라고 봅니다. 의욕이 앞선 해외 투자는 상당히 위험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성을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합니다.’

해외 투자는 U사와 같은 업체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의욕이 앞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파트너가 신뢰할 만한 업체인지 면밀히 파악해야 하고, 해외 투자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국제 계약상 관행과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을 두루 익히려면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첫 해외 투자를 진행하면서 귀중한 실전 경험을 쌓은 U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밀어붙이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KOTRA가 지니고 있는 풍부한 시장 정보와 제도적인 지원 장치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많은 리스크에 대비해나간다는 생각이다.



CASE ADVICE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자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는 의욕이 앞서다보면 신중함을 잃은 채 일단 일을 벌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수습하려 동분서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게 되면 비용도 시간도 낭비되는 것이니 중소기업에겐 큰 타격을 주게 되지요. KOTRA의 무역투자상담센터에는 경험 많은 수출전문위원들이 있어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중국

02

중국 파트너를
물색 중인

J사





신뢰라는 이름의 바이어를 찾아요

수출전문위원 이현찬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경우라도
무역사기나 투자사기의 위험은 늘 존재합니다.
현지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수출과 투자에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국 중경의 B구에 있는 K사입니다. B구 내에서는 위생허가 신청만 해도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귀사의 화장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습니다.’

자연주의 화장품 전문업체인 J화장품은 얼마 전 중국에 있는 K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중국은 화장품 위생허가 없이는 판매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K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 시장에 제품을 내다 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J화장품 K대표는 곧바로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었다.

‘중국 B구에서도 위생허가가 있어야만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의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K대표는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중국 위생허가에 대한 KOTRA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는 다시금 희망을 얻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K대표는 KOTRA 본사를 직접 방문해 K사가 보내온 수권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수권서는 K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너무 일방적으로 담고 있네요. 수정해서 제의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KOTRA는 또 화장품 위생허가의 재증 책임회사를 K사에게 맡기려는 K대표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권유했습니다.

K대표가 이날 KOTRA를 찾은 것은 K사 때문만이 아니었다. 조선족 지인을 통해 중국의 또 다른 업체인 T사가 제의를 해왔는데 그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하남성 A시에 있는 T사로부터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 회사가 소유한 건물에 한국관을 열어서 우리 회사 화장품 판매는 물론이고 외식업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의 기업정보공시 사이트를 열어 조회해본 결과 T사는 탕음현 공안국으로부터 전체주권 동결공시가 되어 있었다.

‘T사는 좀 더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일단 그쪽에서 제안한 사업은 보류하는 것이 좋겠어요.’

며칠이 지나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로 다시 K대표의 전화가 걸려왔다.

‘K사가 소개해준 홍콩 업체로부터 어제 샘플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샘플을 보내주면 대리상들에게 주문을 받아 본 주문을 준다고요. 홍콩에 화장품을 수출할 경우 별도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홍콩은 화장품 판매에 위생허가가 필요치 않고 일반 무역으로 수출이 가능하기에 J화장품이 제품을 수출하는 데 문제될 것이 없었다. 다만 대금 결재를 후불T/T로 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좋을 게 없었다. KOTRA는 K대표에게 홍콩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주면서 나중에 본 주문을 받을 때는 대금 결제조건에 유의하도록 조언해주었다.

이로써 J화장품은 홍콩에 약 20종 되는 화장품 샘플을 초도 물량으로 공급했습니다. 약 2천 달러 가량의 적은 규모지만 본 주문이 들어온다면 수출물량은 늘어날 것이다.

J화장품을 향한 중국 업체들의 관심은 이후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저우에 있는 C업체라는데, 자기들이 화장품 위생허가를 받아서 직접 매장에 판매하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중 책임회사를 중국 바이어 업체에 맡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귀사의 중국 현지 법인을 세워서 하거나 아니면 KTR에 대행을 맡기십시오.’

그 뒤로 다시 며칠이 흘러, K대표는 그동안 접촉을 해왔거나 제의를 해온 중국 및 홍콩 업체들의 관련 자료를 모아 KOTRA로 이메일을 보냈다. 많은 업체들 가운데 믿을 만한 회사는 어느 곳인지 조회를 요청한 것이다.

KOTRA는 각각의 법인을 조회해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하남성에 소재한 기업들은 자본금만 보자면 제법 규모가 있어 보이
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금 납입정보가 없는 깡통법인입니다. 이들
과는 접촉을 보류해야 해요. K사나 홍콩 업체 등은 믿을 만하니 K
사와는 수권조항에 대해 협의를 계속하시고, 홍콩은 본 주문이 들
어오면 제품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접촉해오는 바이어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J화장품이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이며 경쟁력을 가졌다는 것. 회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기쁨에 겨워 할 일임이 분명하지만, 그 기쁨을 노리는 무역사기
꾼 혹은 투자사기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험은 늘 어디에
나 존재하는 법. 각각의 바이어에 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한 검증이 너무나
도 중요하다.



CASE ADVICE

과연 믿을 만한 바이어일까?

거래를 요구해오는 해외 바이어가 믿을 만한 업체인지 철저한 확인
이 필요합니다. KOTRA는 객관적인 정보와 해외 현지 무역관의 네
트워크를 이용해 해외 바이어들의 신용도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중국

—
03

중국에 합자공장
설립을 준비 중인

J사





성공적인 기술투자를 위한 두 가지 전략

수출전문위원 김건우

국내에서 내실 있는 실적을 쌓다보면
뜻하지 않은 데서 해외 진출의 기회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첫 출발에는 여러 난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때 전문가의 손을 잡고 체계적으로 나아간다면
어려운 장애물들을 훨씬 수월하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뜻밖의 합자회사 설립 제안! 막막하고 부담스럽지만 농치고 싶지 않은 기회인 것만은 분명하다.’

충북 D시에 위치한 J사는 건축 내장재인 불연 판재를 생산하는 회사다.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오느라 해외 시장 진출은 생각도 못하다가 올해 초 중국의 Y사로부터 ‘합자회사를 설립해 중국 시장에 진출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Y사는 중국에서 소화기와 각종 불연 재료를 생산하고 있지만 아직 불연 판재까지는 생산하지 않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해외 진출을 놓고 J사는 걱정이 앞섰다. 합자회사 설립부터 운영까지, 기본적인 지식도 없고 실무 노하우도 전혀 없는 상태다 보니 Y사 말만 믿고 일을 진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컸다. 하지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수야 없지 않은가. 고심 끝에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를 찾아 중국 투자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250만 위안 상당의 설비를 현물 출자하고, Y사는 260만 위안의 현금 출자를 한 뒤 합자회사를 설립해 49 대 51 비율로 지분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더군요.’

KOTRA의 김건우 수출전문위원은 J사 담당자로부터 Y사가 제안한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파악했습니다. Y사는 중국 강소성 O시에 위치한 천정 소화기재 공장 옆에다, 한국에서 설비를 들여와 공장을 세우고 불연

판재 제품을 생산해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한국에도 수출하자는 의도로 합자공장을 계획했습니다.

‘현물 출자 금액은 두 회사가 합의한 250만 위안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중국은 공식적으로 현물 출자를 지분으로 인정해주기는 하지만, 현물 출자 금액이 양자가 합의한 금액 그대로 정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현물이 중국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설비가 중고기계이거나 통관 신고 금액이 과다하다 판단되면 상품 검사국에서 신고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통관 금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합자 회사의 이익금 회수에도 변수가 많아요. 판매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이익 배당금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합자 회사의 이익금 회수는 연말 결산 이후에나 가능한데, 이때 이익금은 세금과 제반 금융비용을 제외한 순수 이익의 배당금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아 매출이 적을 경우 이것을 핑계로 이익 배당금을 적게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저희가 중국에 합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오직 회사 매출을 늘

리기 위해서인데, 그런 변수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이익 배당금 말고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합자회사에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Royalty)를 받을 수도 있겠죠.’

KOTRA는 J사에게 두 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료를 받는 것이다. 합자회사에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받는데, 초기에는 기본 계약금을 받고 생산 가동한 뒤에는 판매 수량에 따라 러닝로열티(Running Royalty)를 받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었다. 원재료를 한국에서만 공급한다는 점을 이용해 ‘원부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 지속적으로 한국의 투자회사가 공급권을 쥐고 수출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같은 조언을 바탕으로 J사는 합자회사 설립 전에 중한합작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중한합작의향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측의 출자 방법은 현물 출자로 설비 250만 위안 상당의 생산설비를 중국 측에 보낸다. 하지만 세관 검사 시 그 가치가 250만 원 미달 시 중국 측은 설비 실제 가치에 따라 차액을 한국 측에 지급하고, 한국 측은 이 금액을 합작회사의 계좌로 다시 입금해 현금 투자한다.’

‘둘째, 한국 측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대가로 200만 위안을 인정하고 합작회사가 차후 순수익의 10%를 매년 차감하여 한국 측에 지급한다.’

J사는 현재 Y사와의 합자공장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중이다. 계획 없이 갑작스레 찾아온 해외 진출 기회이다 보니 처음엔 당연히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차츰 자신감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합자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라 봅니다. 하지만 출발이 좋은 만큼 J사가 여러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갈 거라 믿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KOTRA의 전문위원은 J사가 중국에 성공적으로 합자공장을 설립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계약과 운영, 세무, 회계 등 다방면에서 실무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전하고 있다.

경험이 값진 이유는 그냥 혹은 대충 해서는 얻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 아닐까. 낯선 해외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중소기업에게 경험이란 자산은 더더욱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에 분명하다.



CASE ADVICE

프로페셔널의 힘

중국은 경제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경제 관련 법령이나 법규의 변경이 빈번합니다. 해외 진출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변수들을 미리 예측해야 하지만 마땅한 문의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기업의 애로입니다.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서는 우리 기업이 쉽게 범하는 실수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제안해 드립니다.

베트남

—
04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한

S개발





글로벌 전진기지 베트남으로!

수출전문위원 박기언

이미 4천 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자리를 잡았지만
베트남을 향한 한국기업의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직접투자가 늘고 있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투자 관련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KOTRA의 역할이 중요함을 절감합니다.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우리 회사도 건설공사 수요가 많은 베트남에
진출해야 하지 않을까?’

경남 C시에 위치한 S개발은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다.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더 이상 내수에만 기댈 수 없어 베트남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베트남은 1992년 한국과의 수교 이후 한국 업체의 진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초기에는 봉제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산업 위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본·기술집약 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단순한 생산기지 역할에서 벗어나 인구 1억인 베트남 내수 시장과 6억이 넘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에 따른 최대 수혜국 등의 매력이 부각되면서 현지 법인을 세워 베트남에 직접 투자하려는 한국기업들이 늘고 있다. 현지 법인 설립부터 운영까지 막힘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S개발은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경험도 지식도 전혀 없습니다. 현지에 지인이 있어서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자료라든가 지인이 자신의 단편적인 경험만 믿고서 전달하는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정보

만 믿고서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지뢰가 매설된 길을 걷는 일처럼 아주 위험하다.

‘검증 안 된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KOTRA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자료와 수출전문위원의 자문을 바탕으로 베트남 진출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직접투자 경험이 풍부한 KOTRA의 박기연 수출전문위원은 검증된 정보와 수많은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S개발에 중요한 조언을 들려주었다. 베트남의 사업 환경, 향후 전망, 놓치기 쉬운 리스크 등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결코 몰라선 안 될 것들이었습니다.

‘법인장이 본사의 등기이사가 아닌 경우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에서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불확실한 정보들을 KOTRA는 하나하나 바로잡아주면서 S개발을 곧은길로 안내했습니다. 1인 유한회사와 2인 이상 유한회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S개발에게 적절한 회사 형태를 선택하도록 하고, 법인장 선정과 관련해서 현지 법규와 실제로 운영되는 관행을 알려 의사결정을 도왔다. 현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

준비에서부터 공증, 외교부 영사 확인, 주한 베트남대사관 인증 등 절차별로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다시 작성하는 한편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

‘2015년 7월 1일 개정 발효된 기업법에 따라 정관자본금 납입기한이 허가 후 90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자본금 송금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돌다리 두드리듯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대비하고 살피며 S개발과 KOTRA는 베트남 현지 법인의 설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설립된 법인이 제대로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KOTRA와 S개발의 파트너십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CASE ADVICE

주관적인 정보에 회돌리지 말자

한국은 베트남의 외국인 직접투자 1위 국가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직접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사업 경험이 없고 내부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일 경우, 베트남 진출을 위한 준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정보에 의존하거나 베트남에 있는 지인 혹은 신뢰성 없는 개인 컨설턴트의 말만 믿다가 낭패를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검증된 정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 후보국 검토 단계부터 정리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KOTRA의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

—
05

사우디아라비아에
합자법인을 추진 중인

H공사





잘 썬 첫 단추, 절반의 성공

수출전문위원 조승희

첫 단추를 잘 꿰면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국내 건설시장이 불황이라 진단시장도 급격한 축소가 불가피한 데…, 지속성장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하려면 해외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하는 길 밖에 없다.’

H공사(이하 공사)는 대한민국의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대표 공기업이다. 각종 발전설비나 송·변전·배전설비, 대형건물 등의 설치공사가 끝나면 전기설비가 신고했던 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철저히 검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되면서 국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안전 진단시장도 자연히 급격하게 축소되었다. 국내만을 바라보고 있기에는 시장 한계가 너무도 명확한 상황. 공사가 지속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해 사업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매우 절실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찾아오듯, 공사에게 돌파구가 되어줄 매력적인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왔다.

‘140여 개에 달하는 변전소 준공시험, 1,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라…, 우선 진행 중인 4개 변전소 준공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사우디아라비아전력청(SEC)에서 계획 중인 프로젝트였다. 공사는 2015년 2월부터 1년 동안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기술력과 사업추진 면에서 적합한 프로젝트인지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고는 2016년 4월 29일, 해당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두 회사가 현지 합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기술과 장비는 공사가 부담하고, 현지 파트너사는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현금 출자해 8월 중 회사설립을 완료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지분율은 각각 50%씩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파트너사와 합자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사우디 시장은 처음인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공사는 중동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해외 사업을 경험해보긴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이었습니다. 위험부담을 줄여가며 사업을 수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직접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를 찾아 상담을 청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비즈니스 환경을 가졌는지 알아야 했고, 법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줄 멘토도 필요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프로젝트 진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멘티업체의 상황을 귀 기울여 들은 조승희 수출전문위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50만 SAR의 자본금만 있으면 외국인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국가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입찰의 경우 현지 업체나 현지 회사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게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인 최소 의무 고용 조건이 있어서 사전에 규정을 파악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 같은 여러 변수들에 대비하려면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외국투자자의 경우 순익 배당소득에 대해 30%의 세금을 붙이는데, 특히 법인세는 외국인 지분율에 대해 20%를 부과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기대이익과 실현이익에 차이가 날 수 있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문구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가며 작성해야 합니다. 작은 문구 하나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을 막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 세계 어느 국가에 진출하든지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문서작성이다. 별 생각 없이 작성한 문구 하나가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전자업체는 과거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해 제품 주문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브랜드 사용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영업판매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결과 계약기간이 끝나고 에이전트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보상금을 물어줘야만 했던 사례도 있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사소한 이메일 내용, 현지 출

장자의 미팅 제안서 등 어떤 문서든 간에 잘못된 문구나 빠뜨린 내용으로 인해 우리 측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될 일이다.

‘현지 문화만 잘 이해해도 융통성 있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정통 이슬람문화권이어서 사람들은 하루 5차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올린다. 이 시간에는 관공서는 물론이고 거리 통행도 불가능하다 보니 모든 일이 예정된 시한보다 늘어지는 경우가 잦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KOTRA는 그곳 문화를 설명하고 일정을 우리나라에서처럼 타이트하게 짜기보다는 여유 있게 세울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야만 약속한 기한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개인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며 일하는 직원의 경우 현지 법인 소속으로 해서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급여를 포함한 발생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주었다. 이렇듯 아주 세심한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는 KOTRA의 상담 덕분에 공사 담당자들은 낯선 땅에서 수행해 나갈 신규 비즈니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낼 수 있었다.

‘프로젝트 담당자들이 상담 내용을 경청하며 일일이 메모하는 모습

을 보면서 이 정도 꼼꼼함과 세심함이라면 1000억 사우디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KOTRA는 공사가 사우디 합자법인을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설립된 법인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갔다. 앞으로는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 공사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국내 시장에서 지금껏 갈고닦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발판으로 이제 광활한 글로벌 시장을 향해 첫발을 내딛은 수출초보기업. 아직 수출 성과를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되새겨볼 때 사우디 시장을 향한 공사의 첫발은 절반 이상의 성공을 예감하게 한다.



CASE ADVICE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했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진출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내수에만 집중해온 기업의 경우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우디 등 중동지역은 현지관습, 제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서는 현지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CASE STUDY

중국

—
06

중국과의 계약 체결로
로열티 수입 얻게 된

S사



작은 불씨를 발견해 큰 불을 예방한다

수출전문위원 **김종규**

국내에서도 경제나 정치 상황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이 변하고
이를 위해 기업 경영 방법도 달라집니다.
수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더 철저한 준비와
사전지식을 갖추고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도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중국 대련에 투자한 법인과 기술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계약서 각 항목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S사가 처음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의 김종규 수출전문위원에게 요청한 것은 로열티 계약 관련 내용으로, 중국 현지의 송금 방법과 법적인 절차를 묻는 정도였다. 멘티업체의 문의에 따라 계약서 등록 절차 및 현지 세법에 대해 답변하던 김 전문위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국 측 기업이 S사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임을 알게 됐다.

‘최근 중국에서 외자 기업에 대한 세무 강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 현지 법인은 S사 소유이므로 감시 대상이 되겠는데요?’

현재 중국은 로열티나 용역료 등을 부풀려 본국으로 가져가는 외자 기업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 상황이다. 만약 S사의 계약서 내용 중 조금이라도 애매한 항목이 있다면 앞으로 중국에서의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S사는 계약서 항목별 내용과 경위를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설명했고, 법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KOTRA 자문변호사의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얼마 후, 계약서를 검토한 변호사로부터 내용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결과를 들었다.

‘예상대로 최근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로열티 계약 관련, 중국법인의 권리사항이 비교적 부실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약 50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 11개 항목에 관한 내용 수정 및 항목 추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법인의 회사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회사법 제149조 제4장, 5장 부분(현지 법인대표의 충실 이행 의무)의 위반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저희가 직접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를 찾아 자문변호사님과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S사는 회신을 받은 즉시 직접 면담을 신청하고 상담센터를 찾았다. 자문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 계약서를 들고 재검토를 의뢰하고, 현지 지역 상무위에 계약서를 등록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받았다.

‘자문변호사님 덕분에 거의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11월 초에 지역 상무국에 계약서를 등록할 예정입니다.’

S사는 이번 계약 체결로 중국 업체로부터 매년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연

간 최소 약 5만 달러씩 5년간(약 250만 달러)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만약 잘못된 계약서로 진행했다면 계약이 무산되어 로열티를 통한 이익을 얻지 못함은 물론, 중국 정부의 엄격한 심사 대상이 되어 현지에서 기업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신 무역법에 능통한 KOTRA의 인적 자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S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수출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에서 전문가의 점검과 조언을 얻어 리스크를 줄어나갈 예정이다.



CASE ADVICE

무역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무역업은 각국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점검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최근 중국은 외자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최신 정보를 보유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는 세계 각국 무역관을 통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CASE STUDY

인도네시아

—
07

인도네시아에
연구법인을 설립한

T사





생각과 방법의 전환으로 새로운 길을 찾다

수출전문위원 박기언

인도네시아와 같이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에 진출시,
초기 단계부터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수록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순응하지 말고
오히려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십시오.
멀리 내다볼 때, 생각지 못한 방법도 만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연구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단독 투자가 어렵다니...’

T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널리 알려진 식품 및 유통기업 산하의 연구 업체이다. 최근 T사는 인도네시아에 연구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동남아 최대 식품 시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진출을 꾀한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기업이 법인을 세울 때는 단독 투자가 아닌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유도한다. T사는 이 같은 이유로 계획을 변경하여 직접 투자가 아닌 현지 대학 재단과의 지분 공여 방식으로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대로 외국 기업인 T사가 지분 한도인 55%를 투자하고, 나머지 45%는 현지 대학 재단에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인도네시아 내 대학과 합작 투자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데, 문제될 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T사는 법인 설립 진행 전, 이 방안에 문제는 없는지, 안전한 지분 확보 방법과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 무엇인지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의 박기연 수출전문위원은 T사의 현지 합작 법인 설립에 있어 문제가 될 사항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 규제가 많은 국가라 현재로서는 합작 법인 설립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T사 모기업의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활용하면 인도네시아 투자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단독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인도네시아 투자청(BKPM) 한국사무소와 미팅을 해 보십시오. 협상 결과에 따라 단독 투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는 현 계약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했습니다. 합작 투자를 하게 될 인도네시아 대학 재단과 제공 지분을 보장하는 방안 및 합작 협상 전략을 비롯해 향후 합작 법인과 본사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또 본사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을 로열티 방식으로 제공할 것과 향후 합작회사에서 확보되는 기술에 대한 권리 주체를 분명히 하는 방법 등을 T사에 설명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회계 법인과의 협조 업무 진행도 권유했습니다.

T사는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의 꼼꼼하고 면밀한 분석과 조언을 들은 후에야 본격적으로 법인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단독 법인 허가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합작 투자가 아닌 단독 진출이 가능하도록 인도네시아 투자청과 협상하라는 조언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T사는 20억 규모의 단독 법인을 인도네시아에 설립함으로써 인구 6억 이상의 시장으로 통합된 아시아 시장에서의 중장기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T사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곧바로 베트남 법인 설립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KOTRA는 앞으로도 T사가 아시아 시장에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점차 사세를 확장하여 한국 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꾸준한 자문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CASE ADVICE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인도네시아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는 제도적으로 규제가 많아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나라입니다. T사와 같이 기업의 역량만으로 성공적인 안착이 어려운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일수록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KOTRA 수출전문위원의 조언 및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다면 힘들어 보이던 일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

08

중국에 설립한
매장을 문제없이
폐쇄하고 싶은

K사



중국 매장 폐쇄, 소비자 불만을 줄일 방법은?

수출전문위원 이현찬

해외에 매장을 설립했습니다가 폐쇄할 경우에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뒤따릅니다.
해당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존 고객들에 대한 처우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어서 진행할 다른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매장은 우리 사업과 도저히 맞지 않다.
 기존 매장을 폐쇄하고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매장을
 다시 개설하는 게 최선이다!’

K사는 두피와 탈모 관리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이다. 한국에서 45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특화된 기술로 안정된 입지를 굳혀가고 있던 K사는 2015년 4월, 중국 측 파트너와 함께 중국 북경에 합자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파트너와 피부 관리 및 두피 관리 매장을 설립하면서부터 K사는 지속적으로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K사는 두피 관리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피부 관리까지 사업 영역에 넣길 원하지 않았으나 중국 파트너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현지에서 매장을 원활하게 끌고 나가는 데 힘이 들었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회사의 전문 영역인 두피 관리 매장을 새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에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곁들인다면...’

K사는 결국 2016년 10월 중국 합자 법인과 세웠던 기존 매장을 폐쇄하고 두피 관리 매장을 새로 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매장에서 고객 관리를 정액권 회원 카드로 했던 것이 문제였다. 정액권 회원 카드 제도란 고객이 일정한 금액의 회원 카드를 미리 구매하는 것으로, 매장에 방문해서 관리를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선불 회원 카드에서 차감하게 된

다. 대신 회원 카드를 발급받으면 할인율이나 적립액을 부여하는 혜택을 준다. 하지만 막상 매장을 폐쇄하려고 보니 이렇게 선불로 회원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던 고객에게 어떻게 남은 금액을 환불해야 하는지가 걸렸다. 그래서 K사는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중국 소비자에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해주기 위한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중국에 이러한 회원 카드에 대한 소비자보호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또 소비자보호법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회원 카드의 잔액을 환불하는지 궁금합니다.’

K사의 문의에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이한찬 수출전문위원은 중국의 관련 법규와 상무부 자료를 검색하였습니다.

‘선불 회원 카드에 대한 법규 조항은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불 회원 카드에 대한 환불을 할 때는 소비자 사용분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납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락이 되지 않는 고객이나 장기간 방문하지 않았던 고객은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선불 회원 카드 판매자의 책임 기간은 무기명 카드 경우 3년이며

기명 카드는 기한이 없습니다.’

‘혹시 저희가 환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중국 고객이 어느 기관에 소비자 불만을 신고하는지요?’

‘중국 고객의 소비자 불만 신고는 소비자협회나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인민법원에 소송이 제기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는 K사가 문의한 여러 가지 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주었다. 특히 이 매장을 폐쇄하고 난 뒤에는 중국에 두피 관리 전문 매장을 개설 할 계획이었으므로 K사가 중국 내에서 신뢰도를 잃지 않도록 조언해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선불 회원 카드에 대한 문의를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에 건네 면서도 이렇게 소소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과연 답변이 가능할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찬 전문위원님의 친절한 답변은 그런 불안을 싹 날아가게 했습니다. KOTRA 무역투자상담센터 덕분에 머리 아팠던 해외 매장 폐쇄에 대한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K사는 선불 회원 카드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두고 사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중국에 두피 관리 전문 매장을 개설하더라도 기존 고객뿐 아니라 새로운 고객들에게도 기업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았기에 K사는 앞으로 새로운 매장을 설립하고 나서도 충분히 환한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CASE ADVICE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선불 회원 카드의 잔액 환불 문제처럼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해외 업무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난감해 집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지의 법규와 관련이 있으므로 전혀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해외 사업을 펼치는 회사로서 해당 지역에 기업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는 늘 현지 소비자에게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어나갈 현지 사업에서 좋은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KOTRA자료 16-080

2016년 주요 15개국 해외투자진출 상담사례집

발 행 인 : 김 재 흥

편 집 인 : 선 석 기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6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한릉로 13

전 화 :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I S B N : 979-11-6097-000-5 (93320)

Copyright©2016 by kotra, all right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